

서울시 특성화된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한부모가정 자녀돌봄 및 가족건강성 향상 프로그램

-부자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008

송 말 희
강 기 정
신 건 철
이 종 남
김 연 화

한부모가정 자녀돌봄 및 가족건강성 향상 프로그램 - 부자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008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SEOUL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한부모가족 자녀돌봄 및 가족건강성 향상 프로그램

- 부자가정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송말희

강기정

신건철

이종남

김연화

2008



한부모가족 자녀돌봄 및 가족건강성 향상 프로그램

- 부자가정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구자 : 송말희(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
장기정(백석대학교 교수)
신건철(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팀장)
이종남(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김연화(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팀장)

보조연구 : 이성휘(중앙대학교 석사과정)

자문·자료협조 :

박정운(중앙대학교 교수)
김명희(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선임)
홍정혜(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장)

2008

목 차

제1장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1
제1절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사업운영지침 전반	3
1. 사업운영의 방향	6
2. 사업관리	7
3. 운영 프로그램	14
4. 사례관리운영	16
5. 사업비 집행·정산	22
제2장 방과후 자녀돌봄 및 사례관리 매뉴얼	25
제1절 부자가족 아동 방과후 돌봄사업 프로그램	27
1. 사업의 목적	27
2. 사업의 목표	27
3. 사업운영 서식- 방과후 자녀돌봄 방과후 학교	27
제2절 부자가족 사례관리	63
1. 부자가족 사례관리의 목적	63
2. 부자가족 사례관리의 목표	63
3. 부자가족 사례관리사업 과정	63
4. 부자가족 사례관리의 운영서식	84
제3장 부자가정 건강성 향상 프로그램	93
1. 프로그램 운영지침	95
2. 프로그램 교육내용 소개	101
3. 아버지용 프로그램	103
4. 자녀용 프로그램	154

참고문헌	181
부 록	185
부록 1. 건강가정기본법	187
부록 2. 한부모가족지원법	197
부록 3. 서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및 세대원 수	265
부록 4. 서울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266

표 목 차

<표 1-1> 혼인상태별 한부모가족현황(통계청자료)	5
<표 1-2> 저소득 한부모가족비율	6
<표 2-1> 학자들의 사례관리 정의	64
<표 2-2> Intake 기록지 구성	68
<표 2-3> 사례관리 서비스제공을 위한 자원 색인	78
<표 2-4> 부자가족 사례관리 대상자 구분	79
<표 3-1> 다양한 가족들의 예	114

그 림 목 차

(그림 2-1) 학자들의 사례관리 정의	64
(그림 2-2) 부자가족 사례관리 모형도	66

서 식 목 차

<서식-01> 신규아동 부모면접지	28
<서식-02> 아동관찰일지	36
<서식-03> 아동출석부	37
<서식-04> 연명부	38
<서식-05> 방과후 아동 관리표	39
<서식-06> 프로그램 출석부	40
<서식-07> 이용신청서	41
<서식-08> 방과후 교실 이용 종결신청서	49
<서식-09> 운영일지 및 교사업무일지	50
<서식-10> 자기관리계획표(아동용)	52
<서식-11> Intake 기록지	69
<서식-12> 사정 기록지	72
<서식-13> 사례회의 기록지	76
<서식-14> 사례개입계획 기록지	77
<서식-15> 사례관리과정 기록일지	89
<서식-16> 중간평가 기록지	90
<서식-17> 종결 기록지	91

활동지 목 차

<활동 1-1> 나의 걸모습과 속마음	106
<활동 1-2> 우리들의 어려움' 상자	107
<활동 1-3>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족은? 그리고 그 가족들의 강점과 어려움은?	111

<활동 2-1> 인생지각 척도	119
<활동 2-2>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단점은? 하지만 동전의 양면	120
<활동지 2-2-1>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단점은? 하지만 동전의 양면’	121
<활동 2-2-2> 나에게 이런 장점이!(내안의 보물들)	123
<활동 2-3>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126
<활동 2-4> 나는 내 인생의 프로그래머	129
<활동 3-1> 자녀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135
<활동 3-2> 나와 자녀의 의사소통은?	137
<활동 3-3> 내 자녀에게 이런 장점이	143
<활동 3-4> 자녀와의 열린 대화를 위한 나의 다짐	145

평가지 목 차

<평가지-01> 서비스변경관련조사표	53
<평가지-02> 학부모의견 수렴 설문지	54
<평가지-03> 방학중 맞춤반 만족도 설문지	59
<평가지-04> 방과후교실 최종이용 만족도 설문지	61
<평가지-05>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 사전 사후평가지	149
<평가지-06>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 전체 평가지	153
<평가지-07> 자녀대상 프로그램 사전 사후 평가지	176
<평가지-08> 자녀대상 프로그램 전체 평가회	180

제 1 장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제1장 사업필요성과 목적

제1절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 사업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 제 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육 및 방과후서비스, 양성 평등한 육아휴직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 가족은 “ 부모한쪽의 사망, 별거, 이혼, 자녀입양 그리고 사생아 출산 등의 이유로 모 혹은 부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 14조)에서는 한부모가족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 미혼자가 배우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을 말함.

○ 1990년대 후반이후 이혼율의 증가와 기타 배우자의 사망 등의 이유로 한부모 가정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 2007년 현재 한부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족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 인구는 총 151,520 세대 404,446명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에 비해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 중 모자가정에 비해 부자가정의 증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1>, <표 2>.

○ 한부모가족 정책 및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정지원사업은 1989년 모자복지법의 제정으로 모자복지사업으로 시작, 2002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 2008년 3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일부 개정하여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 되고 있음 <부록 참조>.

○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다양한 가족 중 한부모가족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관련기관 제공의 프로그램 매뉴얼 등은 한부모 가정 중 부자가정도 다양한 가족형태임에도 부자가정

지원프로그램은 미미한 상황. 이에 부자가정의 자녀교육 및 부모자녀 관계향상, 여가문화 등을 지원하는 통합적 프로그램개발 및 프로그램 실시는 저조하여 사회적 대응책이 필요하게 됨.

- 부자가정 건강성 향상, 특히 자녀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해 자치구 센터와 지역 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교육, 상담, 문화, 정보제공 및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적 운영하도록 하는 맞춤형 부자가정 통합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범운영을 통해 매뉴얼을 수정·보완하여 앞으로 저소득 부자가정지원 통합적 프로그램 보급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이 필요한 실정.
- 특히 IMF이후 증가 추세에 있는 부자가족의 경우, 자녀양육의 문제와 함께 경제적, 심리사회적 문제 등으로 가족복지적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그 특성상 정부·민간의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실제로 부자가정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 이러한 경제적, 의료적, 사회적, 가족에 대한 욕구나 문제를 갖는 부자가족을 대상으로 개별문제 및 가족문제 해결에 필요한 맞춤형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연계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적극적 활동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부자가정의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 자녀양육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함께 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하였지만, 대부분 자녀 돌봄 정책은 6세 이전의 영아와 유아에 집중
-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들은 신체적이나 인지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해 있고 하루 중 일정 시간을 학교에서 지낸다는 이유로 돌봄의 주 대상자에서 정책적으로 등한시되고 있는 상황.
- 스스로 자신을 돌보기에 충분하지 않은 연령이기 때문에 성인의 돌봄과 보호 없이 방치되는 학령기 아동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돌봄의 대책 마련이 시급.
- 방과후부터 아버지의 귀가시간까지 자녀의 간식과 휴식을 돌보아줄 사람이 부재하여 아동들이 혼자서 학원이나 집주변을 떠돌게 되어 아동 안전과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정부지원의 방과후 돌봄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돌봄이 우선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자녀의 복지증진, 가족돌봄의 지원 측면에서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지원 필요.
- 따라서 부자가족을 대상으로 개별 가족원의 욕구에 맞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가족지원차원의 사례관리가 절실히 요구됨.
- 또한 가족상담, 교육, 문화사업,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녀의 방과후 돌봄 학습, 사례관리와 함께 부자가정 아버지 교육,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캠프나 문화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
- 본 사업의 목적은 부자가족 아버지의 자녀 방과 후 돌봄의 부담 경감과 안전한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자녀돌봄, 학습지원, 정서적지원, 가족교육과 문화활동을 통해 가족기능강화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여 가족의 기능회복과 가족문제예방을 도와 부자가족의 가족건강성 향상을 돕고자 함.

< 표1-1 > 혼인상태별 한부모가족현황 (통계청자료)

○ 모자가구 (단위 : 1,000가구, %)							
연도	한부모 가구수 (A)	모자가구 수					모자가구 비율 (B/A)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계(B)	
1995	960	165(21.0)	458(58.2)	73(9.3)	91(11.5)	787(100)	82.0
2000	1,124	195(21.6)	438(48.4)	153(16.9)	118(13.1)	904(100)	80.4
2005	1,370	264(24.4)	427(39.4)	259(23.9)	133(12.3)	1,083(100)	79.1

※ 자료 : 통계청

○ 부자가구 (단위 : 1,000가구, %)							
연도	한부모 가구수 (A)	부자가구 수					부자가구 비율 (B/A)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계(B)	
1995	960	51(29.5)	68(39.3)	51(29.5)	3(1.7)	173(100)	18.0
2000	1,124	58(26.3)	64(29.1)	93(42.3)	5(2.3)	220(100)	19.6
2005	1,370	64(22.3)	74(25.8)	140(48.8)	9(3.1)	287(100)	20.9

※ 자료 : 통계청

< 표 2-2 > 저소득 한부모가족비율

○ 보호방법별 현황 (단위: 세대/명, 2007.12.31현재)

가정현황		저소득 한부모가족 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국민기초 수급대상	국가보호 대 상
			소계	재가보호	시설보호		
합 계	세 대	151,520	76,810	76,125	685	74,641	69
	인 원	404,446	198,791	196,967	1,824	205,499	156
모자가정	세 대	120,656	60,285	59,606	679	60,327	44
	인 원	321,837	154,950	153,128	1,822	166,782	105
부자가정	세 대	30,864	16,525	16,519	6	14,314	25
	인 원	82,609	43,841	43,839	2	38,717	51

※ 자료 : 2007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 증감율 현황 (단위 : 세대, 세대원수)

구분		2005(A)	2006(B)	2007(C)	증감(C-B)	증감율(%)
총 계	세대수	123,666	140,188	151,520	11,332	8.1%
	세대원수	334,066	374,094	404,446	30,352	8.1%
모자가족	세대수	99,671	112,347	120,656	8,309	7.4%
	세대원수	268,975	299,430	321,837	22,407	7.5%
부자가족	세대수	23,995	27,841	30,864	3,023	10.9%
	세대원수	65,091	74,664	82,609	7,945	10.6%

※ 자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제2절 사업운영지침 전반

1. 사업운영의 방향

- 가족의 방과후 돌봄 요구를 가진 저소득 부자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 저소득층 부자가정 중 시범사업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와 그 형제를 중심으로 사업추진
- 부자 가정의 요구에 맞도록 늦은 퇴근시간에 맞추어 아동의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시간대 운영
-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정서적 지원
 - 특기적성교육과 보충학습 중심 프로그램이 아닌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정서

적지원, 가정의 돌봄 기능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 자녀와 부의 정서적 지원 및 가족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추진
- 가족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와 통합적 사례관리 지원
- 부자가정 아버지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가족친밀감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사업 추진

2. 사업관리

1) 사업운영 모형

○ 운영형태별 모형

- ① 센터시설 중심: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서 공간을 마련하여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
- 일반형: 부자가정의 자녀를 중점 대상으로 하여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유형. 유료운영
- 지원형: 부가가정뿐만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유형. 무료 또는 실비 운영
- ② 프로그램 중심: 지역의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방과후 교실과 연계하여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

2) 센터시설 중심 모델

(1) 운영

○ 이용대상

- 부자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아동과 그 형제가 있는 가족 중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 아동의 안전 및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정 아동수가 유지되도록 사업 운영

○ 운영시간

- 하루 5시간 이상 주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여건과 실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주5일 운영: 월~금요일/ 캠프 등은 토요일과 일요일 가능
- 운영시간: 학기중 13:00(방과후)-19:00(참고 방학중 9:00-19:00)

- 운영비 등 재정관리
 - 운영비의 적절한 관리와 정확한 집행을 위해 지출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 인건비는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이나 비품구입 시 비품대장을 구비하여 관리함.
 - 운영비 3만원이상 집행시(2009년부터는 1만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받아 온라인입금 활용.
- 시센터 등에서 받은 교부금은 방과후 사업 운영과 관련된 집적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범사업 센터의 재산조성비로는 사용불가.
- 문서관리
 - 사업계획서, 운영일지, 공문철, 사업계획서, 예산·결산서,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대장, 본 자료집에 수록된 방과후 교실 운영매뉴얼 및 사례관리 일지, 출석부 등 운영상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2) 방과후 돌봄 서비스 내용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운영함으로 원칙으로 하며 아동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함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방과후 교사를 통한 아동 보호 및 지도
 - 아동의 출석 확인, 학원시간 확인
 - 급·간식 제공
 - 양치, 손씻기 등 일상생활에 대한 지도
 - 방과후 시설 내에서 아동의 휴식 및 병원동행 서비스 등 제공
 - 가정과 같은 편안한 공간 제공
 - 방학중 맞춤형 시간제 돌봄 서비스운영
- 아동의 정서·사회 발달 프로그램
 - 숙제 지원 및 학습지원, 학원시간 관리
 - 아동 주도형 학습 제공: 놀이, 독서, 교구를 통한 주도적 활동 선택
 - 다양한 인성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 야외 및 체육 프로그램,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현장학습 및 체험 학습
 - 전문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미술, 음악, 컴퓨터 등 전문 교육

-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 도구, 교구 비치
- 부자가정 맞춤형 사례관리
 - 아동의 개별 면담 및 가족 사정 실시
 - 가족사정을 통한 가족별 맞춤 사례관리 제공
 - 아버지상담, 아버지교육, 아버지 방문,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
 - 맞춤형 정보제공: 아동 활동수첩, 아동생활 기록지 발송
- 통합프로그램 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내 방과후 돌봄 교실 아동 및 가족 참여
 -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상담·교육·문화 지원의 통합 프로그램 연계
 - 아빠와 함께하는 가족캠프나 가족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통합적 실시
- 지역센터의 사정에 따라 주말, 공휴일, 야간에 아동보호 및 학습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실정 및 센터 여건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수 있음
- 운영프로그램
 - 해당 월의 특성(ex 가정의 달, 명절, 방학 등)과 초등학교의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운영프로그램을 구성.

(3) 서비스 이용요금

- 이용요금
 - 저소득 부자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기에 시범사업의 경우 무료로 운영.
 - 체험활동, 캠프 등은 이용요금 별도 운영 가능하지만 요금에 대한 수납아동명, 아동별 이용요금 수납액, 사용내용 등에 대한 관련 서류정리.
 - 이용아동의 형제에게도 원하는 경우 무료(또는 유료)로 석식 제공.

(4) 종사자 기준 및 관리

- 종사자 기준
 - 아동 30인 미만 15인 이상: 교사 2인
 - 아동 15인 미만 10인 이상: 교사 1인

○ 종사자 자격기준

- 전직 보육교사, 교사자격증 소지자 우대,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방과후 학습지도사 등

○ 종사자 관리

- 종사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가입하는 등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종사자 채용시 공개 채용을 하고, 관련 구비 서식은 각 센터의 운영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원증명서, 신체검사서, 자격증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함

(5) 급식 관리

○ 급식관리

- 아동에게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균형 있고 위생 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함
- 급식지원은 간식, 중식, 석식으로 이루어지며 이용아동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가능함
- 급식은 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에서 운영할 경우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부득이 외부지원 급식을 할 경우에는 식중독, 부실급식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위생관리

- 아동의 건강을 위해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질병예방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습관에 대한 지도를 해야 함
- 시설 내 청결을 위한 청소도구 배치 및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고 전염병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과 그에 유사한 질병에 걸린 아동은 증세가 호전될 때까지 격리 조치함
- 조리실, 화장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며 시설 내 청소상태, 세면 도구 등의 위생상태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함

○ 석식식단

- 퇴근 후 아버지의 가사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아동에게 석식을 제공하며 아동의 형제의 경우에도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센터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공
- 월별 식단표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양질의 식사(5대영양소, 적정칼로리)를 제공

(6) 시설환경구성

○ 시설 기준

- 사무실, 조리실, 식당, 집단지도실(교실), 휴식공간, 화장실을 갖추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동일 건물 내에 있는 것이 바람직 하고, 이용 아동의 안전이나 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는 사무실, 조리실, 식당, 화장실을 공동 사용 가능
-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시설을 구성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 학교,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사회내 기관을 활용하여 환경을 구성토록 함

○ 교육실

- 가정과 같이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환경을 조성
- 지하층은 배제하고, 환기 및 통풍이 원활한 장소이어야 하며, 바닥은 가급적 온돌이나 카펫으로 시공
- 기타 활동에 필요한 체육실, 컴퓨터실 등은 센터에 설치되었으면 이용하고, 만일 시설이 미비한 경우 활동에 적합한 지역사회시설을 연계하여 실시

○ 휴식공간

- 아동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컴퓨터, 간이식 침대 등 취미 및 휴식의 공간으로 구성함

○ 교재·교구 준비

- 아동의 발달과 교육 수준에 맞는 교재, 교구를 파악해 프로그램 특성, 교육 환경, 운영상황에 따라 준비
- 각 활동에 필요한 비품 확보

○ 환경 및 시설 설비

- 급·간식을 위한 냉장고, 싱크대, 살균소독기 등 기타 취사에 필요한 설비를

구비할 수 있음

- 아동을 위한 개인 사물함, 구급함, 신발장, 교구장, 책장, 교구·교재를 구비할 수 있음
- 방과후 교실 운영에 필요한 교사용 사무기기, 전화, 사물함 시설 및 교재를 구비할 수 있음

(8) 시설 안전 운영

-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시설의 안전점검과 소방화재안전 교육을 실시할 것
- 인근 소방서, 경찰서, 가스안전공사 등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안전 점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2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
- 아동의 실내외 활동시 안전을 위해 아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에 대한 요령을 숙지하고 필요한 구급약과 비상의학 장비를 비치하는 등 아동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할 것
- 화재보험 가입

(9) 귀가지도

- 일과가 끝난 후 귀가 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도
- 차량운영 시 반드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아동의 이동 시간 및 위험지역을 파악하고 안전한 귀가를 위한 방법을 강구

(10) 부모 간담회 등

- 아버지간담회를 통해 자녀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
- 정기적인 아버지상담 서비스 제공
- 아버지와 함께 하는 캠프, 아버지교육 등 아동과 아버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및 참여를 유도

(11) 인력관리

○ 인력 구성

- 전담인력: 아동의 생활지도, 수제 및 학습지도, 프로그램 관리, 생활 상담
- 전문강사: 전문 프로그램 진행, 교육내용 협의, 강의계획 및 진행

- 자원봉사자 및 실습생: 사업지원, 생활지도, 학습지도, 보조교사 등

○ 전담인력

- 운영관리: 업무관리, 인력관리, 예산관리, 안전관리
- 생활지도 관리: 모집, 출석관리, 생활지도, 급식관리, 귀가 지도
-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가
- 가족사례관리 진행: 가족사례 사정, 사례관리, 프로그램 연계
-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자원 네트워크, 홍보관리

○ 전문강사

- 각 분야 전문영역 강의 진행 가능자
- 주부, 퇴직교사 등 인력풀 구성 운영
- 지역사회 문화 예술, 체육 등 전문 인력 활용

○ 자원봉사자 관리

- 부족한 인력의 보강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체 의식 함양
- 지역의 각 대학교 봉사단 및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대학생 자원봉사 인력 개발
- 자원봉사인력에 대한 홍보, 모집, 선발, 교육, 배치 및 관리 등 운영 및 사후관리계획 마련
- 학습지도, 숙제지도, 급식지도, 간식나눔, 프로그램 지원등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

(12) 보험가입

○ 상해보험 가입

- 가입 대상: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 전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단, 배상보험의 보상범위가 시설과 관련된 사고의 상해보험 보상범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경우,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중복가입 방지: 보호자가 이미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입할 필요가 없음을 부모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중복 가입을 원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입소료에서 상해보험료를 공제하고 수납한다. 단, 이 경우 반드시 보험 가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보험증서 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사고 발생시 부모 가입 보험으로 처리됨을 사전 안내
- 보험료 부담: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배상보험가입

- 가입대상: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대표자는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른 배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 다만 식당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액화 석유 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 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 동법 시행규칙 제 56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 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 보험료 부담: 시설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화재보험 가입

- 가입대상: 모든 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보험료 부담: 시설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 운영프로그램

1) 프로그램 운영 방향

- 아동의 특성과 욕구 분석에 기초하여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인성교육 도모
- 주의력 결핍 증상, 정서 발달 장애, 학교부적응 등 조기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파악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내 교육 및 상담사업과 즉각적으로 연계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함
- 가족이 함께하는 돌봄의 기회 제공(부모상담, 부모교육,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 부모방문 등)
- 아동에게 안전한 보호와 영양, 생활지도
- 가족의 기능을 보완하여 아동의 정서적 안정 및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2) 프로그램 운영 절차

(1) 욕구조사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부자가정의 요구조사, 가정방문, 관련자료 및 정보 수집, 의견수렴
- 아동 및 부모 등을 포함한 욕구조사 실시

(2) 개설 프로그램 추진계획 작성

- 방과후 돌봄 사업의 운영목적,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운영 프로그램 추진계획 작성
- 운영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세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기초계획안 작성

(3) 개설 프로그램 의견수렴 및 분석

-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아동 및 부모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수렴하여 분석·파악
- 각종 수요 조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센터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과 관련된 각종 운영·관리 방안 등 운영계획에 반영

(4) 프로그램 개설 및 관리방안 마련

- 프로그램 개설 절차, 예산관리, 인력(강사, 자원봉사자 등) 관리, 지역사회 자원연계 방안 등 프로그램 개설 방안 마련
- 개설 프로그램의 적합성, 예산편성 및 관리방식의 합법성, 강사채용 관리방식의 투명성 및 객관성, 기타 운영에 필요한 운영 및 관리 방안 등 검토

(5) 개설 프로그램 확정 및 강사섭외

- 센터가 위치한 지역적특성 및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구성 및 확정
- 프로그램별 별도 외부강사로 운영할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가이드북 강사채용 및 강사비 기준을 기본으로 참조하되 적법한 구인절차를 거쳐 프로그램별 진행 강사 섭외

(6)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계획 수립

- 개설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세 수업계획 수립

- 강사별 강의내용, 시간, 평가 등 강의지도안 작성

(7) 프로그램 운영

- 요일별 세부 프로그램 운영안을 작성해서 운영하되 월별 운영계획표를 작성해서 아버지에게 가정통신문의 형식으로 발송
- 프로그램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 및 참여를 유도
- 담임교사제로의 운영을 통해 아동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집중관리 제공

(8) 프로그램별 만족도 실시

- 아동 또는 부모들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실시
- 프로그램 참여율 및 참여도 변화, 아동 및 부모에 대한 설문조사, 상담 등
- 프로그램별 만족도 평가는 운영 초반과 후반 각2회 실시

(9) 프로그램 전반적인 운영평가 결과 반영

- 아동 및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및 강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비롯하여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센터별로 자율적인 운영평가방안을 마련하여 평가결과 차기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방과후 돌봄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질 관리 도모

4. 사례관리 운영

- 부자가족의 경제적, 의료적, 사회적, 가족 욕구나 다양하고 복합적인 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통합적인 가족지원차원의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가족기능강화와 가족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부자가족 개별 가족구성원 욕구에 맞는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및 프로그램 발굴 및 연계 (서식 별첨)

5. 부자가정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부자가정 건강성 향상 프로그램

1) 프로그램 운영 지침

부자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세부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부자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 프로그램의 대상 및 그들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

- 부자가족 프로그램의 대상은 이혼, 사별, 유기, 또는 미혼부로 현재 자녀들과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아버지와 그들의 자녀들이나, 본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이혼과 사별에 의한 부자가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은 아버지와 자녀(부모 대상, 초등학생 대상)를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 그러나 아버지 또는 자녀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참가의 의사가 없을 때에는 아버지와 자녀 중 한 쪽만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도 있음.
- 참가자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참가할 때 교육 효과가 높으므로, 부자가족 프로그램의 운영은 참가자의 자발성을 원칙. 또한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프로그램 실시와 관련된 약속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전에 「참가동의서」를 작성. 즉 프로그램에서 제시되는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다른 참가자들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여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을 약속.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과제물을 성실히 수행하며, 프로그램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사항들에 대해 비밀을 지킬 것을 약속.

(2) 부자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 프로그램의 교육자 자격

- 교육자는 건강가족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여야 하며, 다양한 가족에 대해 진정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함. 특히 부자가족이 처한 상황을 수용하고, 그들이 프로그램에 편안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민감하고 감정이입적이며, 격려하는 태도를 지녀야 함.
- 교육자는 부자가족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이론적 배경을 이해해야 하며, 부자가족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결과와 정보들을 끊임없이 습득하도록 함. 또한 교육자는 다양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데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즉 현장 실습을 통한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프로그램 운영에 효과적일 것임.

- 교육자는 프로그램의 각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모임의 목표,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및 강의, 그리고 과제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각 모임의 준비물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3) 부자가족 프로그램 운영형태

본 프로그램은 아버지용과 자녀용(초등학생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기관에서서는 참가대상과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본 프로그램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 운영할 수 있음.

-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아버지와 자녀가 쌍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한 주에 1회 모임으로 3주에 걸쳐 아버지와 자녀가 각자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그 후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가족문화 프로그램에 참가.
- 아버지용과 자녀용 프로그램을 각기 따로 실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용 프로그램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참가 아버지들은 한 주에 1회 모임으로 3주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그 후에 자신들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함께 가족문화 프로그램에 참가. 자녀만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자녀용 3주 프로그램을 다 마친 후, 자신들의 아버지와 가족문화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음.
- 참가 아버지나 자녀가 3회로 구성된 각각의 프로그램에 다 참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3회의 프로그램 중 일부 내용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모임 횟수는 각 실시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이 때 참가자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하게 되면 교육에의 참여가 높으며, 교육 효과 또한 높게 나타날 수 있음. 그러나 교육자를 비롯한 가족생활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참가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선정할 수도 있음. 일부 프로그램만이 수행된 후 가족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도 있고,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캠프 형식으로 진행하여도 무방. 즉 자녀와 함께 캠프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아버지용과 자녀용 프로그램 중 몇 회기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자녀와 아버지가 별도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 문화 프로그램으로 종결지어도 좋음. 또는 아버지와 자녀간의 친밀감 강화를 목적으로 가족문화 프로그램만을 실시할 수도 있음.

(4)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진행과정

- 본 프로그램에서 실시되는 각 모임의 교육 시간은 1시간 30분 - 2시간 정도 소요된다. 자녀용 프로그램의 교육 시간은 아버지용의 경우보다 더 적은 시간을 배정.
 - 가족문화 프로그램의 경우 1일 또는 캠프로 하여 교육, 상담, 문화 등 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시간을 배정하여 진행할 수 있음.
 - 프로그램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우선 각 모임의 목표를 설명
 - ② 프로그램의 도입부분에서는 이번 모임에서 다룰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프로그램 첫 단계의 도입 부분에서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소개, 동의서 작성, 사전 설문지 작성의 시간을 갖도록 함. 또한 두 번째 모임 이후부터 도입 부분에서는 이전 시간에 내주었던 과제를 점검하고, 모임에서 다룰 내용에 대해 간단히 소개.
 - ③ 다음으로는 각 모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과 교육자의 강의. 이 때 각 모임은 강의 중심보다는, 참가자들의 활동 중심으로 진행하고 활동이 끝나면 교육자가 강의 내용을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④ 각 모임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날의 모임에서 배운 것을 요약하고 과제를 내주면서 프로그램을 종결. 각 모임의 과제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과제를 내 주거나, 다음 모임에서 다룰 내용과 연관된 과제를 제시할 수도 있음.
- 3) 아버지와 자녀가 3회기의 모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 검사 실시(사전 설문지는 아버지용과 자녀용으로 구분하여 따로 준비). 마지막 세 번째 모임이 끝난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는데, 사후 검사에서 사용하는 설문지는 사전 설문지와 동일. 또한 참가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전체 프로그램 평가지를 작성. 한편 3회기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실시하지 않고

프로그램 중 일부 모임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일평가지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음.

2) 아버지와 자녀용 프로그램 세부지침

(1)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의 교육 지침

- ① 전체 3번의 모임을 한 명의 교육자가 계속 실시할 경우와 각 모임을 각기 다른 교육자가 실시할 수도 있음.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 모임의 내용은 '자아존중감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동일 교육자가 진행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 ② 전체 3번의 모임을 연속적으로 다 실시할 경우 사전·사후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 파악. 여기에서는 세 가지 척도(자아존중감, 심리적 복지감, 부모역할 만족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아버지 개인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인 자아존중감, 심리적 복지감 중 한 가지 척도와 부모역할 만족도 척도를 함께 평가하면 개인의 변화와 자녀와의 관계 변화를 모두 측정할 수 있을 것임.
- ③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이혼, 유기 또는 미혼부 등으로 부자가족이 되지 만, 본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이혼과 사별에 의한 부자가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자 함. 실제로 프로그램을 진행 할 때는 교육자가 참가자들의 신상을 파악한 후에 그에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강조. 예를 들어, 집단이 모두 이혼에 의한 부자가족이라면 세 번째 모임의 '바람직한 부모역할'에서 공동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함.
- ④ 교육자와 관련하여, 현재 건강하게 부자가족을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를 강사로 활용하면 교육적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⑤ 각 모임의 소요 시간을 2시간으로 구성하였으나, 교육자가 교육을 실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 참가자들 간의 상호교류가 좋고 적극적인 참여태도를 보인다면 시간을 좀 더 연장하여도 좋지만, 적극적인 분위기가 아닌 경우에는 시간을 좀 앞당겨서 끝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음.

3) 자녀 대상 프로그램의 교육 지침

- ① 부모의 이혼, 사별로 부자가족을 경험하고 있는 자녀들이 본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이므로, 프로그램 시작 전에 충분히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음을 주지하고, 자연스럽게 상호간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함.
- ② 부모의 이혼, 사별과 같은 가족 문제를 경험한 부자가족의 자녀들은 자아존중감의 상실, 죄의식, 수치심, 우울 등 다양한 심리 상태를 보일 수 있음. 따라서 3회기 프로그램을 모두 다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순서를 따르는 것이 교육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첫 번째 모임에서 '장점 찾기', '서로 칭찬하기', 그리고 '미래에 되고 싶은 나'와 같은 활동 등을 통해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스스로를 의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 이와 같은 긍정적인 활동을 통해 자녀들은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다음에 이어지는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 ③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간 상호작용으로부터 싹트고, 작은 성취나 칭찬 또는 성공을 통해서 형성. 그러나 부자가족의 자녀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칭찬과 격려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교육자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자아존중감은 나에 대한 타인의 평가나 인정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스스로를 의미 있다고 느끼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비록 주변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단점이 자주 지적되고,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낙담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점이 개선되면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지도. 또한 자신이 먼저 주변의 가족, 친구들을 사랑하도록 하여 인간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격려.
- ④ 아버지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아버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교육자는 아버지들에게 가정에서 자녀들의 감정을 읽고, 수용하는 환경을 만들어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아버지가 이런 점에서 노력하여 긍정적인 가정환경이 조성된다면 자녀용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만약 아버지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이러한 내용들이 아버지에게 전달되어 가정에서도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함.

4) 가족문화 프로그램의 교육 지침

- ① 가족문화 프로그램은 기존의 강의실 위주의 교육(활동)과는 달리 직접 체험을 통한 친목 도모라는 점에서 친밀감과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임. 앞에서 실시한 아버지·자녀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에서 교육에 참가했던 아버지와 자녀가 가족단위로 참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본 프로그램만 따로 운영될 수도 있음.
- ② 본 프로그램은 6개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교육자들은 일정과 장소, 참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일부 선택하여 실시할 수도 있음.
- ③ 본 프로그램을 모두 실시하게 될 경우, 제시하는 순서대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즉, 참가 가족들이 서로 소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간에 친밀한 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는 ‘인간 버팀대 만들기’,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가족 사명서 쓰기’, 참가 가족들 간의 단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천국 여행을 떠나보자’, 참가 가족들 간의 자조집단 형성을 도와주는 ‘우리의 밝은 미래’와 ‘촛불의식’ 이루어져 있음.
- ④ 이외에도 ‘부자가정 대상 요리하기’, 푸드아트 놀이 ‘정서순화와 친밀감 강화를 위한 음악놀이’ 등을 실시할 수도 있음.

* 사례관리, 프로그램 내용의 소개는 뒤에서 제시함

5. 사업비 집행 정산

1) 사업비 집행

○ 수입지출의 기본 원칙

- 본사업의 모든 수입 및 지출관리는 통장을 통해서 하여야 함.
- 사업보조금집행과 관련한 통장과 회계장부는 자부담 예산과 별도 구분하여 작성·관리해야함(보조금 통장은 센터명의로 별도개설, 연도가 바뀌면 통장 재개설하여 새 통장으로 교부받아야 함).
- 수입과 지출 행위 시에는 수입·지출 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에 기록하고 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회의 및 구매 사진 등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

- 지출결의서 내부결재 득할 것
- 지출내역 6하 원칙에 맞추어 기재
- 물품구매(10만원 이상), 공사(50만원 이상), 기타(10만원 이상)의 경우 비 교견적서(1개 이상)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내부품의 후 지출
- 예산 집행 시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원칙. (3만원 이상 지출시 간 이영수증 증빙 금지, 2009년부터는 1만원이상으로 규정)

○ 이용료 징수 및 지출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서비스제공 에 따른 실비차원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이용료 징수는 심리검사료, 외부기관 이용료, 교재·교구비 등 실비측정이 명확히 가능한 부분에 한 한함.
- 징수된 이용료는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여야 하며, 별도 통장을 개설 수입· 지출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야 함.

2) 사업비 정산

- 사업비 교부한 시센터나 시와 자치구의 장은 시범사업 등 사업이 종료된 시 점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비 사용내역을 해당 자치구 센터로 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정산 보고 해야함.

3) 지출 서류 관리

- 모든 회계 관련 영수증은 갱지에 부착 지출결의서 양식에 부착 관리함.
- 사업보조금과 자부담 영수증을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하여야 함.
- 금액, 수량 등의 정정
 -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 사항은 약 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함.
 -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붉은 선 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 자를 명료하게 해두어야 함.

**제2장 방과후 자녀돌봄
및 사례관리 매뉴얼**

제2장 방과후 자녀돌봄 및 사례관리 매뉴얼

제1절 부자가족 아동방과후 돌봄사업 프로그램개요

1.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부자가족을 위해 자녀의 방과후 돌봄의 부담 경감과 안전한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지역사회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돌봄, 학습지원, 정서적지원, 가족기능강화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여 가족의 기능회복과 가족문제예방을 돕고자 함.

2. 사업의 목표

- 부자가정의 자녀 양육지원, 돌봄 노동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 가족기능강화와 가족문제예방을 위해 아동과 가족의 욕구에 맞는 통합서비스 제공
- 가족기능강화와 가족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부자가족 개별 가족구성원 욕구에 맞는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및 프로그램 발굴 및 연계
- 부자가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부자의 자아존중감과 잠재력 향상 및 가족 친밀감 강화를 도와 가족건강성 향상

3. 사업운영 서식 - 방과후 자녀 돌봄 방과후 학교

1) 사업운영 필수서식



[서식 01] 신규아동 부모면접지

접 수 면 접 지 (자녀)

- 면접 일시 : 년 월 일 ()
- 면 접 자 :
- 정보제공자 :

I . 인적사항

성명		성별	남 녀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년 개월)
주소				전화	
학교 학년 (유치원)				주민등록번호	-

II . 가족사항

관계	성명	연령	학력 (학력, 전공)	직업 (회사명, 직책)	종교	월수입	동거	기타

III . 양육자의 양육목표

	내용	기간	주변반응
1			
2			
3			

IV. 가계도

--

V. 생태도

가족	IP
----	----

VI. 생활주기표

	0-1	2-4	5-7	8-12	13-17	18-22	23-34	35-60	61-
조모									
부									

VII. 상담가 소견

comment	
사후관리 환류여부	

<첨부자료>

▣ 생육사

1) 결혼시

결혼년도	년 (결혼당시연령: 부 - 세 / 모 - 세)		
교제유형	중매 연애 중매+연애	교제기간	년 개월
결혼동기			

2) 임신시

약복용	무·유 ()개월, 내용:
질환	무·유 ()개월, 내용:
입덧	무·유 ()개월, 내용:
충격	무·유 ()개월, 내용:
심리상태	안정·불안정, 내용:
계획된 임신	예 아니오
임신에 대한 반응	부 : 좋았다 안 좋았다 이유: 모 : 좋았다 안 좋았다 이유:
유산	무·유 임신순위() 자연·인공 이유:
사산	무·유 임신순위() 자연·인공 이유:

3) 출생시

산모연령	세	임신기간	
분만상태	순산 난산 제왕절개	신생아 체중	Kg
황 달	무·유 기간:	산소호흡기사용 인큐베이터사용	무·유 기간: 무·유 기간:

4) 수유 및 식사

수유방법	모유()개월 우유()개월 모유+우유()개월 젖병 떼 시기()개월
이유식	시작시기 : 방법:
식습관	편식(무·유) 내용: 식사태도:

5) 대소변 훈련

대변	시작시기: 가린시기: 현재: 정상·변비·유분 방법: 아이반응: 부모반응:
소변	시작시기: 가린시기: 현재: 정상·변비·유분 방법: 아이반응: 부모반응:

6) 수면 및 활동

보챌음	무·유 언제까지: 정도:
잠버릇	
함께 자는 사람	유아: 현재:
활동량	3세 이전: 과소 . 보통 . 과다 3세 이후: 과소 . 보통 . 과다

7) 병력

고열	무·유 시기:	경기	무·유 시기: 횟수:
질환(시기, 병명, 입원유무, 치료기간) :			
현재 건강상태			

8) 가족 또는 친지 중 병력이 있는 경우

병력	발달장애	정서장애	행동장애	학습장애	신체장애	섭식장애	틱	결핵
관계								
병력	알콜중독	약물중독	우울증	정신병	반사회적 행동	신체장애	간질	기타
관계								

9) 예전 상담 및 치료 상황

연령	기관명	진단	교육, 치료여부	기간	그만둔 이유

▣ 발달사

1) 신체발달

- 항목 : 목 가누기(2). 기기(6). 걷기(12-13). 손가락질하기(24). 옷벗기(24).
옷입기(36)
- 내용 :

2) 언어 및 인지발달

용알이(2-3)	개월	양: 많음	보통	적음	없음
첫말단어(8-14)	개월	내용:			
현재언어	표현력: 이해력:				
인지상태	빠름	보통	느림	기타:	

3) 사회 및 정서발달

눈맞춤	무·유	낮가림	없음·적음·보통·많음
엄마를 언제 알아보았나		엄마 없이도 놀았나	예 아니오
좋아하는 놀이		좋아하는 장난감	
성격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기타 관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			

■ 교육사

학령전 교육	연령	내용	아동반응	대처반응
	교육기관의 아이에 대한 반응			
초등학교	잘하는 과목	못하는 과목	학년별 성적	학업태도
	교육기관의 아이에 대한 반응			
	시기	내용	아동반응	대처반응
과외 활동				

■ 기타 양육 상 특이사항

■ 이혼(또는 사별) 및 재혼에 관련된 사항

이혼 또는 사별 년도		
이혼 동기 (사별 원인)		
아동 반응		
대처방법		
부모의 현재 상태	재혼유무 (부 - / 모-) 교제 중 (부 - / 모-)	
재혼(또는 교제) 정도		
재혼(또는 교제) 동기		
아동 반응		
대처 방법		
아동은 현재 누구와 함께 지내나		
다른 한쪽 부모와는 어떻게 지내나	만남 횟수	
	무엇을 주로 하나	
	아동 반응	
	대처 방법	

※ 본 서식은 센터의 사정에 따라 다소 가감할 수 있음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맞벌이 가족자녀돌봄지원사업의 서식(2007)을 제공받아 수정보완한 것임.

[서식-02] 아동관찰일지

< 방과후교실 아동 관찰 일지 >

관찰기간 : 20 . . . ~ 20 . . .

관찰자 : _____

관찰아동명	
관찰 사유	
관찰 일자	관찰 내용
/	
/	
/	
/	
/	

[서식-04] 연명부

200 년 방과후교실 연명부

연번	성명	성별	연령	학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작일/ 종결일	교육 시작일	이용기간	보호자	비고

[서식-05] 방과후 아동 관리표

200 년도 방과후 교실 아동관리표

사 진				
성 명				
연 령				
학 교				
연 락 처				

사 진				
성 명				
연 령				
학 교				
연 락 처				

사 진				
성 명				
연 령				
학 교				
연 락 처				

아 동 사 항 기 록 지

◎ 접수일 : 년 월 일

■ 생육사

1) 결혼시

결혼년도	년 (결혼당시연령: 부 - 세 / 모 - 세)				
교제유형	중매	연애	중매+연애	교제기간	년 개월
결혼동기	'				

2) 임신시

약복용	무 · 유 ()개월, 내용:
질환	무 · 유 ()개월, 내용:
입덧	무 · 유 ()개월, 내용:
충격	무 · 유 ()개월, 내용:
심리상태	안정 · 불안정, 내용:
계획된 임신	예 아니오
임신에 대한 반응	부 : 좋았다 안 좋았다 이유: 모 : 좋았다 안 좋았다 이유:
유산	무 · 유 임신순위() 자연 · 인공 이유:
사산	무 · 유 임신순위() 자연 · 인공 이유:

3) 출생시

산모연령	세	임신기간	
분만상태	순산 난산 제왕절개	신생아 체중	Kg
황 달	무 · 유 기간:	산소호흡기사용 인큐베이터사용	무 · 유 기간: 무 · 유 기간:

4) 수유 및 식사

수유방법	모유()개월	우유()개월	모유+우유()개월	젖병 떼 시기()개월
이유식	시작시기 : 방법:			
식습관	편식(무.유) 내용: 식사태도:			

5) 대소변 훈련

대변	시작시기:	가린시기:	현재: 정상, 변비, 유분
	방법:		
	아이반응:		
	부모반응:		
소변	시작시기:	가린시기:	현재: 정상, 변비, 유분
	방법:		
	아이반응:		
	부모반응:		

6) 수면 및 활동

보챌음	무 · 유 언제까지: 정도:
잠버릇	
함께 자는 사람	유아: 현재:
활동량	3세 이전: 과소 . 보통 . 과다 3세 이후: 과소 . 보통 . 과다

7) 병력

고열	무 · 유 시기:	경기	무 · 유 시기: 횟수:
질환(시기, 병명, 입원유무, 치료기간) :			
현재 건강상태			

8) 가족 또는 친지 중 병력이 있는 경우

병력	발달장애	정서장애	행동장애	학습장애	신체장애	섭식장애	틱	결핵
관계								
병력	알콜중독	약물중독	우울증	정신병	반사회적 행동	신체장애	간질	기타
관계								

9) 예전 상담 및 치료 상황

연령	기관명	진단	교육, 치료여부	기간	그만둔 이유

■ 발달사

1) 신체발달

- 항목 : 목 가누기(2). 기기(6). 걷기(12-3). 숟가락질하기(24). 옷벗기(24) 옷입기(36)
- 내용 :

2> 언어 및 인지발달

용알이(2~3)	개월	양: 많음	보통	적음	없음
첫말단어(8~14)	개월	내용:			
현재언어	표현력: 이해력:				
인지상태	빠름	보통	느림	기타:	

3> 사회 및 정서발달

눈맞춤	무 · 유	낮가림	없음. 적음. 보통. 많음
엄마를 언제 알아보았나		엄마 없이도 놀았나	예 아니오
좋아하는 놀이		좋아하는 장난감	
성격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기타 관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			

■ 교육사

학령전 교육	연령	내용	아동반응	대처반응
	교육기관의 아이에 대한 반응			
초등학교	잘하는 과목	못하는 과목	학년별 성적	학업태도
	교육기관의 아이에 대한 반응			
과외 활동	시기	내용	아동반응	대처반응

■ 기타 양육 상 특이사항

--

■ 이혼(또는 사별) 및 재혼에 관련된 사항

이혼 또는 사별 년도		
이혼 동기 (사별 원인)		
아동 반응		
대처방법		
부모의 현재 상태	재혼유무 (부 - / 모-) 교제 중 (부 - / 모-)	
재혼(또는 교제) 정도		
재혼(또는 교제) 동기		
아동 반응		
대처 방법		
아동은 현재 누구와 함께 지내나		
다른 한쪽 부모와는 어떻게 지내나	만남 횟수	
	무엇을 주로 하나	
	아동 반응	
	대처 방법	

■ 보호자 희망사항 - 방과후교실에 바라는 점

방과후아동교실 이용서약서

본 서약서는 방과 후 아동교실 _____ 부모님과의 서약입니다.

- 서 약 사 항 -

1.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와 직장, 학원 등 아동신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0 0 0교실'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아동이 결석을 할 경우 '방과후교실'에 결석사유를 알리도록 합니다.
3. 등원하기 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
4. 아동이 전염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아동지도자에게 즉각 통보하여야 하며 아동지도자의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5. 아동의 질병으로 아동지도자가 귀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아동을 귀가 시켜야 합니다.
6. 응급조치 이상의 긴급 의료행위가 요구될 시에는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모에게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만 아동지도자가 맡게 됩니다.
단,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아동지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7. 0 0 0에서 진행하는 부모상담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석합니다.

200 년 월 일
보호자 (인)

[서식-08] 방과후 교실 이용 종결신청서

방과후 교실 이용 종결 신청서

아 동 명 /학년:

주민등록번호 :

이용기간 : 년 월 ~
 년 월(개월)

위 아동은 _____의 사유로 한부모가족 자녀 방과후 돌
봄 ‘방과후 교실’ 이용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작성자(관계/이름 및 서명) : / (인)

확인(담당)자 : (인)

0 0 0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귀하

[서식-09] 운영일지 및 교사업무일지

방과후 교실 운영일지

담 당	팀 장	총괄팀장	센터장
/			

일 시		200 년 월 일		요일				
아동 등원 · 귀가 시간표						출석: () / 명		
이름	등원시간	귀가시간	이름	등원시간	귀가시간	이름	등원시간	귀가시간
진행내용(시간/내용)								
12:00-14:00								
14:00-15:00								
15:00-16:00								
16:00-17:00								
17:00-18:00								
18:00-19:00			석식이용아동()					
19:00-20:00								
프로그램 내용 및 평가								
자원봉사자관리						주요 사항		

업 무 일 지

200 년 월 일 ()

결 재	담당	팀장	총괄 팀장	관장

○ 소속 :

○ 직위 :

○ 담당 :

시 간	실 시 사 항	실시에정사항
기타 특이사항		
평가		
수퍼비전 및 지시사항		

[서식-10] 자기관리계획표(아동용)

방과후 교실에서의 나의 하루

1. 내일의 준비물 전화 드리기 <확인란 >
2. 주간목표 :

일	시	200 년 월 일 요일	
오 후	방과후 교실 시간표		내가 정한 나의 시간표
	12:00 ~ 2:00	등원 · 자유놀이	
	2:00 ~ 3:00	숙제시간	1. (확인) 2. (확인) 3. (확인) 4. (확인) 5. (확인) 6. (확인)
	3:00 ~ 4:00	간식 · 자유놀이	
	4:00 ~ 5:00	특별활동	
	5:00 ~ 6:00	숙제점검	
	6:00 ~ 8:00	저녁식사 · VTR시청	
	8:00 ~ 9:00	독서 및 귀가	

[평가지-02] 학부모의견 수렴설문지

< 설 문 지 >

000 교실에 보내주시는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000 교실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 표 하고 의견을 적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000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I. 000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 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어떤 일(사업)을 하는 곳인지 잘 알고 있다.
- ②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어떤 일(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름은 들어보았다.
- ③ 건강가정지원센터 명칭을 처음 들어보았다.
- ④ 기타 (_____)

II. 방과후 교실 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3. 방과후 교실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비교적 만족	매우만족
1	2	3	4	5

3-1. 2점 이하를 선택하신 경우 그 이유는?

()

4. 000 교실은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u>매우</u> <u>그렇지 않다.</u>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u>매우</u> <u>그렇다</u>
1	2	3	4	5

8. 자녀가 방과후 교실에서 일상생활지원교사를 통한 병원동행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네(8-1로 이동) ② 아니오(9로 이동) ③ 제공되는지 몰랐다

8-1. 만약 이용한 적이 있다면 병원동행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u>매우불만족</u>	불만족	보통	비교적 만족	<u>매우만족</u>
1	2	3	4	5

8-2. 2점 이하를 선택하신 경우 그 이유는?

()

9. 0 0 0 교실 내부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u>매우불만족</u>						<u>매우만족</u>
0	1	2	3	4	5	

9-1. 2점 이하를 선택하신 경우 그 이유는?

()

10. 0 0 0 교실 운영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u>매우불만족</u>						<u>매우만족</u>
0	1	2	3	4	5	

10-1. 2점 이하를 선택하신 경우 그 이유는?

()

11. 아동 숙제 및 학습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u>매우불만족</u>	불만족	보통	비교적 만족	<u>매우만족</u>
1	2	3	4	5

11-1. 2점 이하를 선택하신 경우 그 이유는?

()

12. 방과후 교실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인성/체육/음악/미술/컴퓨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비교적 만족	매우만족
1	2	3	4	5

15-2. 2점 이하를 선택하신 경우 그 이유는?

()

16. 방과후교실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네 ② 아니요 ③ 기타()

17. 아버지간담회를 통해 어떤 점을 얻기를 원하십니까(택1)? ()

① 센터에 대한 이해 ② 방과후교실에 대한 이해 ③ 교사와의 교류
 ④ 학부모간의 교류 ⑤ 기타 ()

18. 센터 또는 방과후 교실에 바라는 점 또는 건의사항(개선사항)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평가지-03] 방학중 맞춤형 만족도설문지

< 설 문 지 >

방과후 교실에 보내주신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000 교실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
 오니, 바쁘시더라도 성의껏 작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000구 건강가정지원센터-

1. 방과후 교실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비교적 만족	매우만족
1	2	3	4	5

1-1. 2점 이하를 선택하신 경우 그 이유는?

()

2. 방과후 교실 세부내용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구 분	만 족 도					기타 *사유 기재
	매우불만족 1	2	3	4	매우만족 5	
안전한 보호 제공						
교사(보호, 지도 등)						
간식(양 및 질)						
중식(양 및 질)						
석식(양 및 질)						
병원동행서비스						
방과후 교실 내부시설						
방과후 교실 운영시간						
아동 숙제 및 학습지도						
프로그램 (인성/체육/음악/미술/컴퓨터) * 필요시 줄을 추가						
현장학습체험						

3. 가족 또는 아동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센터 또는 방과후교실에서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네(3-1로 이동) ② 아니오(4으로 이동) ③ 제공되는지 몰랐다

3-1. 만약 받은 적이 있다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비교적 만족	매우만족
1	2	3	4	5

3-2. 2점 이하를 선택하신 경우 그 이유는?

()

4. 방과후 교실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네 ② 아니오 ③ 기타()

5. 방학중 맞춤형 운영이 한부모가족을 위한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네 ② 아니오 ③ 기타()

6. 다음 방학에도 방과후교실을 이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 ① 네 ② 아니오 ③ 기타()

7. 방과후교실을 이용하시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8. 센터 또는 방과후 교실에 바라는 점 또는 건의사항(개선사항)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감 · 사 · 합 · 니 · 다 -

[평가지 04] 방과후교실 최종이용 만족도설문지

< 설 문 지 >

방과후 교실에 보내주시는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용기간동안의 방과후교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성의껏 작성해주시
기를 부탁드립니다.

- 000구 건강가정지원센터-

1. 이용 기간 동안의 방과후 교실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비교적 만족	매우만족
1	2	3	4	5

1-1. 2점 이하를 선택하신 경우 그 이유는?

()

2. 방과후교실 세부내용 및 서비스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구 분	만 족 도					기타 *사유 기재
	매우불만족 1	2	3	4	매우만족 5	
안전한 보호 제공						
교사(보호, 지도 등)						
간식(양 및 질)						
중식(양 및 질)						
석식(양 및 질)						
병원동행서비스						
방과후교실 내부시설						
방과후교실 운영시간						
아동 숙제 및 학습지도						
프로그램 (인성/체육/음악/미술/컴퓨터)						
현장학습체험						

제2절 부자가족 사례관리

1. 부자가족 사례관리의 목적

- 본 사업은 부자가족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례관리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부자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과 조정 및 개입의 효과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가족기능 강화, 가족문제 해결 및 예방을 돕고자 함.

2. 부자가족 사례관리의 목표

- 부자가족의 경제적, 의료적, 사회적, 가족 욕구나 다양하고 복합적인 가족문제 해결에 대한 통합적인 가족지원차원의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가족기능강화와 가족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부자가족 개별 가족구성원 욕구에 맞는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및 프로그램 발굴 및 연계.

3. 부자가족 사례관리사업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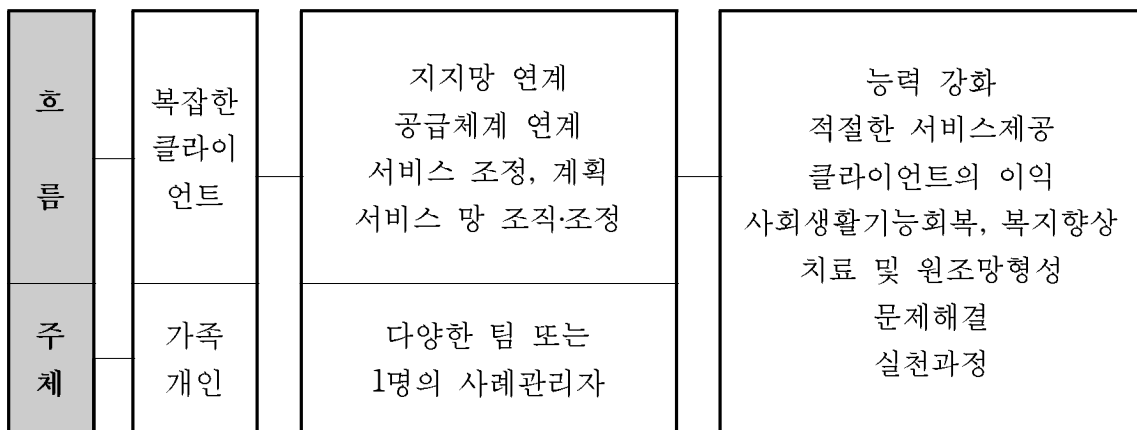
1) 일반적 사례관리의 이해

(1) 사례관리의 일반적 정의

사례관리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클라이언트의 지식, 기술, 태도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지지망을 활용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Julius R. Ballew & George Mink)
- 한 사람의 케이스 매니저가 클라이언트와 복잡한 서비스 공급체계를 연계하여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Jonson & Rubin, 1983)
-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직원들로부터 제공받을 서비스를 계획하고 추구하고 검토하는 일련의 절차(Barker, 1991)
- 어떤 한 사람 또는 여러 명으로 구성된 팀이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생활 기능이나 복지를 최대한도로 유지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 공식적·비공식적인 서비스의 망을 조직, 조정하는 것(Moxley, 1989)
- 지역사회내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별화된 조언·상담·치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기관 및 비공식적인 원조 관계망에 연계 시켜 주는 미시적, 거시적인 실천(Rohtman, 1992)
 - 복잡한 혹은 복수의 니드를 가진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을 사정하여 클라이언트 및 그 가족의 문제해결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케어매니저가 리더가 되어 팀 단위로 적절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장창호, 2001)
 - 개별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욕구에 초점을 두고, 기관의 목적보다는 클라이언트의 목적에 기반을 두며, 이미 고안된 프로그램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에 기반을 둔 실천(장인협·우국희, 2001)



(그림 2-1) 학자들의 사례관리 정의

<표 2-1>과 같이 복잡한 욕구와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출발점으로 원조망의 형성과 서비스 조정, 계획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 및 치료, 복지향상에 목적을 둔 것을 사례관리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개념 하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적절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투입하면서, 동시에 타기관과의 서비스를 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계획에서 서비스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 자체의 계획아래 서비스를 투입하고 그 과정에서 중복 및 협조가 필요할 경우 일시적인 조정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2) 사례관리자의 전제조건

사례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사례관리자는 대상가족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위해 사례관리 과정에 준하여 서비스 제공 절차 및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전문가적 역량을 지닌 자이며, 필요한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지역사회가 새로운 자원과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제안하는 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사례관리자가 갖추어야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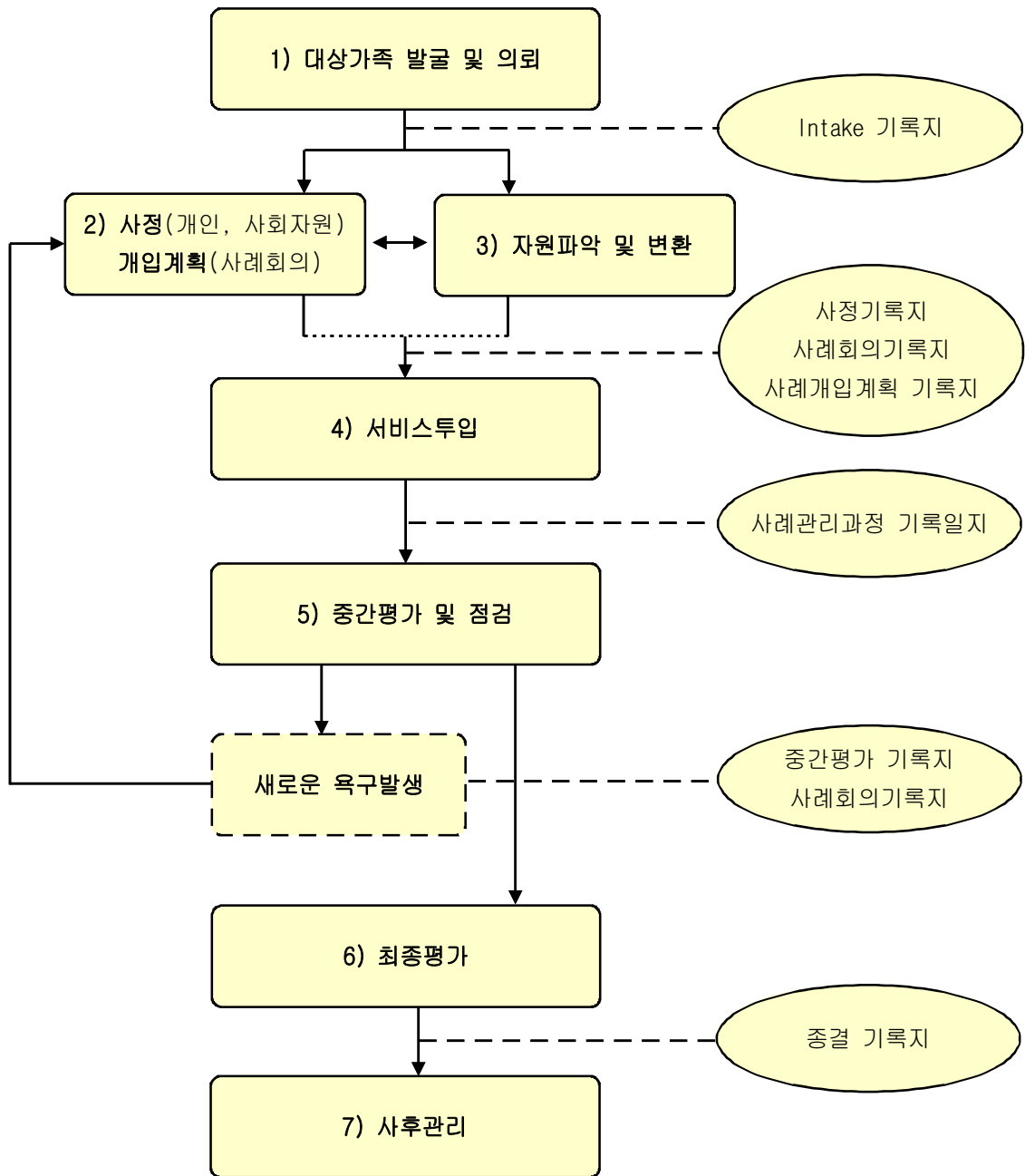
- 대상가족의 강점과 능력 확인
- 필요한 욕구에 맞는 자원을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
-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가 실제로 전달되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권한
-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역량
- 개입의 효과와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

2) 부자가족 사례관리 모형도

부자가족 사례관리사업의 기본 모형도는 각각의 과정에 사용되는 서식 틀과 함께 <그림2-1>과 같이 제시하였다.

사례관리 모형도는 크게 ①대상가족 발굴 및 의뢰, ②사정 및 개입계획, ③서비스투입, ④평가 및 사후관리로 나뉘며, 사례관리 중간에 발생하는 사례회의, 자원파악 및 변환, 중간평가 및 점검 등이 세부과정으로 발생된다.

사례관리 서식은 ①대상가족의 발굴 및 의뢰 후 인테이크 용지를 이용한 대략적인 정보파악, ②사정용지와 사례회의 통한 사례개입계획을 수립, ③개입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자원파악과 자원을 투입·활용 가능하도록 변환하는 작업, ④서비스를 투입하고 서비스 과정용지를 통해 서비스 점검, ⑤중간평가용지 작성과 사례회의기록지를 통한 중간평가 및 점검에서 사용되며, 새로운 욕구가 발생했을 때는 다시 위의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이후 ⑥최종평가를 통한 사례관리 종결 실시하고 ⑦사후관리의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그림 2-2) 부자가족 사례관리 모형도

3) 부자가족 사례관리 과정

부자가족 사례관리 과정은 사례관리 모형도를 기준으로 대상가족 발굴 및 의뢰, 자원파악, 사례관리개입계획, 서비스투입, 중간평가 및 점검, 최종평가, 사후관리 순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1) 대상가족 발굴 및 접수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가족을 개발 또는 의뢰 받아 그들의 생활실태와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본 센터의 사례관리 및 서비스 이용에 욕구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단계를 말한다.

■ 부자가족 사례관리 대상가족 발굴 및 의뢰 방법

① 지역주민

사례발굴경로 중 지역주민에 의한 발굴은 다른 발굴 경로보다 그 비율이 가장 높다. 이렇게 대상가족을 의뢰하는 지역주민의 종류도 3종류로 분류해 볼 수 있다.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센터에 대해 알고 있고, 자신의 주위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의뢰하는 경우이다.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원봉사자들 또는 지역 내 자원봉사단체들이다. 센터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관련 단체들의 대부분이 지역주민들이며, 이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및 활동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가족 발굴에도 적극적인 인적자원이다.
-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들이다. 이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대상가족 발굴에 유용한 인적자원이다.

② 관공서 의뢰

관공서의 의뢰는 관공서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그 의뢰 대상가족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 시·군·구청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비뿐만 아니라 센터 일부서비스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는 여러 가지로 많은 관련이 있는 곳이다. 따라서 구·시청에서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된 대상가족의 의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밀반찬배달 이용자의 의뢰나, 식사배달 이용자의 의뢰 등 특정 서비스와 관련된 의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대상자 의뢰라기보다는 통보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통보와 함께 그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가족 의뢰 이후 사례관리의 전 과정은 센터의 역할로 넘어오게 된다.

이렇게 서비스와 관련된 의뢰를 제외하고서라도 시·군·구청은 여러 가지 민원상황을 접하게 되며, 민원상황 중에 대상가족의 의뢰와 관련된 사항 발생시 센터에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다.

- 동사무소의 경우 최일선의 행정기관으로 센터와도 많은 관련을 맺고 있는 곳이다. 동사무소의 경우 밀반찬이나 식사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을 통하여 복지관등에 대상자를 의뢰하지만, 그밖에 가정봉사원, 결연후원, 일반적인 상담 및 사례관리 부분의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의뢰를 하게 된다.

③ 사회복지기관 및 자원연계기관의 의뢰

- 사회복지기관은 지역사회 다양한 복지기관 및 단체 또는 자원연계(예정)기관의 일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를 센터에 의뢰하는 경우로 한 기관이 대상자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소요할 수 없으므로 자원의 분배를 통해 대상자의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대상가족이 연계되는 경우도 있다.

(2) 대상가족 접수 형식

- 대상가족 발굴 및 의뢰과정에서 발굴된 대상가족을 접수할 시 기본적인 인적사항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때 필요로 하는 Intake 기록지는 기관별, 대상별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사례관리사업 운영시 협의된 공통의 Intake 기록지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업무지침에선 <표2-2>와 같이 부자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적인 Intake 기록지 구성과 <서식11>의 Intake 기록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표2-2> Intake 기록지 구성

구분	세부내용
접수경로	대상자 직접요청, 사례관리자 직접발굴, 타기관 의뢰, 다른 대상자 소개
주요대상자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건강상태 및 질병유무
가족사항	가족구성원사항(관계, 연령, 직업, 동거유무, 연락처), 가족형태, 보호구분
경제상태	월수입(수급액, 가족수입, 기타수입), 월지출(보증금, 월세, 부채, 저축, 기타지출)
주거상태	주거형태 및 기본구조, 소유형태
가족상황파악	주요문제, 필요한 서비스, 면접내용(표출문제, 심각성, 욕구정도, 가정사 등)
사례개입여부	기록지 내용을 기초한 사례관리자 면접소견, 사례판정 정도

<서식-11> Intake 기록지

Intake 기록지

접수번호			사례관리자			접수일자	년 월 일()	
접수경로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직접요청(방법:) <input type="checkbox"/> 사례관리자 직접발굴 <input type="checkbox"/> 다른 대상자 소개 () <input type="checkbox"/> 타기관 의뢰()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요 대상자	성명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						
	직업	<input type="checkbox"/> 정규직 <input type="checkbox"/> 계약직 <input type="checkbox"/> 일용직 <input type="checkbox"/> 무직 (직종 및 내용:)						
	건강	건강정도	1.양호 2.보통 3.허약	질병유무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질병명: , 기간: 년 개월)			
가족 및 동거 사항	성명	관계	연령	직업(학년)	동거유무	건강정도	연락처	기타
형태 분류	유형	<input type="checkbox"/> 부자(사유:) <input type="checkbox"/> 미혼부자(사유:) <input type="checkbox"/> 기타(사유:)						
	보호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수급 <input type="checkbox"/> 조건부수급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의료특례 <input type="checkbox"/> 법정저소득한부모 <input type="checkbox"/> 일반한부모						
경제 상황	수입	월 수입 원(수급액 원 + 가족수입 원 + 기타 원 ...)						
	지출	월 지출 원(보증금 원 + 월세 원 + 부채 원 ...)						
주거 상황	주거형태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 <input type="checkbox"/> 일반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임대아파트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방(개) <input type="checkbox"/> 화장실(개) <input type="checkbox"/> 주방() <input type="checkbox"/> 기타 ()						
	소유형태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전세()만원 <input type="checkbox"/> 월세(계약금 만원/월 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요문제 (중복가능)	<input type="checkbox"/> 경제문제 <input type="checkbox"/> 건강문제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 <input type="checkbox"/> 주거문제 <input type="checkbox"/> 대인관계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 <input type="checkbox"/> 자녀문제 <input type="checkbox"/> 가사문제 <input type="checkbox"/> 위생문제 <input type="checkbox"/> 의료지원 <input type="checkbox"/> 사회지원 <input type="checkbox"/> 학교문제 <input type="checkbox"/> 이성문제 <input type="checkbox"/> 기타()							
필요한 서비스 (중복가능)	가사영양	<input type="checkbox"/> 집안청소 <input type="checkbox"/> 식사준비 <input type="checkbox"/> 세탁 <input type="checkbox"/> 밀반찬제공 <input type="checkbox"/> 도시락제공 <input type="checkbox"/> 김장서비스						
	심리/생서	<input type="checkbox"/> 상담지원 <input type="checkbox"/> 말벗 <input type="checkbox"/> 안부전화 <input type="checkbox"/> 문화활동지원 <input type="checkbox"/> 생일잔치 <input type="checkbox"/> 가족명절행사						
	양육/교육	<input type="checkbox"/> 아이돌보미 <input type="checkbox"/> 학습지원 <input type="checkbox"/> 부모교육 <input type="checkbox"/> 교육지원(학원, 학습지)연계						
	의료/수발	<input type="checkbox"/> 건강검진 <input type="checkbox"/> 방문진료 <input type="checkbox"/> 무료진료 <input type="checkbox"/> 약품구입 <input type="checkbox"/> 병원동행 <input type="checkbox"/> 수발지원						
	주거/취생	<input type="checkbox"/> 주거제공 <input type="checkbox"/> 난방료제공 <input type="checkbox"/> 집수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설입소 <input type="checkbox"/> 목욕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아·미용서비스						
결연/기타	<input type="checkbox"/> 결연후원 <input type="checkbox"/> 후원물품 <input type="checkbox"/> 시설이용 <input type="checkbox"/> 정보제공 <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기타()							
면접 내용	<대상자의 외양인자정서행동 등>							
	<표출된 문제의 심각성 및 욕구정도>							
	<사회적 지원 정도, 가정사>							
면접 소견								
사례판정	<input type="checkbox"/> 집중 <input type="checkbox"/> 우선 <input type="checkbox"/> 차선 <input type="checkbox"/> 보류 <input type="checkbox"/> 기타()							

(2) 대상가족 사정 및 사례개입계획수립

사정을 통한 사례개입계획수립이란 Intake 기록지를 통해 파악 된 대상가족에게 투입 될 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하기 위해 대상가족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질적·양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개입정도를 계획하는 단계를 말한다.

■ 사정 및 사례개입계획수립 방법

① 사정을 위한 사정 기록지 작성

대상가족 접수 과정에서 욕구가 파악된다면, 대상가족의 개별 구성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 기록지 작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정 기록지는 기본적으로 대상가족의 문제를 좀 더 정확히 구체화해 내고, 구체화된 문제(심리, 사회, 신체적 문제 등) 정도에 따라 어떤 서비스가 어느 정도로 투입이 요구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며, 이렇게 작성된 사정 기록지는 이후에 사례관리 중 진행 될 중간점검 및 사례회의 등의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② 사례회의를 통한 사례개입계획수립

사례회의는 기본자료(Intake 기록지, 사정 기록지)를 중심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때, 대상가족의 주요문제와 욕구, 심각성 등을 고려한 사례개입계획과 개입정도 등에 대한 회의가 이루어지며, 이 시기에 사례관리 개입정도에 대한 판정과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개입계획수립을 모두 마치게 된다.

원론적으로는 사례회의를 통해 개입계획을 완료하는 것이지만, 회의의 빠른 진행을 위해 보통의 경우 담당사례관리자가 사례개입계획을 미리 준비하여 발제문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사례개입계획수립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대상가족의 문제설정을 해야 한다. 문제설정은 사정 기록지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단계이며, 구체적이고 정확한 문제설정이 되어야만 목표를 설정하는 데 좀 더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 할 수 있다.

목표의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려된 상태로 만들어야만 하며, 평가를 할 수 없는 목표는 목표일 수 없다. 예를 들면, 부자가족의 아버지가 조리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양상태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밀반찬배달서비스를 제공(연계)하여 영양상태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현재의 복지체계에서의 일반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목표를 단지 ‘밀반찬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결정해 놓는다면 평가를 하는 것이 매우 모호해 질 수 있다. 문제의 설정은 ‘영양상태가 좋지

못한 것’, 일반목표는 ‘밀반찬배달 서비스를 통해 영양상태를 향상시킨다.’ 라고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평가를 고려한 세부목표로는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밀반찬배달서비스의 밀반찬이 배달 횟수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밀반찬배달서비스를 주 1회 6개월 동안 제공한다.’ 라고 목표를 잡는다면, 6개월 동안의 목표치와 실제 횟수를 비교해서 그 목표의 달성정도를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실적관련 평가뿐만 아니라, 밀반찬배달서비스에 대한 질적·양적·시간적·연속적 상황들을 면접(만족도)을 통해 평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③ 자원형성과정

사례개입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형성에 대한 계획을 살펴보는 것이다. 자원형성은 기존에 준비되고, 바로 투입이 가능한 자원도 있지만, 새로이 개발을 해야 하거나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야만 투입될 수 있는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자원파악과 변환의 단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 이때 자원이 결정되어 서비스투입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대략적인 과정과 자원형성을 담당자를 정하는 것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사례회의의 진행은 보통 사례관리를 주관하는 팀의 팀장, 슈퍼바이저, 담당자 3인이 참석하여 진행한다.) 자원형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지역사회 자원파악 및 서비스별 가능자원파악’에서 다루도록 한다.

■사정형식

① 사정 기록지

본 업무지침에서 사정 기록지는 <서식-12>와 같이 제시하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사정 기록지는 인테이크 기록지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양적평가와 질적평가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양적평가는 4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질적평가는 특이사항 및 양적점수가 나오게 된 이유를 기술하도록 구성하였다. 더불어 대상가족의 사정과정에 있어 제시한 사정 기록지를 사용하되, 사례관리자는 대상가족별 다양한 상황에 따라 사정 기록지를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서식- 12> 사정 기록지

사정 기록지

1) 일반적 상황						접수번호	
주 대상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학 령		종 교		직 업			
가족형태	□부자(사유:) □미혼부자(사유:) □기타()						
	사 유	■모 사망 ■부모 이혼 ■부모 별거 ■기타()					
가족사항	이름	관계	생년월일(연령)	직업(학년)	동거유무	연락처	기타

*설명: 일반적 상황은 주 대상자를 중심으로 가족의 일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대상가족의 특성에 따라 추가되어야 할 사항은 가변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2) 경제 및 주거 상황

수 입	월 평균 수입액 :			
	구 분	내 역	산출액	
	근로소득			
	정 부 지원금			
	후원금 기 타			
지 출	월 평균 지출액 :			
	구 분	내 역	산출액	
	생활비			
	주거유지비			
	교육비			
	교통비			
	의료비 기 타			
자 산	구 분	내 역	산출액	
	부동산 동 산			
부 채	구 분	내 역	산출액	
주 거	소유형태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 <input type="checkbox"/> 일반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임대아파트 <input type="checkbox"/> 기타 ()		
	주거비용	보증금 원 / 전·월세 원 / 기타() 원		
	주거규모	방 칸(방1: 평 / 방2: 평 / 방3: 평) 거실 평 / 주방 평 / 화장실 평 / 기타() 평	총 평	
	시설유무	냉방시설:	<input type="checkbox"/> 선풍기 <input type="checkbox"/> 에어컨 <input type="checkbox"/> 기타()	
		난방시설:	<input type="checkbox"/> 기름 <input type="checkbox"/> 가스 <input type="checkbox"/> 연탄 <input type="checkbox"/> 전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방시설:	<input type="checkbox"/> 싱크 <input type="checkbox"/> 냉장고 <input type="checkbox"/> 가열기구(종류:) <input type="checkbox"/> 기타()	
		위생시설:	<input type="checkbox"/> 욕조 <input type="checkbox"/> 샤워실 <input type="checkbox"/> 세탁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문화시설:	<input type="checkbox"/> 컴퓨터 <input type="checkbox"/> TV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침대 <input type="checkbox"/> 책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환경정도				

*설명: 경제 및 주거 상황은 서비스 및 자원 투입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때문에 대상자와의 면접 및 가정방문 확인을 통해 객관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①수입의 경우, 보호형태(일반수급, 조건부수급, 의료특례, 법정 저소득 등)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이 다르며,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를 통한 후원을 통한 별도 지원금(혹은 지원물품)의 발생 유무와 횟수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②주거시설의 경우, 시설유무와 함께 사용유무(고장, 사용중지), 낙후정도 등을 확인하여 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이유로 서비스개입계획에 무조건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③환경정도는 주거지 낙후정도(결류현상, 생활동선문제, 구조 및 시설문제), 도배·장판, 상·하수도, 주거지 주변환경 상태 등을 작성하도록 한다.

(3) 가족·사회적 상황

가정사	
가계도	
생태도	

*설명: 가족·사회적 상황은 주 대상자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①가정사의 경우, 사례관리자가 문제개입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수집을 위한 목적이며, 필요에 따라 원가족의 사항도 확인한다. ②가계도의 경우, 동거상태, 사망유무, 연령, 직업 등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며, 가족구성원간의 관계정도(밀착관계, 갈등관계, 에너지방향 등)도 작성하도록 한다. ③생태도의 경우, 대상가족의 활동영역, 주관심사, 주변자원 지원정도, 상호관계 등에 대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면접 시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확인한다.

(4) 건강상태

대상자명			연령		
건강상태	건강정도	<input type="checkbox"/> 아주 나쁨 <input type="checkbox"/> 약간 나쁨 <input type="checkbox"/> 좋음 <input type="checkbox"/> 매우 좋음			
	질병유무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질병명:)	질병기간	년	개월
	만성질환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질병명:)		년	개월
장애유무	<input type="checkbox"/> 지체장애(급) <input type="checkbox"/> 시각장애(급) <input type="checkbox"/> 청각장애(급) <input type="checkbox"/> 언어장애(급) <input type="checkbox"/> 정신지체(급) <input type="checkbox"/> 정신질환(급) <input type="checkbox"/> 기타()				
심체 및 신체기능	측정도 (낮음↔높음)		내용 (주간적 의견)		
	○일상동작능력				
	○생활(인지적)능력				
○정신건강상태					
기타의견					

*설명: 건강상태는 주 대상자를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가족구성원 개별로 조사한다. 이때 질병 및 장애유무 이외에 심신의 건강과 기능에 대한 정도를 사례관리자의 주관적 측정과 더불어 대상자의 주관적 측정을 동시에 실시하여 사례관리 개입이후의 변화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①일상동작능력은 대상자가 일상적으로 걷기, 의자에서 앉았다 서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눕기, 청소, 용변, 세면동작 등의 신체기능 정도를 말한다. ②생활(인지적)능

력은 몸이 아플 때 증상에 따른 처치방법, 대중교통 이용방법, 누설 및 가스불의 위험성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 금전관리 능력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억, 판단, 방향감각 등과 같은 인지적 능력을 말한다. ③정신건강상태는 현재 대상자의 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생활고, 대인관계문제 등으로 인한 우울감, 좌절감 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정도, 자기표현방법 및 능력 등을 사례관리자의 입장과 대상자의 입장을 측정한다. 이 3가지 측정도는 사례관리 시 지속적 확인을 통해 개입효과의 질적정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서비스 이용 현황

이용경험 서비스	서비스명		이용상황	비고(현재이용빈도, 중단사유 등)
	1			
	2			
	3			
이용희망 서비스	서비스명		이용경험	비고(시급성, 재개입여부, 욕구정도 등)
	1			
	2			
	3			

*설명: 서비스 이용 현황은 대상가족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정도 및 기관 및 단체의 개입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과거의 서비스 이용경험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상황 등을 조사하여 이용을 희망하는 서비스와 그 서비스에 대한 연계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만족정도, 중단된 사유, 희망하는 서비스 개입의 시급성, 욕구정도 등을 조사하여 서비스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사례회의 기록지

사례회의 기록지는 <서식-13>과 같이 사례개입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례회의에서 사용되며, 회의의 내용을 기록·정리하고 사례개입계획 및 사례에 반영함으로써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추진방향성 제시, 사례관리 평가의 평가 도구로 활용이 된다. 이때 사례회의 진행을 위한 논의될 사례에 대한 회의자료와 함께 주요적인 회의내용과 결정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편철하도록 한다.

<서식-13> 사례회의 기록지

사례회의 기록지

회의명			
일시		장소	
참석자			
논의사례			
주요내용			
결과			

③ 사례개입계획 기록지

<서식-14>인 사례개입계획 기록지는 문제 설정, 개입계획이 모두 정해진 상태에서 작성되는 기록지이기 때문에 대상가족의 문제에서 서비스 투입과 기대되는 평가까지 일련의 논리적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급성에 준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가족의 문제와 일반목표와 하위목표로 사례개입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서비스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목표 달성 시 기대되는 효과와 평가방법을 작성한다. 이때 평가방법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그 평가 양식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서식-14> 사례개입계획 기록지

사례개입계획 기록지

대상가족					접수번호			
문제 및 욕구		문제1		문제2		문제3		
목표	일반 목표							
	하위 목표							
기대효과								
평가방법								
서비스 투입 계획		서비스명	제공자(기관)	개시일	횟수	우선순위	비용	
사례관리자 의견		개입계획경로						
		자원확보계획						
		기타						

3) 지역사회자원 파악 및 서비스별 가능자원파악

지역사회자원을 파악하여 대상가족에게 제공 될 서비스에 적합한 자원을 투입 가능하게 변화시키는 단계를 말한다.

(1) 자원의 구분

사례개입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입계획에 적당한 자원의 형성 정도이다. 자원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다.

첫째, 센터 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는 자원으로 단위사업이 만들어져 있고, 상시적으로 투입가능하며, 투입이 즉각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경우이다.

둘째, 자원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지만, 상시적으로 투입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필요시에만 투입되는 자원을 들 수 있다.

셋째, 전혀 자원의 존재도 알 수 없고, 접근을 시도해 본적도 없는 자원을 말한다. 다시 말해, 자원개발을 전제로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제적 지원을 위한 결연 후원을 들 수 있는데, 신규로 결연 후원을 맺기 위해서는 결연 후원자를 새롭게 개발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다음의 <표2-3>과 같이 기존의 자원 및 개발이 필요한 자원에 대한 색인 목록을 작성하여 지속적인 자원관리를 하면 사례관리의 서비스 연계에 효과적

일 수 있다.

<표2-3> 사례관리 서비스제공을 위한 자원 색인

서비스	자원주체	투입내용	가능횟수	개발시기
밑반찬 제공서비스	자원봉사센터	대상자 집까지 식사배달	매일	08.3..5
...

(4) 서비스 투입

계획된 사례개입계획에 따라 자원을 투입하고 관리하여 개입계획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실천을 하는 단계이다.

■ 서비스 투입방법

사례관리의 자원과 관련된 대상가족 서비스 투입방법은 3가지 정도 이다.

- 자원 투입을 통해 인적자원과 대상가족 스스로 관계를 형성하여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같은 서비스) 본 자원 투입 방법은 인적자원과 기관간의 신뢰감이 중요하며, 서비스 및 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사례관리자 자신이 문제해결을 위해 비용과 시간을 투여하여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이다. 사례관리자 가정방문 면접이 대표적인 서비스이며, 가정방문의 목적은 정서지지, 가사도움, 정보파악, 욕구파악, 치료 등 개입 계획 및 시행을 위한 계획된 가정방문상담, 전화상담, 이동상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긴급한 주거환경개선, 위기의료지원이나 이사 등 사례관리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으며, 위기개입의 경우 사례관리자가 대부분 직접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투여가 많이 필요한 경우이다.
- 투입한 자원과 사례관리자가 함께 이용자와 관계를 맺으며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법원과 연계한 소송건 등으로 이런 경우 사례관리자는 대상가족의 옹호자 대변자로 행정서비스, 동행서비스 등을 실시하게 되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는 실질적인 사건 해결을 담당하게 된다. 이럴 경우 투입한 자원과 사례관리자 그리고 대상가족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3가지의 방법은 이용자의 상황, 자원의 수급여부, 사회복지사의 역량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판단되며, 결코 어떤 방법이 우위에 있다고 말 할 수는 없다.

■ 대상의 구분

서비스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대상가족의 유형에 따라 서비스 투입 사례수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중요한 부분이며, 이것은 서비스 투입 한계의 관리와 사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때문에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지역의 대상자와 사례관리자의 담당 사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상가족별 서비스 투입정도의 구분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기적·체계적인 서비스 투입이 필요한 우선대상자, 긴급한 경우는 위기개입이용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선이용자로 선정하여 관리하는 방법 등의 기준을 <표 2-4>와 같이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2-4> 부자가족 사례관리 대상자 구분

구분	내용	적정사례수
우선이용자	상시서비스가 투입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지지체계 연결이 중요하게 필요한 이용자로서 주요 사례관리 대상자를 말한다.	00 Case
차선이용자	상시서비스를 필요하지만, 자원투여가 완료되어 가정방문이 필요하지 않은 이용자 또는 상시서비스는 필요 없으며, 계절별 물품지원이나 나들이 등 행사 초대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용자	00 Case
위기개입 이용자	이용자가 처리할 수 없는 긴급상황 발생이나(행정문제, 주거문제), 또는 건강상의 응급상황 발생시 선정되는 이용자	수시

(5) 점검 및 중간평가

기존의 개입계획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 지 평가하고 개입계획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지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개입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단계이다.

■ 점검 및 중간평가 방법

① 사례관리과정 기록일지 작성

사례관리과정 기록일지는 사례발굴 및 접수의 단계에서부터 사례회의를 거쳐 서비스를 투입하여 진행하는 과정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사례관리자의 투여시간과 노력을 대략 파악할 수 있

다. 사례관리 과정을 정리하는 것은 대상가족 사례관리를 통해 사례관리자가 어떠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지 그리고 사례개입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지 파악해 낼 수 있다. 또한, 사례개입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그 이유를 파악하기에 매우 적절한 평가도구이다. 또한 이용자의 새로운 욕구의 발생이나 욕구 종결을 파악하기에도 매우 적절한 수단이다.

본 지침에선 사례관리과정 기록일지를 <서식2-5>와 같이 분류번호를 접목한 나열방법을 제시하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서식 2-5> 사례관리과정 기록일지

사례관리과정 기록일지

대상가족		접수번호	
------	--	------	--

1) 구분

대상		방법		내용		소요시간	
1	주요대상자	1	전화	1	면접	1	30분미만
2	가족원	2	내관	2	정보제공	2	1시간미만
3	관련자	3	방문	3	내부자원	3	2시간미만
4	기관전문가	4	기타	4	외부자원(민간)	4	3시간미만
				5	외부자원(민간)	5	3시간이상
				6	기타		

*설명: 관련자는 이웃, 친척, 친구 등이 해당되며, 개입방법의 기타에는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이 해당된다. 또한 내용 기타에는 대상자와의 서비스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2) 진행일지

일시	대상	방법	내용	시간	구체적인 내용	비고

*설명: ①대상/방법/내용/소요시간에는 1)의 구분에서 제시된 분류번호를 기재한다. 예를들어 대상자 가정방문을 하였고, 면접을 1시간 하였다면 1/3/1/2로 기재한다. ②구체적인 내용에는 진행 내용 중 주요한 내용 중심으로 작성하며, 비고란에는 자원 연계 기관명 등 반드시 기록하여 남겨야할 특이사항을

③ 사례회의의 실시

사례회의는 사전개입계획을 세울 때 1차로 이루어지게 되고, 통상적으로 2차 사례회의는 중간평가를 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중간평가 시 이루어지는 사례회의에서는 기본자료(사례관리과정 기록일지, 중간평가 기록지)를 통해 사례관리자가 발굴에서 개입 현재까지의 사례관리 진행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보고하게 되며, 다음으로 대상가족의 새로운 욕구 및 사례관리에 있어서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 이때 새로운 욕구가 발생했을 때는 새로운 개입계획을 세우고 사전개입계획 목표의 수정이 필요 할 때는 수정을 하는 과정이 된다. 이러한 내용을 사례회의 기록지에 남기도록 한다.

(6)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최종평가는 대상가족의 사례가 종결단계에 도달하였을 때 대상가족과 합의하여 실시하며, 중간평가 과정의 최종내용과 함께 최종적으로 서비스 투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실천 서비스 전달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단계를 말한다.

(1) 최종평가를 위한 종결 기록지 작성

<서식 2-7>과 같이 최종평가를 위한 종결 기록지는 기본적으로 중간평가 기록지의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사례개입기간에 진행된 대비 다양한 서비스 투입과 사례관리자 개입활동을 통해 사례개입계획의 목표 달성과 대상가족의 궁극적 변화 등의 최종목적에 도달하였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이때 단순히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관리를 통해 전반적인 대상가족의 생활실태가 향상되고, 자립을 도모하고 있는 지를 파악 할 수 있어야 한다.

<서식 2-7> 종결 기록지

종결 기록지

(사례시작일 : 년 월 일 / 종결 기록지 작성일 : 년 월 일)

대상가족					접수번호	
종결유형		■사례관리자와 대상가족 종결합의 ■사례관리자의 개입목표 달성 ■대상가족이 원함(사유:) ■대상가족의 이사 또는 연락두절 ■대상가족의 비협조적 태도(거부) ■타기관 의뢰 ■기타()				
문제 및 요구		문제1	문제2	문제3		
목표	일반 목표					
	세부 목표					
진행내용						
달성정도						
제공된 서비스		서비스종류	횟수	목표 및 계획과의 관련 정도		만족도
사례관리자 의견	대상가족의 변화정도 (척도 포함)	부 자 가족				
	서비스 투입평가 (적절성, 지속성 등)					
	대상가족의 자립여부					
대상가족 의견	사례관리 만족도					
	기타					

(2)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대상가족의 사례개입계획을 통해 제시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와 관련된 사회체계들의 연계가 마무리 된 상태를 말하는 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태가 사례관리의 종결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례관리 대상가족의 대부분은 투입된 서비스가 지속되어야만 자립생활이 유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예로 밀반찬 서비스 또는 차량지원서비스, 가정봉사원 등 대상가족의 문제 해결 위해 투여된 서비스 및 자원들은 지속적으로 가족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상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종결이라기보다는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유지하여 이용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다시 말해, 사회지지체계의 형성

을 마친 후 서비스 및 자원을 유지·관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사례 관리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고 서비스 및 자원 그리고 새로운 욕구의 생성을 관찰하고 관리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4. 부자가족 사례관리사업 운영서식

<서식 11> Intake 기록지

Intake 기록지

접수번호	사례관리자		접수일자		년 월 일()	
접수경로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직접요청(방법:) <input type="checkbox"/> 사례관리자 직접발굴 <input type="checkbox"/> 다른 대상자 소개 () <input type="checkbox"/> 타기관의뢰()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요 대상자	성명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				
	직업	<input type="checkbox"/> 정규직 <input type="checkbox"/> 계약직 <input type="checkbox"/> 일용직 <input type="checkbox"/> 무직 (직종 및 내용:)				
	건강	건강정도	1.양호 2.보통 3.허약	질병유무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질병명: , 기간: 년 개월)	
가족 및 동거 사항	성명	관계	연령	직업(학년)	동거유무	건강정도
						연락처
						기타
형태 분류	유형	<input type="checkbox"/> 부자(사유:) <input type="checkbox"/> 미혼부자(사유:) <input type="checkbox"/> 기타(사유:)				
	보호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수급 <input type="checkbox"/> 조건부수급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의료특례 <input type="checkbox"/> 법정저소득한부모 <input type="checkbox"/> 일반한부모				
경제 상황	수입	월 수입 원(수급액 원 + 가족수입 원 + 기타 원 ...)				
	지출	월 지출 원(보증금 원 + 월세 원 + 부채 원 ...)				
주거 상황	주거형태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 <input type="checkbox"/> 일반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임대아파트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방(개) <input type="checkbox"/> 화장실(개) <input type="checkbox"/> 주방() <input type="checkbox"/> 기타 ()				
	소유형태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전세(만원) <input type="checkbox"/> 월세(계약금 만원/월 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요문제 (중복가능)	<input type="checkbox"/> 경제문제 <input type="checkbox"/> 건강문제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 <input type="checkbox"/> 주거문제 <input type="checkbox"/> 대인관계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 <input type="checkbox"/> 자녀문제 <input type="checkbox"/> 가사문제 <input type="checkbox"/> 위생문제 <input type="checkbox"/> 의료지원 <input type="checkbox"/> 사회지원 <input type="checkbox"/> 학교문제 <input type="checkbox"/> 이성문제 <input type="checkbox"/> 기타()					
필요한 서비스 (중복가능)	가사영양	<input type="checkbox"/> 집안청소 <input type="checkbox"/> 식사준비 <input type="checkbox"/> 세탁 <input type="checkbox"/> 말뭉치제공 <input type="checkbox"/> 도시락제공 <input type="checkbox"/> 김장서비스				
	심리/정서	<input type="checkbox"/> 상담지원 <input type="checkbox"/> 말벗 <input type="checkbox"/> 안부전화 <input type="checkbox"/> 문화활동지원 <input type="checkbox"/> 생일잔치 <input type="checkbox"/> 가족명절행사				
	양육/교육	<input type="checkbox"/> 아이돌보미 <input type="checkbox"/> 학습지원 <input type="checkbox"/> 부모교육 <input type="checkbox"/> 교육지원(학원, 학습지)연계				
	의료수발	<input type="checkbox"/> 건강검진 <input type="checkbox"/> 방문진료 <input type="checkbox"/> 무료진료 <input type="checkbox"/> 약품구입 <input type="checkbox"/> 병원동행 <input type="checkbox"/> 수발지원				
	주거/취생	<input type="checkbox"/> 주거제공 <input type="checkbox"/> 난방료제공 <input type="checkbox"/> 집수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설입소 <input type="checkbox"/> 목욕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아미용서비스				
결연/기타	<input type="checkbox"/> 결연후원 <input type="checkbox"/> 후원물품 <input type="checkbox"/> 시설이용 <input type="checkbox"/> 정보제공 <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기타()					
면접 내용	<대상자의 외양·인자·정서·행동 등>					
	<표출된 문제의 심각성 및 욕구정도>					
	<사회적 지원 정도, 가정사>					
면접 소견						
사례판정	<input type="checkbox"/> 집중 <input type="checkbox"/> 우선 <input type="checkbox"/> 차선 <input type="checkbox"/> 보류 <input type="checkbox"/> 기타()					

<서식-12> 사정 기록지

사정 기록지

1) 일반적 상황

1) 일반적 상황						접수번호	
주 대상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학 력			종 교			직 업	
가족형태	□부자(사유:) □미혼부자(사유:) □기타()						
	사 유	■모 사망 ■부모 이혼 ■부모 별거 ■기타()					
가족사항	이름	관계	생년월일 (연령)	직업(학년)	동거유무	연락처	기타

2) 경제 및 주거 상황

수 입	월 평균 수입액 :		
	구 분	내 역	산출액
	근로소득		
	정 부 지원금 후원금		
	기 타		
지 출	월 평균 지출액 :		
	구 분	내 역	산출액
	생활비		
	주거유지비		
	교육비		
	교통비		
	의료비 기 타		
자 산	구 분	내 역	산출액
	부동산		
	동 산		
부 채	구 분	내 역	산출액
주 거	소유형태	■단독주택 ■연립주택 ■일반아파트 ■임대아파트 ■기타 ()	
	주거비용	보증금 원 / 전월세 원 / 기타() 원	
	주거규모	방 칸(방1: 평 / 방2: 평 / 방3: 평)	총 평
		거실 평 / 주방 평 / 화장실 평 / 기타() 평	
	시설유무	냉방시설: ■선풍기 ■에어콘 ■기타()	
		난방시설: ■기름 ■가스 ■연탄 ■전기 ■기타()	
		주방시설: ■싱크 ■냉장고 ■가열기구(종류:) ■기타()	
위생시설: ■욕조 ■샤워실 ■세탁기 ■기타()			
문화시설: ■컴퓨터 ■TV ■기타()			
기타시설: ■침대 ■책상 ■기타()			
환경정도			

3) 가족·사회적 상황

가정사	
가계도	
생태도	

4) 건강상태

대상자명			연령	
건강상태	건강정도	<input type="checkbox"/> 아주 나쁨 <input type="checkbox"/> 약간 나쁨 <input type="checkbox"/> 좋음 <input type="checkbox"/> 매우 좋음		
	질병유무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질병명:)	질병기간	년 개월
	만성질환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질병명:)		년 개월
장애유무	<input type="checkbox"/> 지체장애(급) <input type="checkbox"/> 시각장애(급) <input type="checkbox"/> 청각장애(급) <input type="checkbox"/> 언어장애(급) <input type="checkbox"/> 정신지체(급) <input type="checkbox"/> 정신질환(급) <input type="checkbox"/> 기타()			
심체 및 신체기능	측정도 (낮음↔높음)		내용 (주간적 의견)	
	○일상동작능력			
	----- 1 2 3 4			
	○생활(인지적)능력			
----- 1 2 3 4				
○정신건강상태				
----- 1 2 3 4				
기타의견				

5) 서비스 이용 현황

이용경험 서비스	서비스명	이용상황	비고(현재이용빈도, 중단사유 등)
	1		
	2		
	3		
이용희망 서비스	서비스명	이용경험	비고(시급성, 재가입여부, 욕구정도 등)
	1		
	2		
	3		

<서식-13> 사례회의 기록지

사례회의 기록지

회의명			
일시	장소		
참석자			
논의사례			
주요내용			
결과			

<서식-14> 사례개입계획 기록지

사례개입계획 기록지

대상가족					접수번호		
문제 및 욕구		문제1	문제2	문제3			
목표	일반 목표						
	하위 목표						
기대효과							
평가방법							
서비스 투입 계획		서비스명	제공자(기관)	개시일	횟수	우선순위	비용
사례관리자 의견		개입계획경로					
		자원확보계획					
		기타					

<서식-17> 종결 기록지

종결 기록지

(사례시작일 : 년 월 일 / 종결 기록지 작성일 : 년 월 일)

대상가족				접수번호	
종결유형		■사례관리자와 대상가족 종결합의 ■사례관리자의 개입목표 달성 ■대상가족이 원함(사유:) ■대상가족의 이사 또는 연락두절 ■대상가족의 비협조적 태도(거부) ■타기관 의뢰 ■기타()			
문제 및 욕구		문제1	문제2	문제3	
목표	일반 목표				
	세부 목표				
진행내용					
달성정도					
제공된 서비스		서비스종류	횟수	목표 및 계획과의 관련 정도	만족도
사례관리자 의견	대상가족의 변화정도 (척도 포함)	부			
		자			
		가족			
	서비스 투입평가 (적절성, 지속성 등)				
	대상가족의 자립여부				
대상가족 의견	사례관리 만족도				
	기타				

**제3장 부자가정 건강성 향상
프로그램 매뉴얼**

제 3장 부자가정 건강성 향상 프로그램

1. 프로그램 운영 지침

부자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세부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부자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 프로그램의 대상 및 그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 부자가족 프로그램의 대상은 이혼, 사별, 유기, 또는 미혼부로 현재 자녀들과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아버지와 그들의 자녀들이나, 본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이혼과 사별에 의한 부자가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은 아버지와 자녀(부모 대상, 초등학생 대상)를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아버지 또는 자녀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참가의 의사가 없을 때에는 아버지와 자녀 중 한 쪽만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도 있다.
- 참가자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참가할 때 교육 효과가 높으므로, 부자가족 프로그램의 운영은 참가자의 자발성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프로그램 실시와 관련된 약속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전에 「참가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즉 프로그램에서 제시되는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다른 참가자들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여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을 약속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과제물을 성실히 수행하며, 프로그램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사항들에 대해 비밀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

2) 부자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 프로그램의 교육자 자격

- 교육자는 건강가족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여야 하며, 다양한 가족에 대해

진정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부자가족이 처한 상황을 수용하고, 그들이 프로그램에 편안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민감하고 감정이입적이며, 격려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 교육자는 부자가족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이론적 배경을 이해해야 하며, 부자가족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결과와 정보들을 끊임없이 습득하도록 한다. 또한 교육자는 다양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데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즉 현장 실습을 통한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프로그램 운영에 효과적일 것이다.
- 교육자는 프로그램의 각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모임의 목표,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및 강의, 그리고 과제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각 모임의 준비물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부자가족 프로그램 운영형태

본 프로그램은 아버지용과 자녀용(초등학생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기관에서서는 참가대상과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본 프로그램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 운영할 수 있다.

-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아버지와 자녀가 쌍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한 주에 1회 모임으로 3주에 걸쳐 아버지와 자녀가 각자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그 후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가족문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이다.
- 아버지용과 자녀용 프로그램을 각기 따로 실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용 프로그램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참가 아버지들은 한 주에 1회 모임으로 3주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그 후에 자신들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함께 가족문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이다. 자녀만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자녀용 3주 프로그램을 다 마친 후, 자신들의 아버지와 가족문화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 참가 아버지나 자녀가 3회로 구성된 각각의 프로그램에 다 참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3회의 프로그램 중 일부 내용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모임 횟수는 각 실시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이 때 참가자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하게 되면 교육에의 참여가 높으며, 교육 효과 또한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자를 비롯한 가족생활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참가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선정할 수도 있다. 일부 프로그램만이 수행된 후 가족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도 있고,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캠프 형식으로 진행하여도 무방하다. 즉 자녀와 함께 캠프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아버지용과 자녀용 프로그램 중 몇 회기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자녀와 아버지가 별도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 문화 프로그램으로 종결지어도 좋다. 또는 아버지와 자녀간의 친밀감 강화를 목적으로 가족문화 프로그램만을 실시할 수도 있다.

4) 전반적인 프로그램 진행과정

- 본 프로그램에서 실시되는 각 모임의 교육 시간은 1시간 30분 - 2시간 정도 소요된다. 자녀용 프로그램의 교육 시간은 아버지용의 경우보다 더 적은 시간을 배정하도록 한다.
- 프로그램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우선 각 모임의 목표를 설명한다.
 - ② 프로그램의 도입부분에서는 이번 모임에서 다룰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프로그램 첫 단계의 도입 부분에서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소개, 동의서 작성, 사전 설문지 작성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또한 두 번째 모임 이후부터 도입 부분에서는 이전 시간에 내주었던 과제를 점검하고, 모임에서 다룰 내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 ③ 다음으로는 각 모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과 교육자의 강의가 이루어진다. 이 때 각 모임은 강의 중심보다는, 참가자들의 활동

중심으로 진행하고 활동이 끝나면 교육자가 강의 내용을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 ④ 각 모임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날의 모임에서 배운 것을 요약하고 과제를 내주면서 프로그램을 종결한다. 각 모임의 과제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과제를 내 주거나, 다음 모임에서 다룰 내용과 연관된 과제를 제시할 수도 있다.

- 아버지와 자녀가 3회기의 모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한다(사전 설문지는 아버지용과 자녀용으로 구분하여 따로 준비되어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임이 끝난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는데, 사후 검사에서 사용하는 설문지는 사전 설문지와 동일하다. 또한 참가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전체 프로그램 평가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한편 3회기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실시하지 않고 프로그램 중 일부 모임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일평가지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5) 아버지용 프로그램과 자녀용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지침

(1)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의 교육 지침

- 전체 3번의 모임을 한 명의 교육자가 계속 실시할 경우와 각 모임을 각기 다른 교육자가 실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 모임의 내용은 '자아존중감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동일 교육자가 진행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전체 3번의 모임을 연속적으로 다 실시할 경우 사전·사후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를 파악한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척도(자아존중감, 심리적 복지감, 부모역할 만족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아버지 개인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인 자아존중감, 심리적 복지감 중 한 가지 척도와 부모역할 만족도 척도를 함께 평가하면 개인의 변화와 자녀와의 관계 변화를 모두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이혼, 유기 또는 미혼부 등으로 부자가족이 되지만, 본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이혼과 사별에 의한 부자가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진행 할 때는 교육자가 참가자들의 신상

을 파악한 후에 그에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강조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집단이 모두 이혼에 의한 부자가족이라면 세 번째 모임의 ‘바람직한 부모역할’에서 공동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교육자와 관련하여, 현재 건강하게 부자가족을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를 강사로 활용하면 교육적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각 모임의 소요 시간을 2시간으로 구성하였으나, 교육자가 교육을 실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가자들 간의 상호 교류가 좋고 적극적인 참여태도를 보인다면 시간을 좀 더 연장하여도 좋지만, 적극적인 분위기가 아닌 경우에는 시간을 좀 앞당겨서 끝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2) 자녀 대상 프로그램의 교육 지침

- 부모의 이혼, 사별로 부자가족을 경험하고 있는 자녀들이 본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이므로, 프로그램 시작 전에 충분히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음을 주지하고, 자연스럽게 상호간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 부모의 이혼, 사별과 같은 가족 문제를 경험한 부자가족의 자녀들은 자아존중감의 상실, 죄의식, 수치심, 우울 등 다양한 심리 상태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3회기 프로그램을 모두 다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순서를 따르는 것이 교육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 모임에서 '장점 찾기', '서로 칭찬하기', 그리고 '미래에 되고 싶은 나'와 같은 활동 등을 통해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스스로를 의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활동을 통해 자녀들은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다음에 이어지는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간 상호작용으로부터 싹트고, 작은 성취나 칭찬 또는 성공을 통해서 형성된다. 그러나 부자가족의 자녀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칭찬과 격려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육자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자아존중감은 나에 대한 타인의 평가나 인정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스스로를 의미 있다고 느끼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도록 한다. 비록 주변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단

점이 자주 지적되고,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낙담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점이 개선되면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자신이 먼저 주변의 가족, 친구들을 사랑하도록 하여 인간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 아버지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아버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교육자는 아버지들에게 가정에서 자녀들의 감정을 읽고, 수용하는 환경을 만들어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아버지가 이런 점에서 노력하여 긍정적인 가정환경이 조성된다면 자녀용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아버지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이러한 내용들이 아버지에게 전달되어 가정에서도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한다.

(3) 가족문화 프로그램의 교육 지침

- 가족문화 프로그램은 기존의 강의실 위주의 교육(활동)과는 달리 직접 체험을 통한 친목 도모라는 점에서 친밀감과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앞에서 실시한 아버지·자녀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에서 교육에 참가했던 아버지와 자녀가 가족단위로 참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본 프로그램만 따로 운영될 수도 있다.
- 본 프로그램은 6개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교육자들은 일정과 장소, 참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일부 선택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 본 프로그램을 모두 실시하게 될 경우, 제시하는 순서대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참가 가족들이 서로 소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간에 친밀한 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는 ‘인간 버팀대 만들기’,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가족 사명서 쓰기’, 참가 가족들 간의 단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천국 여행을 떠나보자’, 참가 가족들 간의 자조집단 형성을 도와주는 ‘우리의 밝은 미래’와 ‘촛불의식’ 이루어져 있다.
- 이외에도 ‘부자가정 대상 요리하기’, 푸드아트 놀이 ‘정서순화와 친밀감 강화를 위한 음악놀이’ 등을 실시할 수도 있다.

2.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소개

1) 아버지용 프로그램

: 아버지용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첫 번째 모임 : 털어내고 활기차게

: 부자가족의 아버지들이 분노, 슬픔, 우울, 어려움 등을 털어내는 시간이다. 참가자들 간에 서로 어려움을 털어내고 함께 공유함으로써 위로와 지지를 받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두 번째 모임 :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기

: 부자가족의 아버지들의 자아존중감 회복의 시간으로 자신의 단점까지 수용하고 자신의 장점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목표를 갖고 당당하게 생활하기 위해 미래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생애설계의 내용도 다루었다.

* 첫 번째와 두 번째 모임은 아버지들의 자아존중감 구축을 위한 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다.

(3) 세 번째 모임 : 바람직한 부모역할

: 자녀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한부모로서 당당하게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이해하고 자녀와의 열린 대화를 위해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 자녀용 프로그램: 자녀용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첫 번째 모임 :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부자가족의 자녀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장점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한 존재이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두 번째 모임 : 내 마음은 빨, 주, 노, 초, 파, 남, 보

: 인간은 누구나 다양한 감정의 소유자이며, 모든 감정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들이 서로 어울려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정서를 적절하게 조

절해 나가는 것, 특히 분노 조절 방법을 학습하여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세 번째 모임 : 새로 쓰는 가족 이야기

: 부자 가족의 자녀들이 자기 자신과 가족의 현재 모습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수용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그들의 자아존중감 회복에 절대적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 모임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과 관련된 학습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아버지용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첫 번째 모임

털어내고 활기차게

1. 친밀감 구축하기
2. 부정적인 감정들을 털어내기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와 수용하기

첫 번째 모임: 털어내고 활기차게

전개	내용	시간	준비물
목표 1.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인식한다. 2. 교사 그리고 참가자들간에 rapport를 형성한다. 3. 한부모로서 겪는 분노, 우울, 슬픔 등의 어려운 점들을 털어냄으로 자아존중감 확립의 기틀을 마련한다.			
도입	1. 사전평가 2.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및 교육자 소개, 동의서 작성 3. 별칭 짓기	30분	이름표, 필기도구 ,
강의 및 활동	<p>활동1-1: ‘나의 걸모습과 속마음’ +플라쥬 작업을 통해 걸모습으로 보이는 자신(남에게 보이는)과 내면의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한부모로서 겪는 어려움을 드러낸다.</p> <p>활동1-2: ‘우리들의 어려움’ 상자 +이름을 쓰지 않고, 한부모로서 겪는 어려움을 용지에 기록한 후 준비된 상자에 넣는다. 참가자들이 한 장씩 뽑아서 읽으면서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과 지지를 보내준다.</p> <p>강의1-1: 선택으로서의 한부모, 운명으로서의 한부모 - 부자가족의 어려움과 극복방안</p> <p>활동1-3: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족은?’ 그리고 그 가족들의 장점과 어려움은?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게 된 다양한 가족들에 대해 알아본다. 그 가족들의 긍정적인 점과 함께 어려움을 알아봄으로써 한부모 가족도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이고, 그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장점도 있고 어려움도 있음을 이해한다.</p> <p>강의1-2: 사회변화와 다양한 가족 +개인의 행복과 질적인 삶의 추구로 인해 다양한 가족이 증가하며, 그 한 유형으로 한부모 가족이 증가함을 설명한다. 한부모 가족도 건강한 가족임을 이해한다.</p>	80분	흰색 도화지, 플라쥬 작업용 각종 잡지들, 풀, 가위, 색연필, 상자, 화이트 보드, 보드마크 , 사전평가 지, 잔잔한 음악의 CD나 테이프 등.
과제 및 종결	<p>과제 1.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한다.</p> <p>2. ‘나만의 장점’ 을 5가지 이상 생각해온다</p> <p>종결 1. 첫 번째 모임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번 모임의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p> <p>2. 다음 모임의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한다.</p>	10분	

도입

1. 사전평가

- 전체 세 번의 모임을 연속적으로 실시할 경우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교육의 효과를 파악하도록 한다. <평가지, 사전·사후검사지: 자아존중감 척도, 심리적 복지감 척도, 부모역할 만족도 척도 등>
- 모임 중 몇 모임을 선택해서 실시할 경우에는 그 모임의 내용에 알맞은 척도를 사용하거나 기관에서 사용하는 일일평가지로 평가를 하도록 하여 교육의 효과를 파악하도록 한다.

2.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교육자 소개 / 동의서 작성

교육자가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한 후 전체(혹은 모임) 프로그램을 소개한 후 상황에 따라 동의서를 작성하여도 좋다.

부자가족 대상 교육 프로그램 참가 동의서

나는 부자가족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를 신청합니다.

1.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해 같이 토론하고 그 내용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2. 프로그램에서 제시되는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3. 다른 참가자들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겠습니다.
4. 프로그램 실시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사항들에 대해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5.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가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참가자 :

3. 별칭 짓기

자기소개에 한 방법으로 별칭 짓기를 한다. 처음 만남 순간부터 자신을 드러내기가 힘들고 어색함으로 개인별로 신상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기보다는 과거의 별명 또는 갖고 싶은 별명 등으로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하도록 한다. 아울러 프로그램 참여동기와 기대 등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활동 및 강의

활동1-1. ‘나의 걸모습과 속마음’

플라주 작업을 통해 걸으로 보이는(남에게 보이는) 자신과 내면의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한부모로서 겪는 어려움을 드러낸다.

<p>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다. 2. 한부모로서 겪는 우울, 분노, 어려움 등을 드러낸다.
<p>환경/ 준비물</p>	<p>다양한 잡지들, 풀, 가위, 색연필, B5 흰색 용지 등</p>
<p>진행 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별로 B5 흰색 용지를 한 장씩 나눠준다. 2. 양쪽으로 문을 열듯이 B3 용지를 접어서 안쪽의 안 보이는 면에는 자신의 내면을 바깥쪽의 보이는 면에는 남에게 보이는 자신을 표현하도록 한다. 3. 작업이 끝난 작품을 들고, 바깥쪽의 남에게 보이는 면을 유지하기 위해 힘든 점과 남에게 말 못하고 속으로 힘들었던 점들은 무엇이었는지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도록 한다. 4. 다른 참가자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공감해주면서 위로해준다.
<p>참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각에 잠기는데 도움이 되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도록 한다. 2. 잡지가 모자라서 다른 사람의 작업을 기다리지 않도록 충분한 양의 잡지를 준비하며, 다양한 내용의 잡지를 준비하여 참가자들이 충분히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도록 한다.

활동1-2. ‘우리들의 어려움’ 상자

이름을 쓰지 않고, 한부모로서 겪는 어려움을 용지에 기록하게 한 후 준비된 상자에 넣는다. 참가자들이 한 장씩 뽑아서 읽으면서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과 지지를 보내준다.

<p>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부모로서 함께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서로를 지지한다. 2. 자기개방을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의 기쁨을 마련한다.
<p>환경/ 준비물</p>	<p>어려움을 적을 용지와 이를 수집할 상자</p>
<p>진행 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부모로서의 어려움을 제공된 용지에 기록하게 하며, 이름은 쓰지 않게 한다. 2. 다 적은 종이를 참가자 모두가 똑같은 모양으로 접어서 상자 안에 넣는다. 3. 상자 속의 종이들을 고무 섞은 후 참가자들이 각자 한 장씩 뽑아서 펴본다. 혹시 자기 것이 나오더라도 표시내지 않고 남의 것처럼 행동한다. 4.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자신이 뽑은 종이에 쓰여진 내용을 읽는다. 5. 한 사람씩 발표할 때마다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 정서적 지지와 조언을 해준다. 6. 느낌을 나누고 정리한다.
<p>참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각에 잠기는데 도움이 되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도록 한다. 2. 상자는 안이 보이지 않는 것을 준비하다. 3. 활동 1-1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데 초점을 맞춘 활동이라면, 활동 1-2는 범위를 좀 더 좁혀서 한부모로서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이를 함께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강의1-1: 선택으로서의 한부모, 운명으로서의 한부모

-> 활동 1-1, 활동 1-2를 마친 후 아래의 강의로 요약한다.

한부모 가족은 1980년대 이후 급속도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부모 가족이라고 하면 흔히 모자가족을 떠올릴지만, 부자가정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전국 1590만 일반가구 중 한부모가족은 124만가구로 이중 모자가정이 83%, 부자가정이 17%를 차지했다. 이혼과 가출 등으로 남자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자가정은 2000년 22만 4572가구에서 2005년 24만 2129가구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수치이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까지 합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통계청, 2005).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부자가정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 경제적 문제

- 부양자 역할을 자녀양육과 함께 수행해야 하므로 직장생활 자체에 전념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정서적인 측면, 자녀양육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정서적 문제

- 함께 했던 아내의 상실로 인해 정서적 불안정을 겪게 되는데, 사별로 인한 경우에는 정서적 지지를 해줄 지원자의 상실로, 이혼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혼과정에서 아내와의 갈등으로 인한 상처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3) 자녀양육 문제

- 부가 당면하는 가장 어려운 일이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이다. 이는 지금까지 실제로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을 아내가 전담하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해 자녀들이 모의 부재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게 된다. 모자가족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느끼는 정상가족에 대한 미련 등에 대해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어려움 등을 겪게 된다.

4) 가사노동 문제

- 부자가정의 부는 그 동안 배우자에 의해 수행되던 가사문제를 자신이 처

리하고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대리자도 없고 자녀가 어릴 경우,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부는 당혹감과 함께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5) 성적인 문제

- 우리사회에서 남성들은 행위의 건전성 여부를 떠나 여성들보다 성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러나 매춘 등의 불건전한 성관계는 만족을 주지 못 할뿐만 아니라 자괴감만 들게 할 수도 있다.

6) 이외에도 사회의 부정적 편견으로 인해 직장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 이처럼 부자가정의 부는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동시에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 부자가족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다. 한부모 가족은 단지 한부모 가족이란 이유로 사회로부터 비난받거나 부도덕한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 연구에서 한부모 가족의 모두는 사회가 자신들이 한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회의 부정적인 편견은 한부모를 더욱 외롭고 힘들게 하며 자립의지를 꺾기도 한다.
-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한 사회적,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한부모 가족이 가족의 한 유형으로 당당하게 대접받고 그 가족원들이 사회성원으로 당당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강점을 찾아내면서 자신감을 길러야만 한다. 그리고 혹시 스스로 만든 외부와의 벽이 있다면 그 벽을 스스로 걷어내야만 한다.
- 이제 한부모 가족은 ‘크고 온전한 부모’ 라는 의미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부모들 스스로 긍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노력해야 하며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만 한다. 그 적극적인 한 예가 바로 자조집단 활동으로,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과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토로할 수 있어서 정서적인 지지와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보다 긍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 선택에 의해 한부모가 되었다면 자신의 선택에 당당하게 책임을 져야하며, 운명으로 한부모가 되었다면 그 운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뿐 아니라 자녀들도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 한번뿐인 인생,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만이 스스로를 행복하게 해준다. 행복은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

이다.

다른 사람이 너보다 더 행복하다는 사실이 너를 괴롭힌다면,
너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 세네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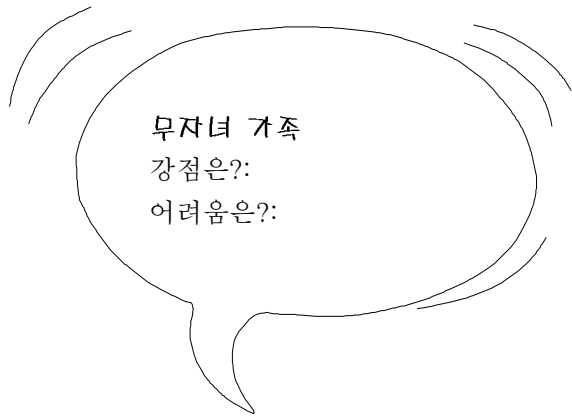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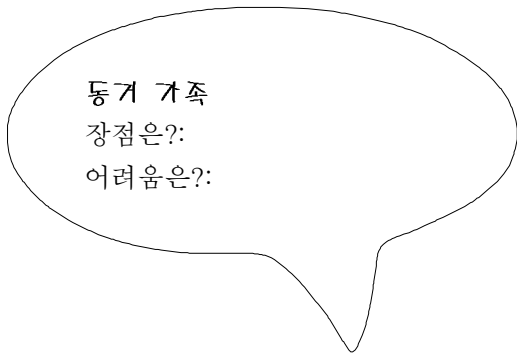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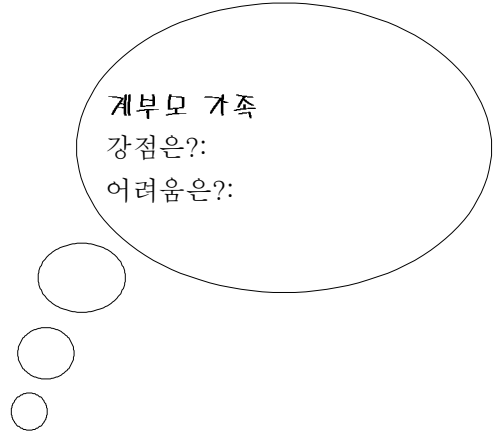
-> 교육자는 한부모 가족이 ‘결손가족’ 이 아닌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임을 강조하
면서 강의를 마친 후 다음 모임에서 자신감을 길러줄 내용을 다루게 됨을 언급한다.

활동 1-3: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족은? 그리고 그 가족들의 강점과 어려움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게 된 다양한 가족들에 대해 알아본다. 그 가족들의 긍정적인 점과 함께 어려움을 알아봄으로써 한부모 가족도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이고, 그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강점도 있고 어려움도 있음을 이해한다.

<p>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증가에 대해 이해한다. 2. 다양한 가족들 나름대로 강점과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한다. 3. 한부모 가족도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임을 수용한다.
<p>환경/ 준비물</p>	<p>화이트보드, 보드마카, 한부모 가족 관련 비디오,</p>
<p>진행 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양한 가족의 강점과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특히 강점을 찾는데 주력한다. 2. 다양한 가족이 증가하게 된 원인에 대해 토론한다. 3. 교육자가 다양한 가족에 대해 강의한 후, 한부모 가족도 다른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움도 있지만 강점도 있을 수 있음을 이해시킨다.
<p>참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가자들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다면 교육자가 유형을 제시해 주어도 좋다. 2. 다양한 가족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한 후 활동을 하게 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내용을 20분 정도로 편집하여 비디오로 시청하도록 한 후 활동을 진행한다. 부자가족에 관한 내용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다룬 ‘싱글대디 세 남자 이야기’를 시청하면 참가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면이 많을 것이고 친밀감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다양한 가족에 관한 비디오들은 참고자료1로 제시하였다.) 3. 강의 1-2의 <표1>처럼 교육자는 화이트보드에 정리해서 참가자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한다. 4. 참가자들이 다양한 가족의 강점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한 후, 한부모 가족의 강점을 찾아내는데도 주력한다.

활동지 1-3: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족은?
그리고 그 가족들의 장점과 어려움은?'



강의 1-2: 사회변화와 다양한 가족

-> 활동 1-3을 마친 후 아래의 강의로 요약한다.

가족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제도로 우리나라의 가족도 최근에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에는 결혼이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져 모든 이들이 모두 결혼을 해야만 했다. 즉, 과거에는 재정적 안정, 사회적 지위의 획득, 자녀출산 등에 바탕을 두고 결혼을 하여 家라는 제도가 우선되는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상호간의 동료감, 애정, 자아성장 등 개인의 정서적 욕구충족이 중시되면서 이를 위해서 결혼을 하고, 이런 정서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가족을 해체하기도 한다. 특히 개인의 욕구와 권리가 강조되면서 개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삶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동거, 독신, 자발적 무자녀 가족, 동성애 가족, 공동체 가족 등이 가족의 유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사회의 변화에 따라 결혼의 동기도 변화하고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최근 우리사회에는 부부 + 자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가족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다양한 가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여전히 전형적인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서 이런 다양한 가족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정상가족이 반드시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겉으로는 정상가족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폭력, 학대, 외도 등으로 심한 갈등을 겪는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가족일까? 건강한 가족에 대한 연구를 한 미국가족학회장을 지낸 올슨 교수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족이라도 가부장적이거나 남녀불평등이 뿌리 깊다면 건강하지 않은 가족” 이라고 하면서 “건강가족 여부는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가족성원들이 친밀감을 갖고 응집성이 있으며 위기관리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면 한부모 가족이나 동성애 가족도 모두 건강 가족일수 있다” 고 했다.

다시 말하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건강가족’ 은 가족의 외형, 즉 틀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 안에서 질적인 교류가 충분히 있어서 친밀감이 있는가와, 이런 질적인 교류는 누군가의 일방적인 지배나 복종 하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서로 존중받을 때 가능하므로 존중 등이 그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존중, 열린 대화, 신뢰, 헌신 등의 건강 가족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면 외형상 전형적이 가족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건강가족일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정상가족 신화에서 벗어나서 개개인이 어떤 유형의 가족이든 그 가족 안에서 자유와 행복, 평등을 누릴 수 있다면 건강한 가족으로 수용해

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부정적 편견으로 ‘소외가족’으로 낙인찍힌 다양한 가족들도 이제 이런 낙인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족성원끼리 그리고 자조집단과 서로 의지하면서 외적인 문제나 위기를 이겨내야만 한다. 그들 스스로 당당하고 건강한 삶을 살 때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손가락질을 하지 못할 것이다.

<표 3-1> 다양한 가족들의 예

다양한 가족의 유형	강점	어려움
자발적 무자녀 가족	*부부 둘만의 생활이 보장됨 *자녀양육과 관련된 경제적 지출이 없음	*부모님들의 이해부족 시 자녀출산에 대한 압력이 계속됨
계부모 가족 (재혼가족)	*혼자였던 생활에서 부부가 함께하는 생활로 *역할의 공유 *정서적 안정 등	*복잡한 가족관계로 인한 어려움 (부모자녀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 친척관계 등)
동거 가족	*서로에 대한 존중, 신뢰가 밑바탕이 됨 *법률혼에 의한 책임(며느리, 사위 등)을 피할 수 있음 - 둘만의 생활을 즐길 수 있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음 *신뢰가 깨지면 쉽게 헤어질 수 있음
공동체 가족	*가족이기주의 극복 *공동체 의식의 함양 *경제적 이득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원칙에 동의하지 않으면 함께 하기가 어려움 *개인의 사생활이 완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독신	*누군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즐길 수 있음 *인생목표를 실현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없음	*사회의 부정적인 편견들 “문제가 있어서 결혼을 안 하는 거야”, “언제 결혼 할래?” 등 *경제적인 안정이 보장 될 때 지속가능
동성애 가족	*성적 취향이 존중되는 생활을 할 수 있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음 *사회적 승인이 매우 부족함

삶에서 아무 문제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미 경기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 엘버트 하버드

두 번째 모임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기

1. 자기탐색과 수용
2. 당당하게 나 드러내기
3. 자아존중감의 구축

두 번째 모임: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기

목표			
1. 자기 자신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수용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확립한다. 2. 자아존중감의 구축을 통해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건전한 인간관계 기초를 이룩한다. 3. 삶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실천의지를 다짐으로써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한다.			
전개	내용	시간	준비물
도입	1. 지난 주 강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번 주 강의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2.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내용의 시 “나는 나다”를 읽는다.	10분	이름표, 워크북
강의 및 활동	<p>활동2-1: ‘인생지각 척도’ 척도를 통해 삶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알아봄으로써 자기탐색의 시간을 갖는다.</p> <p>활동2-2: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단점은? 하지만 동전의 양면’ 자신이 생각하는 단점을 쓰고 돌아가면서 발표할 때 다른 참가자들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지를 보내줌으로써 단점을 장점화한다.</p> <p>강의2-1: 자아존중감의 의미와 구축 과정 자아존중감 확립을 위한 자기성장의 과정</p> <p>활동2-3: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전신상을 그려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히 밝힘으로써 자아존중감의 마지막 단계인 자기개방의 시간이 되도록 한다.</p> <p>강의2-2: 자아존중감의 중요성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책임있는 삶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건전한 인간관계 맺기의 기초가 된다.</p> <p>활동2-4: ‘나는 내 인생의 프로그래머’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세워봄으로써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다.</p> <p>강의2-3: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목표가 있는 삶을 추구해나가는 것이 행복을 약속하고, 나아가 자녀에게 건강한 모델이 된다.</p>	100분	이름표, 워크북, 전지, 필기도구, 색지, 색연필, 크레파스, 화이트보드, 보드마카, 잔잔한 음악의 CD나 테이프 등.
종결 및 과제	<p>과제 1. 활동지 2-2-2를 매일 한 번씩 크게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북돋운다.</p> <p>종결 1. 교육내용을 정리하고, 모임의 목표를 다시한번 강조한다. 2. 다음 모임의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한다.</p>	10분	

도입

잔잔한 음악을 틀어 놓 상태에서 아래의 시를 읽는다.
교육자가 읽어도 좋고 참가자중 한사람이 읽어도 좋다.

- “나는 나”다 -

나는 나이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다.

나로 인한 모든 것은 나만의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였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모든 것 - 몸, 느낌, 입, 목소리 - 의 주인이다.

나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하는 모든 행동도 나의 것이다.

나는 나의 환상, 꿈, 희망, 두려움을 지니고 있다.

나의 모든 승리, 성공, 실패, 실수까지 모두 나의 것이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나 자신을 알고 친해질 수 있다.

나 자신을 알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나의 모든 부분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

물론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당황하기도 하고, 때론 모를 때도 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고 친하기만 하면 나 자신을 격려할 수 있다.

나에게는 문제에 대한 해답과 나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는 희망이 있다.

내가 어떤 순간에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비록 부분적으로는 알맞지 않은 것이 있더라도 전부 나의 것이다.

나는 잘 안 맞는 부분만 던져버리고 나머지는 지킬 것이다.

그리고 던져버린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과 가까이 지낼 수 있고, 생산적이 될 수 있다.

나는 내 밖에 있는 것들, 사람들, 세상에 존재하는 직서를 찾을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나는 나이고 나는 괜찮다.

Satir의 <나를 사랑하기 선언> 에서

활동 및 강의

활동2-1. 인생지각 척도

삶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알아봄으로써 자기탐색의 시간을 갖으며, 이를 통한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대인관계 향상의 기틀을 마련한다.

<p>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신을 냉철하게 분석해봄으로써 자기탐색의 시간을 갖는다. 2. 자기이해를 통해 친밀감있는 대인관계의 기초를 마련한다. 3.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고나 행동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p>환경/ 준비물</p>	<p>활동지, 필기도구, 색연필 또는 크레파스</p>
<p>진행 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별로 활동지 2-1 인생지각 척도를 나누어 준 후, 참가자들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문항에 체크하도록 한다. 2. 문항마다 체크한 지점을 점선으로 연결하고 왼쪽 부분을 색칠하도록 한다. 3. 색칠한 부분이 넓을수록 자신에 대해 건강하게 지각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색칠이 되지 않은 부분이 참가자들이 개척해 나가야 할 영역임을 설명한다. 4. 자신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부정적인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참가자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도록 한다. 5. 자신이 삶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는가에 따라 삶 자체가 변화할 수 있음으로 앞으로 매사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노력을 할 것을 강조하면서 활동을 정리한다.
<p>참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왼쪽의 색칠한 면이 좁다고 스스로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기를 당부한다. 2. 객관적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활동이므로, 문제를 확대해서 보기보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부족한 점이나 문제를 극복해나갈 것을 권한다.

활동2-1. 인생지각 척도

아래의 질문들은 여러분이 평소에 삶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의미를 확인해 보기 위한 것들입니다. “산다는 것은 _____이다.” 라는 문장을 완성하데 있어, 서로 반대되는 대답들 중에 본인의 생각이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1. 참고 지내야 한다 | 즐거운 모험이다 |
| *-----*-----*-----*-----* | |
| 매우그렇다 약간그렇다 이도저도 아니다 약간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다 | |
| 2. 만족스럽지 못하다 | 만족스럽다 |
| *-----*-----*-----*-----* | |
| 3. 패배의 연속이다 | 도전할만하다 |
| *-----*-----*-----*-----* | |
| 4. 너무 길다 | 너무 짧다 |
| *-----*-----*-----*-----* | |
| 5. 지루하다 | 재미있다 |
| *-----*-----*-----*-----* | |
| 6. 그저 반복일 따름이다 | 항상 변화하고 새롭다 |
| *-----*-----*-----*-----* | |
| 7.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 태어나길 잘했다 |
| *-----*-----*-----*-----* | |
| 8. 남들보다 못하다 | 남들만 하다 |
| *-----*-----*-----*-----* | |
| 9. 내일이 두렵다 | 내일이 기다려진다 |
| *-----*-----*-----*-----* | |
| 10. 가능성이 없다 | 가능성이 많다 |
| *-----*-----*-----*-----* | |

활동 2-2 :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단점은? 하지만 동전의 양면

(추한 것도 나의 것, 아름다운 것도 나의 것)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여 그것을 강화시키고 자신의 단점까지도 수용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신의 긍정적인 특성뿐 아니라, 부정적인 특성도 수용함으로써 자신은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2. 타인의 입장에서 본 자신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장점을 인식하여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킨다.
환경/ 준비물	<p>활동지, 필기도구</p>
진행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별로 활동지 2-2-1을 나누어 준 후, 잠깐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여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도록 한다. 2. 활동지 2-2-1의 상단 자신의 단점을 먼저 기록하도록 한 후, 참가자들이 돌아가면서 발표할 때 다른 참가자들이 단점이 잠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해 준다. 3. 다른 참가자들의 단점의 장점화에 대해 공감하는 자신의 장점을 활동지 2-2-1의 하단에 기록한 후 돌아가면서 당당하게 발표하면 다른 참가자들은 박수로 지지를 보낸다. 4. 지난 주 과제로 나만의 장점 5가지와 함께 하단의 장점을 활동지 2-2-2에 함께 기록하여 자신에게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여 삶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5. 활동을 마친 후 돌아가면서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6. 활동지 2-2-2는 교육자가 수거해서 다음 시간에 코팅을 해서 나눠주고 집에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아 참가자들에게 생활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참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각에 잠기는데 도움이 되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도록 한다. 2. 단점을 장점화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단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임을 이해시킨다. 3. 집단에 따라 두 번째 모임이지만 친밀감이 많이 형성되었다고 생각되면, 개인별로 카드를 한 장씩 준비해서 그 카드에 참가자 개인의 이름을 쓴 후에 참가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그 카드의 주인의 장점을 생각나는 대로 쓰게 한다. 한 바퀴를 다 돌아서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이 쓰인 카드를 가졌을 때 참가자들이 써준 자신의 장점을 크게 읽게 하는 활동을 하여도 좋다. 이 경우 카드를 집에 잘 보관하면서 생활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활동지 2-2-1.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단점은? 하지만 동전의 양면’
 (‘추한 것도 나의 것, 아름다운 것도 나의 것’)



- ▶ 나는 나의 이런 면이 싫다.
- ▶ 나는 이럴 때 내가 싫다.

나는 _____ 해서 내가 싫다.

나는 _____ 할 때 내가 싫다.

나는 _____ 해서 내가 싫다.

나는 _____ 할 때 내가 싫다.

나는 _____ 해서 내가 싫다.



- ▶ 나는 나의 이런 면이 좋다
- ▶ 나는 이럴 때 내가 좋다

나는 _____ 해서 내가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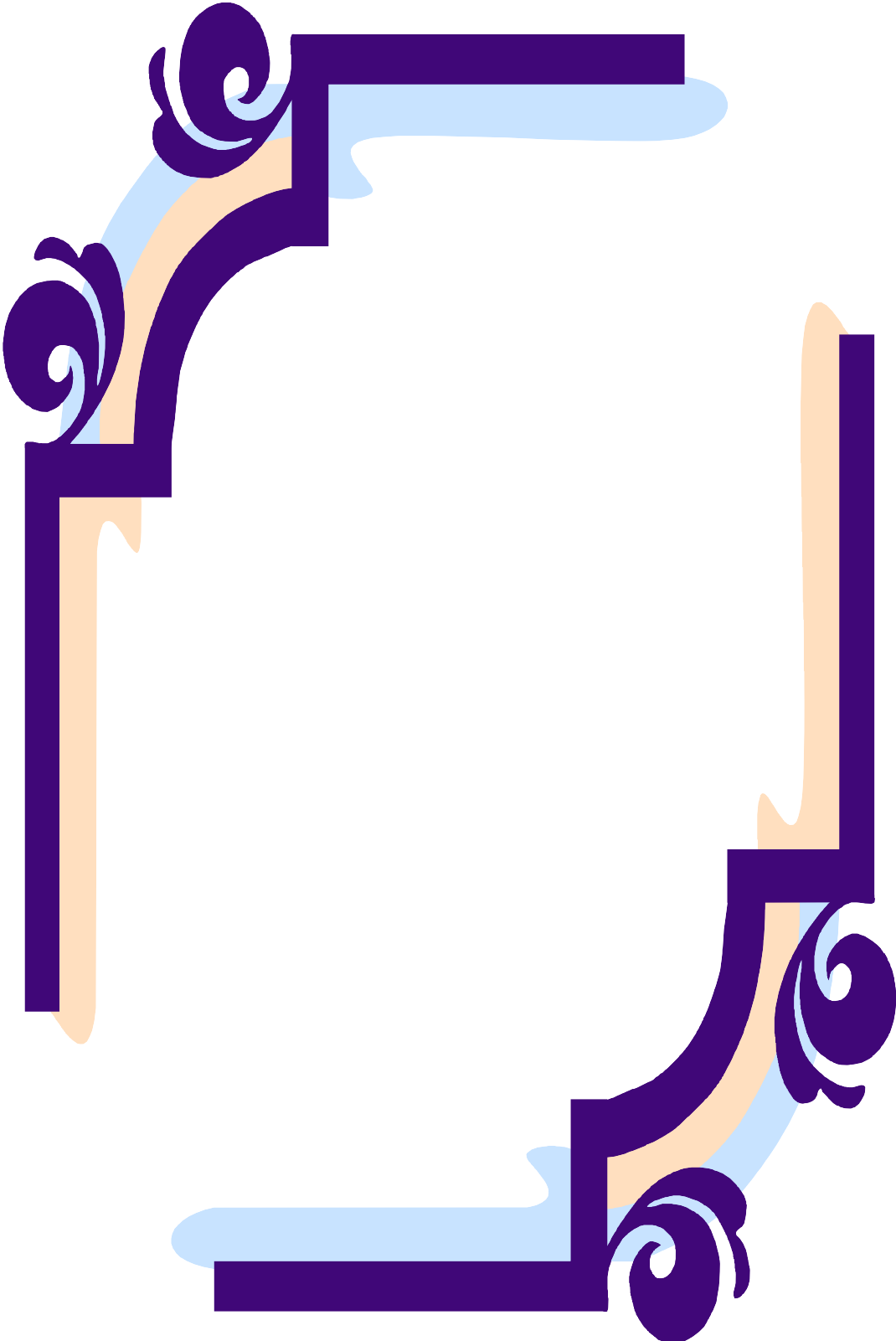
나는 _____ 해서 내가 좋다.

나는 _____ 할 때 내가 좋다.

나는 _____ 할 때 내가 좋다.

나는 _____ 해서 내가 좋다.

활동지 2-2-2. 나에게 이런 장점이!!! (내안의 보물들)



강의2-1: 자아존중감의 의미와 구축 과정

-> 활동 2-1, 활동 2-2를 마친 후 아래의 강의로 요약한다.

1. 자아존중감의 의미

- 1) 자아존중감은 자기애의 형태로 지각된다.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를 말한다.
- 2) 자아존중감은 자기수용의 과정이다. 즉 자신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 결과로서 내적 안정성을 가져온다.
- 3) 자아존중감은 유능성이나 능력으로 이해된다. 즉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반영한다.

+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 *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감있게 행동하는 능력을 말하며
- * 자기 스스로 가치있는 존재임을 느끼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면서 또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2. 자아존중감 확립을 위한 자기성장의 과정

1) 자기탐색

‘자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이는 자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자신’에 대한 진지한 몰두, 자기만의 시간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냉철하게 생각해봄으로써, 타인과 비교되는 ‘내’가 아닌 진정한 ‘나’를 찾는다.

2) 자기이해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한다.

3) 자기수용

자신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을 포함하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수용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싹트게 된다. 이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타인에게 책임 전가시키지 않고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게 된다.

4) 자기개방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솔직히 드러낼 수 있을 때 자아존중감이 확립된다.

내면에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밖으로 드러낼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개방적으로 나눌 수 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확고해지며, 건전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활동2-3 :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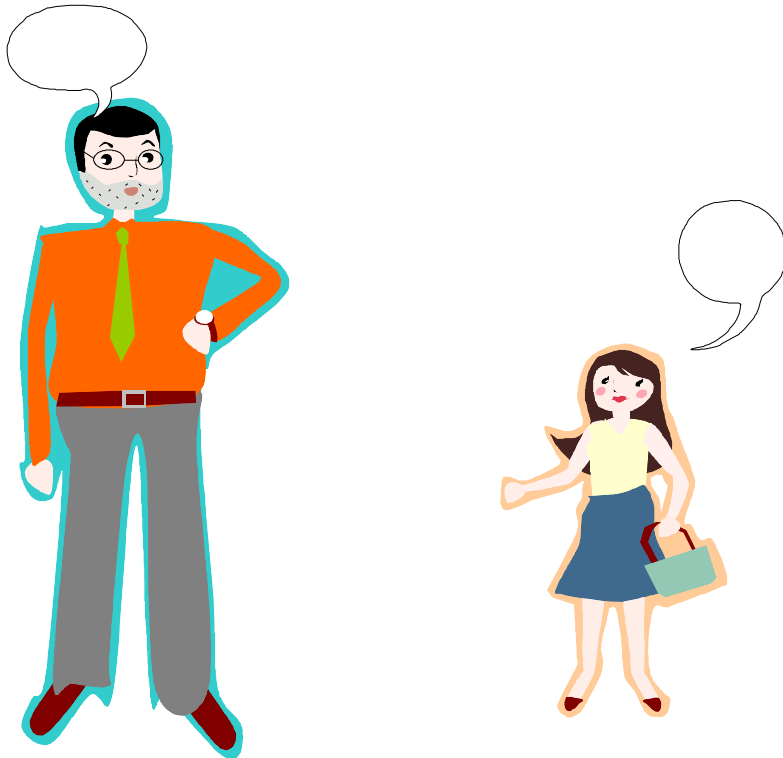
전신상을 그려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히 밝힘으로써 자아존중감의 마지막 모임인 자기개방의 시간이 되도록 한다.

<p>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봄으로써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한다. 2. 자신을 여러 사람 앞에서 솔직하게 표현하는 자기개방을 통해 자아존중감의 최종단계에 이른다. 3.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고히 하여 건전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p>환경/ 준비물</p>	<p>전지, 색연필, 싸인 펜, 보드마카 등</p>
<p>진행 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명씩 짝을 이루어 전지에 서로의 모습을 본을 떠준다. 2. 활동지 2-3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체의 각 부위별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맞은 문장으로 표현한다. 3.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완성한 활동지 2-3을 통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한다. 4.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서로 나눈다.
<p>참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각에 잠기는데 도움이 되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도록 한다. 2. 전지를 펼쳐서 작업할 공간이 안 되면 굳이 전지가 아니고 조금 큰 도화지(A3)에 그려도 무방하다. 3. 짝을 이루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전신상을 그려도 된다. 4. 질문의 내용은 교육자가 달리 정하여도 좋다. 5.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활동지2-3.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_____에 담고 싶은 것은?

- * 머리: 생각하고 싶은 것, 삶에서 진정 원하는 것, 올 1년 안에 꼭 하고 싶은 것
- * 눈: 보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
- * 귀: 듣고 싶은 것, 가장 듣고 싶은 말, 가장 기분 좋았던 말
- * 입: 말하고 싶은 것,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 * 가슴: 느끼고 싶은 것, 가슴에 담고 싶은 것, 함께 하고 싶은 사람
- * 배: 먹고 싶은 것
- * 손: 갖고 싶은 것
- * 발: 가고 싶은 곳, 걷고 싶은 곳



강의2-2: 자아존중감의 중요성

-> 활동 2-3을 마친 후 아래의 강의로 요약한다.

1. 자아존중감의 중요성

- *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삶을 이끌며 개인의 바람직한 행동을 자극하게 되어, 심리적 복지감을 높인다.
- *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불신, 무책임, 높은 수준의 우울증, 충동성 등으로 자신을 파괴시키고 부정적인 대인관계로 인해 부적응을 겪게 되어, 결국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높은 자아존중감 소유자	낮은 자아존중감 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직성, 책임성, 사랑의 감정이 넘침 * 자신의 능력을 신뢰함 =>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함 * 자신의 모든 것을 수용함 * 긍정적 자아소유: 자신에게 감사함 * 자신의 가치를 인정함 => 타인도 존중 * 수평적인 대인관계 * 알고 하려는 의지: 삶 자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려함 (성취의욕이 높음) * 다양한 면에서 자신감있는 행동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에 대한 불신, 무가치화->증오, 무책임,우울 * 자신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에 의해 자신의 삶이 조절된다고 믿음. -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자기 자신보다 '남' * 외적 통제성: 문제의 원인을 항상 나 아닌 것(상대방, 사회현상, 운..)에서 찾음 *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 문제 상황에서 자신을 파괴하는 쪽으로 행동함 * 부정적 자아소유 => 타인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함, 의심과 질투 =>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맺지 못함

나에 대한 진정한 사랑(책임 있는 삶), 행복한 나

==> 타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

==> 친밀한 가족관계, 긍정적인 대인관계

-> 교육자는 강의를 마친 후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는 삶이 최선을 삶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런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이 해시킨다.

2. 높은 자존감을 만드는 법

- 1)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장 기본이다.
 - 자신의 자존감을 낮게 하는 요소들을 찾아서 적어본다.
- 2)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 단점의 수용
 - 단점의 장점화
- 3)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진다.
- 4)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사용한다.
- 5) ‘할 수 없다’ 에서 ‘할 수 있다’로 생각을 바꾼다.
 -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
- 6) 목표설정 후 전문성을 발달시킨다.

3.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특징

- 1) 목표와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다.
- 2) 시간관리가 뛰어나다.
- 3) 주도적인 삶을 이끌어간다.
- 4)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 5)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 6) 과거에 집착하지 않으며 할 수 없는 부분보다 할 수 있는 쪽에 시간을 투자한다.
- 7) 감정적이기보다 논리적이며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한다.
- 8) 주위사람들의 건강한 평가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소문이나 사소한 평판들은 가볍게 넘긴다.

활동2-4 : ‘나는 내 인생의 프로그래머’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목표를 갖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함을 인식한다.

<p>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래의 꿈을 구체화하여 목표가 있는 주체적인 삶을 영위한다. 2. 미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3. 구체화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의지를 다짐으로써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한다.
<p>환경/ 준비물</p>	<p>활동지, 펜</p>
<p>진행 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가자들에게 활동지 2-4를 나누어주고 자신의 십여 년 후의 모습을 상상하여 기록해보도록 한다. 직장에서의 모습 그리고 가정에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도록 한다. 2. 그런 후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6개월, 1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등으로 나누어 그 시기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들을 기록하도록 한다. 3. 옆 사람이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각자가 기록한 계획서를 발표하게 하여 자신의 계획에 대해 책임을 갖도록 한다. 4. 한 사람씩 발표할 때마다 다른 참가자들은 그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해주며 또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도 제공해준다.
<p>참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간은 꿈을 가졌을 때 삶에 대한 진지함과 목적의식을 가져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2. 꿈에 대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제부터 자신의 꿈을 향한 항해가 시작되었으므로, 힘찬 출발과 많은 노력을 할 것을 당부한다. 3. 참가자들의 성향에 따라 앞부분의 자아존중감 구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 경우, 본 활동은 생략하여도 무방하며, 자아존중감 부분을 다루고 시간이 남게 될 경우에는 본 활동을 첨가하여도 무방하다.

활동지 2-4 “나는 내 인생의 프로그래머”

				10년 후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10년 이내	* 무엇을 *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5년 이내		* 무엇을 *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일년 이내			* 무엇을 *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6개월 이내				* 무엇을 *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한 달 이내				* 무엇을 *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강의2-3: '내 삶의 주인은 나'

활동 2-4를 마치고 아래의 내용으로 강의한다.

목표가 있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삶의 질이나 모든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목표를 갖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인생설계는 개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희망사항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인생설계(생활설계)이다.

장기목표, 중기목표, 단기 목표로 구분하여 생활목표를 설정한다.

목표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은 결과가 다를 뿐 아니라 중간과정도 차이가 난다.

좋은 목표는

1. 구체적이어야 한다.

-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가 되겠다. (X)

일주일에 하루는 아이들과 함께 노는 시간을 갖겠다. (O)

2. 달성 가능 하여야 한다.

-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3. 측정 가능 하여야 한다.

- 일주일에 하루는 꼭 집에서 저녁을 먹겠다.

하루에 0분씩 자녀와 대화하겠다.

4. 시간을 정해 두어야 한다.

- 정해진 시간 안에 이를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한다.

5. 결과지향적 이어야 한다.

- 노력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강의를 마친 후 다음의 글을 읽어주면서 마무리한다.

“우리는 오직 하나 밖에 없는 생명을 가지고,
단 한번 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인생은 1회전으로 끝나는 엄숙한 경기이며 연습도 오픈게임도 없다”
- 나폴레옹

세 번째 모임

바람직한 부모역할

1. 자녀의 어려움 이해하기
2. 자녀와의 열린 대화
3. 좋은 아빠되기

세 번째 모임: 바람직한 부모역할

<p>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녀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2. 바람직한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한다. 3. 부모역할 수행에 대해 자신감을 기른다. 			
전개	내용	시간	준비물
도입	현재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보게 한다.	10분	워크북
강의 및 활동	<p>활동3-1: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이...’ 한부모 가족이 된 후 자녀가 겪고 있을 어려움을 알아본다.</p> <p>강의3-1: 한부모 가족 자녀들의 문제</p> <p>활동3-2: ‘나와 자녀의 의사소통은’ 자녀와의 대화정도, 만족도, 대화의 장애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파악해본다.</p> <p>강의3-2: 자녀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1)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걸림돌 2) 의사소통 행동 리스트 3) 자녀와의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지침</p> <p>활동3-3: ‘내 자녀에게 이런 장점이’ 자녀의 장점을 찾아내고 이를 생활 속에서 칭찬함으로써 자녀와의 대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p> <p>활동3-4: ‘자녀와의 열린 대화를 위한 나의 다짐’ 자녀와의 열린 대화를 위한 다짐을 통해 자녀와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가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p> <p>강의3-3: 좋은 아빠되기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그 자체가 자녀에게 멋진 역할모델이 되고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책임임을 이해한다.</p>	100분	워크북, 잔 잔 한 음악의 C D 나 테 이 프 등
과제 및 종결	<p>과제 1. 생활 속에서 자녀의 장점을 자주 칭찬하도록 한다.</p> <p>종결 1.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열린 대화임을 강조한다. 2. 자녀와 함께 하는 마지막 모임에 참여를 부탁한다.</p>	10분	워크북

도입

잔잔한 음악을 틀어 놓 상태에서 부모들에게 현재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활동 3-1 ‘자녀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부모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자녀의 어려움을 알아봄으로써 자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목표	1. 한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환경/ 준비물	활동지, 필기도구
진행 방법	1. 개인별로 활동지 3-1을 나누어 준 후, 시간을 주고 자신의 자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해보도록 한다. 2. 활동지 3-1을 작성하도록 한다. 3. 돌아가면서 발표한다. 4. 활동을 마친 후 돌아가면서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참고	1. 생각에 잠기는데 도움이 되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도록 한다. 2. 어려움을 잘 적지 못하는 경우 교육자가 예를 들어 설명해준다.

활동지 3-1 ‘자녀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나의 자녀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1.

2.

3.

4.

5.

6.

7.

8.

9.

10.

강의 3-1: 부자가족 자녀들의 문제

→ 활동 3-1을 마친 후 아래의 강의로 요약하다.

만일 이혼으로 인한 부자가족의 경우에는 참고부분의 내용을 토대로 부부 공동의 양육에 대한 강의를 덧붙인다.

부자가족이 된 후 자녀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다.

(1) 정서적 문제

어머니가 상실됨으로써 자녀들은 그리움, 불안감 등과 같은 정서적 불안정을 겪게 된다. 특히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믿었던 부모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아버지마저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나, 나를 누가 돌봐 줄 것인가 하는 염려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는 비현실적인 공포심을 느끼게 된다. 또한 자녀들은 자신들 때문에 부모가 이혼했다는 생각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친구들이 이혼사실을 알까봐 두려워하여 친구들을 기피하면서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양부모에 대한 충성심 갈등을 느끼기도 한다.

(2) 행동적 사회적 문제

자녀들은 사회적으로 덜 유능하고 더 공격적이며, 불복종하고, 성적으로 활발하며, 약물이나 술을 더 많이 즐겨 약물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아들은 어머니와 헤어져 살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고, 그 결과 성역할 동일시 모델의 상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

(3) 학업문제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 후 친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계속되는 갈등으로 긴장하게 되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면서 심리적인 에너지가 분산되어 공부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학업성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부자가족의 경우 지금까지 모가 교육부분에서 수행했던 역할을 아버지가 대신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갑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활동 3-2 ‘나와 자녀의 의사소통은?’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와 만족정도를 알아보고 열린 대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소들을 분석해봄으로써 자녀와의 열린 대화를 위해 갖춰야 할 요소들을 이해한다.

<p>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와 만족도를 파악한다. 2. 자녀와의 열린 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분석한다. 3. 자녀와의 열린 대화를 위해 갖춰야할 요소들을 이해하고 이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다짐한다.
<p>환경/ 준비물</p>	<p>활동지, 필기도구</p>
<p>진행 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별로 활동지 3-2를 나누어 준 후, 시간을 주고 자녀와의 대화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2. 활동지 3-2를 작성하도록 한다. 3. 참가자들이 돌아가면서 발표한다. 4. 교육자는 참가자들이 발표한 자녀와의 대화의 장애물에 관한 내용을 화이트 보드에 적은 후, 자녀와의 대화의 걸림돌에 관한 강의 3-2에서 이들을 함께 다루도록 한다.
<p>참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각에 잠기는데 도움이 되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어도 좋다. 2.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자녀와 대화를 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나올 경우에는, 시간의 양보다는 질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3.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참가자가 열린 대화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위사소통 유형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활동지 3-2 '나와 자녀의 의사소통은?'

* 하루에 어느 정도, 주로 무슨 주제로 대화를 나누십니까?

-----분 (시간)

-----내용으로

* 이 정도의 대화에 만족하십니까?

혹시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나와 자녀의 대화에 있어서의 장애물은?

강의3-2: 자녀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1.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걸림돌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는 보통 잔소리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위협하고, 훈계하는 등의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녀와의 대화를 촉진시키기 보다는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부모-자녀의 대화를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잘못된 의사소통 유형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사소통 유형	표현방법	의사소통 결과
1. 명령, 강요	* 너는 반드시 * 너는 꼭.... 해야 한다.	공포나 저항을 유도함
2. 경고, 위협	* 만약 ...하지 않으면 그 때는... * ...하는 게 좋을 걸 그렇지 않으면	공포감, 복종, 원망, 분노를 유발함
3. 훈계, 설교	* 너는 ... 해야만 하다. * ...하는 것이 너의 책임이야	방어나 죄책감을 일으킬 수 있고 자녀를 믿지 못함을 전달함
4. 충고, 해결방법 제시	*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 네게 충고하자면	의존성과 저항을 유발함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방해함
5. 논리적인 설득, 논쟁	* 그래 그렇지만 네가 왜 틀렸냐 하면	방어적 자세와 반론을 유발함 열등감, 무력감을 느끼게 함
6. 비판, 비평, 비난	* 너는 게을러서 * 너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무능력한 느낌을 갖게 함 대화단절을 유도함
7. 욕설, 조롱	* 이 바보야 * 그래 너 잘났다	자신이 가치없고 사랑받지 못함을 느낌 말대꾸를 유발하거나 부정적 자아상을 갖게함
8. 분석, 진단	* 무엇이 잘못됐냐 하면.... * 넌 지금 피곤해서 판단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궁지에 처하게 하고 위협과 좌절을 느낌
9. 동정, 위로	* 걱정하지마, 그 정도로 *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뭘 그래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적개심을 유발시킬 수도 있음
10. 캐묻기와 심문	* 왜?, 누가 그런 소리를 해? * 그런데 그게 어째서	대답을 피하거나 대충 거짓말을 함
11. 화제 바꾸기, 빈정거림, 후퇴	* 그만하고 다른 이야기 하자 * 너도 그런 일 당해봐라 * 침묵, 외면	문제해결보다 회피해야 함을 암시 업적 과소평가, 마음을 열지 않음

2. 의사소통 행동 리스트

- 1) 자녀도 할 말이 있음을 인정하자.
 - 자녀의 말을 묵살하거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지 말자.
- 2)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하자.
- 3) 의사소통의 3요소를 기억하자: 듣기, 공감하기, 말하기.
 - ♣ 듣기의 3요소: 몸으로, 시선으로, 감정까지
 - 말하는 사람을 향하고 눈을 맞추고 마음까지 읽어준다.
 - ♣ 공감하기의 3요소: 신체로, 음성으로, 언어로
 - ♣ 말하기의 3요소: 문제행동, 느낌이나 생각, 이유
 - 자녀의 행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결과와 연관된 부모의 느낌을
 - 이중메시지는 금물

-> 교육자는 몇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 참가자들과 나 메시지를 포함해 대화법을 연습한다.

3. 자녀와의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지침

- 1) 자녀의 장점에 초점을 맞춰라.
- 2) 자주 칭찬하라.-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 칭찬의 노하우 -

- 자녀의 성격이나 개성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자녀의 노력이나 과정에 대한 칭찬이 진정한 칭찬이다.
- ♥ 간접적으로 빗대어 칭찬하지 않는다.
 - ♥ 항상 칭찬하지 않는다.
 - ♥ 비교하면서 하는 칭찬은 좋지 않다.
 - ♥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인 마음을 구체적으로 말해준다.
 - ♥ 자녀행동의 결과가 아닌 노력에 관심을 보여준다.
 - ♥ 자녀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얘기해준다.
 - ♥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긍정적인 변화를 평가하도록 한다.

- 3) 경청하라.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 “백마디 말을 하기보다 한 마디 말을 제대로 들어줘라”
 - > 자녀에 대한 배려이고 존중이다.
- 4) 눈높이를 맞춰라: “신발 거꾸로 신어보기”
- 5) 자녀를 존중하라: 나와 동등한 인격체임을 잊지 않는다.
- 6)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라.

한 가지 잘한 일에 대해 칭찬은 두 번 하되
한 가지 잘못된 일에 대해선 야단은 한번 치고 말아야 한다.

더 크고 중요한 의미에서 칭찬은 격려를 포함한다.
격려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칭찬이다.

- 엄마 · 아빠의 칭찬기술(손석한) 중에서

- 칭찬과 격려의 차이점 -

칭찬을 많이 받고 자라면 그 아이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잘하게 된다.
칭찬을 기대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칭찬을 받지 못하면 자책하고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격려를 많이 받은 아이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그 이유는 격려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잘했을 때도 주어지고 실패했을 때도 주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는 스스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면서 작은 일이라도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부모와 아이는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부모가 변하면 아이들도 똑같이 변한다.
숲에다 소리치면 메아리가 되어 돌아온다. 따라서 듣기 좋은 메아리가 들릴 수 있도록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기본자세이다.

아이들은 날마다 듣는 문장들을 무의식중에 기억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표현을 듣다보면 스스로 긍정적인 자기상을 발전시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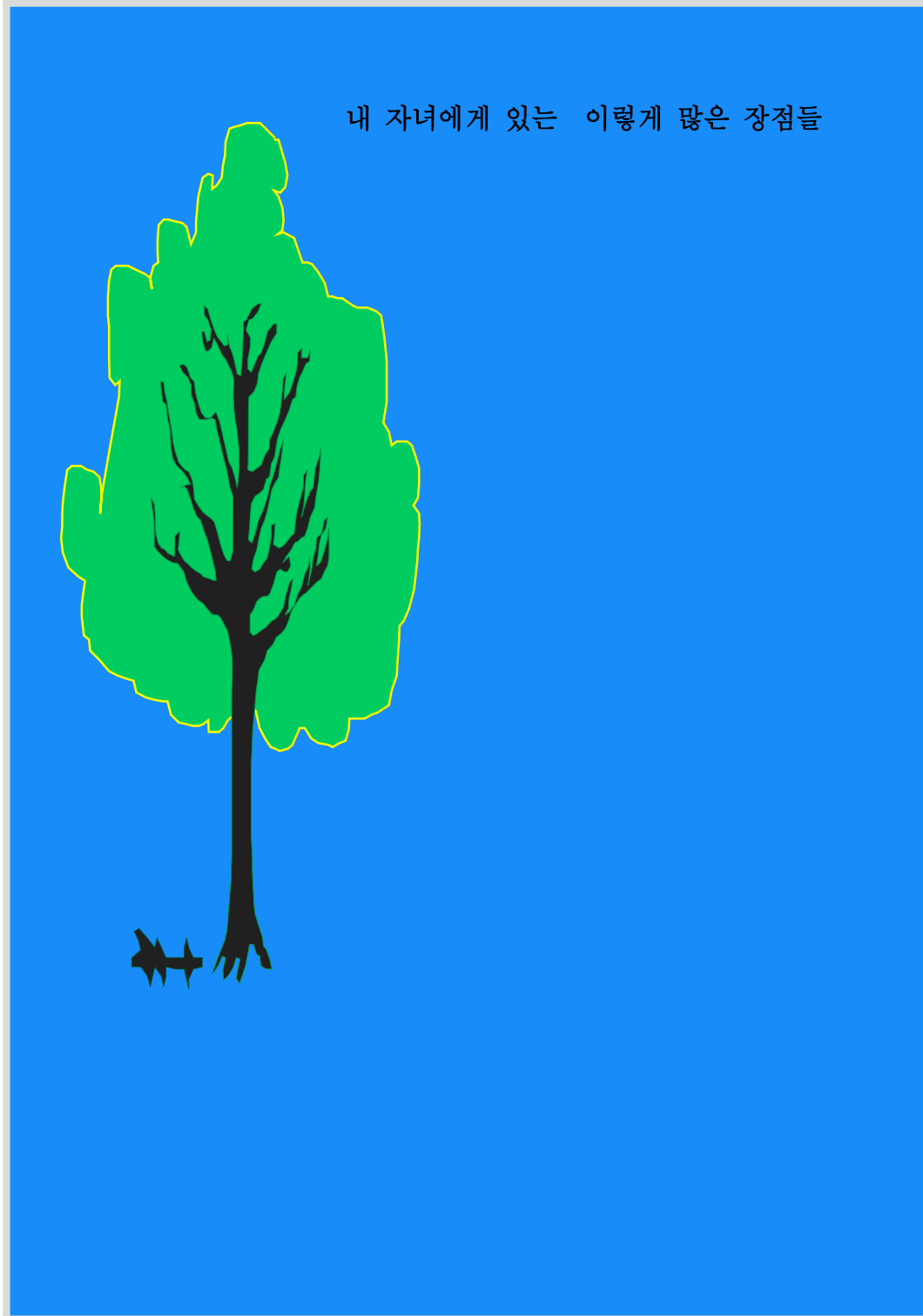
-> 교육자는 자녀와 열린 대화를 하기 위해선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존중해주는 자세가 기본임을 강조한다. 신뢰와 사랑으로 나누는 대화는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토대로, 먼저 자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멋진 아버지가 되길 강조하면서 세 번째 모임을 정리한다.

활동 3-3 ‘내 자녀에게 이런 장점이’

자녀의 장점을 찾아냄으로써 자녀의 자아존중감도 높이고 자녀와의 대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p>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녀의 다양한 장점을 찾아낸다. 2. 생활 속에서 자녀의 장점을 칭찬함으로써 자녀와의 대화를 증진시킨다. 3. 칭찬의 생활화를 통해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인다.
<p>환경/ 준비물</p>	<p>활동지, 필기도구</p>
<p>진행 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별로 활동지 3-3을 나누어 준 후, 시간을 주고 자녀의 다양한 장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2. 활동지 3-3을 작성하도록 한다. 3. 참가자들이 돌아가면서 발표한다. 4. 교육자는 참가자들이 자녀의 장점을 생활 속에서 칭찬하게 되면 변화될 여러 측면들(자녀의 자아존중감 향상, 자녀와의 대화 증가, 자녀와의 친밀감 증진 등)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p>참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각에 잠기는데 도움이 되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어도 좋다. 2. 자녀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내 생활 속에서 칭찬함으로써 자녀뿐 아니라 가족전체에 긍정적인 변화가 올수 있음을 강조한다. 3. 생각이이 변하면 행동이 바뀔을 강조하면서, 참가자도 자신의 장점을 자꾸 되새기면서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태도로 생활할 것을 권유한다.

활동지 3-3 '내 자녀에게 이런 장점이'



활동 3-4 ‘자녀와의 열린 대화를 위한 나의 다짐’

자녀와의 열린 대화를 위한 다짐을 통해 자녀와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가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

<p>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녀와 벽이 없이 열린 대화를 하기 위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노력들에 대해 생각해본다. 2. 자녀와의 열린 대화를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다짐한다.
<p>환경/ 준비물</p>	<p>활동지, 필기도구</p>
<p>진행 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별로 활동지 3-4를 나누어 준 후, 시간을 주고 자녀와의 열린 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점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2. 활동지 3-4를 작성하도록 한다. 3. 참가자들이 돌아가면서 발표한다. 4. 교육자는 참가자들이 발표할 때 각자의 의미있는 다짐들을 화이트 보드에 적은 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참가자들도 함께 실천할 것을 권유한다.
<p>참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각에 잠기는데 도움이 되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어도 좋다. 2.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강의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될 수 있으면 구체적인 다짐을 하도록 권한다. 3. 각 참가자들이 다짐한 내용들 중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하여도 좋을 다짐들을 칠판에 정리하고 모두 함께 ‘선서’를 하여 실천의지를 다지는 것도 좋다.

활동지 3-4 '자녀와의 열린 대화를 위한 나의 다짐'



강의3-3: 좋은 아빠되기

-> 활동3-4를 마친 후 아래의 내용을 프로그램을 정리한다.

인생에서 부모-자녀관계 만큼 진한 관계는 없다. 부부는 이혼하고 헤어지면 남남이 될 수 있지만 부모자녀관계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야 관계가 끝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부모자녀관계에서는 ‘끝’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것은 자녀 자신의 삶의 질을 위해서 부모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한부모라고 자녀에게 무조건 올인하게 되면 자녀에게 부담이 되고, 한부모 또한 자녀양육이 무거운 짐이 되므로 지나친 과보호와 방임 간에 균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래내용은 시카고 지역신문 시카고 트리뷴이 미국의 '아버지의 날'을 앞두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12가지 방법을 제시한 글이다.(강의없이 집에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부쳐놓고 생활할 것을 권유한다)

아버지로서 자녀를 건강하고 멋지게 키우기 위해 몇 가지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실천해보자. “내가 변하면 자녀도 변한다.” 는 생각으로 실천하면 자녀도 변하고 결국 가족 전체가 건강하게 변할 것이다.

1. 함께 있기(Present) :
가능한 한 많이 아이 곁에 있어 주라.
함께 있는 시간의 질이 중요하다고 해도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
2. 관여하기(Engaged) :
아이가 잘하는 것을 지켜봐주고 관심 있어 하는 것을 함께 즐겨라.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아이가 좋아하는 TV프로를 함께 시청하며,
아이에게 무엇이든 가르쳐보라.
3. 모범적인 역할모델 되기(Exemplary) :
자녀에게 역할 모델이 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라.
아이들은 아빠를 보며 아빠의 역할에 대해 배우고 기대하게 된다.
4. 애정 표현하기(Affectionate) :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 그러나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아이에게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자주 이야기 해주고 애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5. 공평하기(Fair) :
아이는 물론 자신에게 책임감 있는 기준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
편견이나 성 차별적인 표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6. 신나게 놀아주기(Playful) :
아이 눈높이에 맞추어 놀아주는 일은 아이와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교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체면에 신경 쓰지 말고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라.
7. 존중하기(Respectful) :
절대로 아이를 알보거나 무시하지 마라.
아이들의 걱정과 불만과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라.
8. 믿을 만한 모습 보이기(Authoritative) :
애매한 말로 반복되는 잔소리를 하지 말며, 아이를 이끌고 싶은 방향에 대해 확고하게 설명하라. 아이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고 아이와 신중하게 논의하는 습관을 들여라.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라.
9. 인내(Patient) :
소리를 지르는 일이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때란 집에 불이 난 경우 이외엔 없다.
10. 지지해주기(Supportive) :
아이의 꿈과 재능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지지해주라.
아이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아이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1. 품위 지키기(Decent) :
남의 아이뿐만 아니라 내 아이와 단 둘이 있을 때에도 아이에게 예의를 지켜라.
고운 말을 사용하며 폭력적이지 않고 바르게 행동하라.
12. 술 취하지 않기(Sober) :
금주가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술에 취한 모습은 좋은 아빠의 모든 조건을 한꺼번에 깨뜨려버릴 수 있다.

-> 사후평가를 실시한 후 참가자들에게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한다.참고자료1. 1회기의 다양한 가족에 관한 비디오

제목	출처	내용
가족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 여성이 새로 쓰는 가족이야기	KBS 일요스페셜 2004년 5월 9일	독신, 무자녀가족, 공동체 가족
한국, 다양한 가족을 꿈꾼다.	CBS 창사 50주년 특별기획 2004년 5월 19일	동거가족, 입양가족, 동성애 가족 등 다수의 다양한 가족
이혼 - 가정의 달 기념	KBS 일요스페셜 2003년 5월 4일	한부모 가족, 입양가족, 공동체 가족
지금은 동거 중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02년 1월 19일	동거가족의 강점, 어려움
또 한번의 선택 - 행복한 재혼의 조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03년 9월 20일	행복한 재혼가족, 재혼가족의 어려움
화려한 싱글 - 그 삶의 조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03년 8월 24일	독신의 강점, 어려움과 그 해결책
싱글족 그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KBS 일요스페셜 2002년 5월 8일	독신의 강점, 어려움과 그 해결책
아이를 선택한 어린 아빠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05년 9월 10일	미혼부의 실상과 어려움
결혼 물음표를 던지다	SBS 스페셜 200년 11월 26일	비혼, 재혼, 동성애 가족 등
가족을 꿈꾸는 가족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06년 8월 12일	미혼모 가족, 입양가족, 시설가족 등
공개입양 - 그 가족들의 특별한 이야기	SBS 뉴스 추적 2006년 10월 11일	입양가족들의 행복
우리 엄마는 외국인	MBC 2006년 10월 22일	결혼이민자 가족
조손가족의 실태	MBC뉴스 후 2006년 7월 27일	조손가족의 실태와 대책
싱글 대디 세 남자 이야기	KBS 스페셜 2008년 3월 12일	부자가족의 세 사례 -부자가족의 어려움과 희망

부록1. 아버지대상 프로그램 사전·사후평가지

1) 자아존중감 척도

Rosenberg(1965)의 척도 + 5문항(최보가·전귀연, 1993)을 첨가하여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3, 5, 8, 10, 11, 14, 15번 문항들은 점수를 역으로 계산한다.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 심리적 복지감

Umberson(1989)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 총 33문항 중 내용이 중복되는 문항들을 제외하고 20문항 선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1, 2, 3, 4, 5, 6, 8, 14, 15, 16, 17, 18, 19, 20번 문항들은 점수를 역으로 계산한다.

- Umberson, D.(1989). Relationships with children: Explaining parents' psychological well-being. *J of Marriage and Family*. 51. 999-1012.

3) 부모역할 만족도 척도

현은강(1993)의 부모역할만족도 척도 48문항 중 15문항을 선정하여 문항내용을 수정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형으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15번 문항은 점수를 역으로 계산한다.

- 현은강(1993).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변인.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I. 다음은 귀하의 자아존중감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현재 귀하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전혀 그렇치 않다	대체로 그렇치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은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에게는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3. 인생의 실패자라는 생각이 든다.					
4.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할 수 있다.					
5.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6. 나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8. 가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진다.					
9.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10. 가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11.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고 싶다.					
12. 내가 해놓은 일에 대해 진정한 자부심을 느낀다.					
13. 나는 무엇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주저없이 그 이유를 말한다.					
14.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15. 나는 주변사람들 앞에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					

II. 다음은 귀하의 심리적 복지감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현재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과 일치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치 않다	대체로 그렇치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특별한 두려움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다.					
2.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불안한 일이다.					
3. 우울해서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데 지장이 있다.					
4. 짜증, 긴장, 우울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5. 걱정거리 때문에 몸이 아프다.					
6. 불안-초조해서 한 가지 일에 정신을 집중하지 못한다.					
7. 내가 이루어 놓은 일에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어서 흐뭇하다.					
8. 특별히 관심이 있거나 흥미를 느끼는 것(일)이 있다.					
9.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에 만족한다.					
10. 모든 것이 내가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졌다.					
11. 나는 지금 누구도 부럽지 않다.					
12. 나는 대체로 기분이 좋다.					
13. 나는 생활이 재미있고 즐겁다.					
14. 나는 세상에서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15. 때때로 나의 삶이 허무하게 느껴진다.					
16. 내 삶이 완전치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17. 때때로 분에 겨워 욕을 하기도 한다.					
18. 때때로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낸다.					
19. 때때로 아버지 역할을 중단할거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20. 때때로 고독하다.					

III. 다음은 귀하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과 일치되는 곳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전혀 그렇치 않다	대체로 그렇치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자녀들과 사이가 좋은 편이다.					
2. 자녀들은 나를 좋은 아빠로 여기는 것 같다					
3.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 대부분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					
4. 나를 대하는 자녀들의 태도에 만족한다.					
5.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자녀들이 나를 도와 주어 기쁘다.					
6. 자녀가 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기쁘다.					
7. 나는 아버지로서 나의 능력에 대해 자신이 있다.					
8. 자녀들이 나에게 대해 관심갖는 정도에 대해 만족한다.					
9. 자녀가 있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 큰 만족을 준다.					
10.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자녀들은 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준다.					
11. 자녀로 인해 내가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12. 자녀들이 내 입장을 생각해 줄 때 기쁘다.					
13. 자녀들이 집안일을 도와주어서 기쁘다.					
14. 자녀들은 나의 좋은 말상대가 되어 준다.					
15. 자녀가 커가면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속이 상한다.					

부록2. 아버지대상 프로그램 전체 평가지

1. 이번 교육을 통해 귀하가 새롭게 배운 점은 무엇입니까?

2. 이번 교육을 통해 귀하가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전체 교육프로그램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단계 또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4. 프로그램에서 좀 더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5. 총괄적으로 이번 교육을 평가한다면

1)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점

2) 귀하의 이번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 ① 매우 만족스럽다
- ② 만족스러운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

6. 본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나 미비점, 앞으로의 프로그램에 대한 바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자녀용 프로그램

1) 첫 번째 모임 :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도입

- 부자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 프로그램 참가 동의서 -

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를 신청합니다. 나는

1.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해 같이 토론하고 그 내용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프로그램에서 제시되는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3. 다른 참가자들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겠습니다.
4.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프로그램 도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사항들에 대해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6.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가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년 월 일

참가자 :

활동지 1-1



나의 장점을 알고 싶어요.

1. 나는 아침에 아빠가 깨우지 않아도 혼자 잘 일어나요.
2. 나는 _____.
3. 나는 _____.
4. 나는 _____.
5. 나는 _____.
6. 나는 _____.
7. 나는 _____.
8. 나는 _____.
9. 나는 _____.
10. 나는 _____.



되고 싶은 나.



20년 후의 나 () 는

* 머리: 생각하고 싶은 것, 삶에서 진정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 눈: 보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

* 귀: 듣고 싶은 것, 가장 듣고 싶은 말

* 입: 말하고 싶은 것,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 가슴: 느끼고 싶은 것, 가슴에 담고 싶은 것, 함께 하고 싶은 사람

* 배: 먹고 싶은 것

* 손: 갖고 싶은 것

* 발: 가고 싶은 곳, 걷고 싶은 곳



되고 싶은 나를 위한 실천 계획

20년 후에 이루고 싶은 내가 되기 위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시 기	연 령	해야 할 일	구체적인 실천 계획
현 재	13세		
1년 후	14세		
5년 후	18세		
10년 후	23세		
15년 후	28세		
20년 후	33세		



나와 내 가족의 장점 찾기

누 가	장점 세례
나	1. 2. 3. 4. 5.
아빠	1. 2. 3. 4. 5.
가족()	1. 2. 3. 4. 5.
가족()	1. 2. 3. 4. 5.



서로 칭찬하기.

"오늘 나 ()는 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것은 _____입니다."

"오늘 나 ()는 아빠에 대해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것은 _____입니다."

"오늘 나 ()는 가족 ()에 대해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것은 _____입니다."

"오늘 아빠는 아빠 자신에 대해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것은 _____입니다."

"오늘 아빠는 나()에 대해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것은 _____입니다."

"오늘 아빠는 가족 ()에 대해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것은 _____입니다."

"오늘 가족 ()는 자신에 대해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것은 _____입니다."

"오늘 가족 ()는 나 ()에 대해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것은 _____입니다."

"오늘 가족 ()는 아빠에 대해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것은 _____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내 자신과 가족, 친구들에 대해 얼마나 칭찬을 하였나요?

잘못이 있을 때, 서로 탓하기보다 서로 안아주고 용서합시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어서 나와 가족, 친구들을 칭찬해봅시다.

칭찬은 우리를 춤추게 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97. 11. 24. 원음

이 민 섭

Dmaj A/C# Bm Bm7/A G D/F#

당 신 은 사랑 받 기위- 해 태어난사람 - 당신 의삶속에서 - 그사랑

1. Em Asus7 - A7 2. Em A7 D A7 D2 A2

받고 있지요 - 받고있- 지 요 **Fine** 태초부터 - 시작된

Bm Bm7/A G D Em Asus7 - A7

하 나 님- 의 사 랑은 - 우리 의 만남 을 통해 열 매 를 맺고 -

D A2 Bm Bm7 G D/D#

당 신 이 이 세 상 에 존 재 함 으 로 인 해 우리 에 게 얼 마 나 큰 기

Em A7 D G/A A7 D A - A° Bm Bm7/A

뻘이 되는지 - 당신은사랑받-기위해 태 어 난사람 -

G D 1. Em Asus7 - A7 2. Em A7 D G A7

지 금 도 그 사랑- 받고 있 지요 - 받고 있지요 - **D.C**

2) 두 번째 모임 : 내 마음은 빨, 주, 노, 초, 파, 남, 보.

활동지 2-1



내가 가장 기쁠 때는...

* 내가 가장 행복하고 기쁠 때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 언제, 왜 행복하고 기뻐나요?

* 이 때 나의 몸의 변화는?

* 기별 때 내가 한 행동은?

* 그 때 나의 마음은?

활동지 2-2



내가 가장 화가 날 때는...

* 내가 가장 화났을 때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 언제, 왜 화가 났나요?

* 이 때 나의 몸의 변화는?

* 화날 때 내가 한 행동은?

* 그 때 나의 마음은?

활동지 2-3

화가 날 땐 이렇게 해 봐요!



하나:

심호흡으로 마음 다스리기!

1. 숨을 들이쉴다.

숨을 들이쉬는 요령

1. 어깨와 가슴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가슴으로 숨을 쉬지 않는다.
3. 배가 볼록하게 나오도록 한다.
4. 숨을 들이쉴 때 가급적 큰 소리를 낸다.
5. 숨을 들이쉴 때 코로만 들이쉴다(입을 다문다).

2. 숨을 내뿜는다.

숨을 내뿜는 요령

1. 배가 볼록하게 숨을 들이마신 다음 멈춘다.
혹은 배가 볼록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약간만 내뿜은 다음 멈춘다.
2. 멈추는 시간은 약 2-3초간으로 한다.
3. 숨을 한꺼번에 몰아 내쉴다.
4. 숨을 몰아 내쉴 때는 입과 코를 동시에 사용한다.
5. 가급적 큰 소리로 내쉴다.

3. 숨을 들이 마시고 내뿜는다.

숨을 들이 마시고 내뿜는 요령

1. 숨을 들이마시고 내뿜는 과정을 연속적으로 한다.
2.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여러 차례 반복한다.
3. 가급적 여유를 가지고 실시한다.

연습하고 난 느낌

활동지 2-4



둘: 화가 날 땐 10까지 세고 얘기하자!

화날 땐 10까지 세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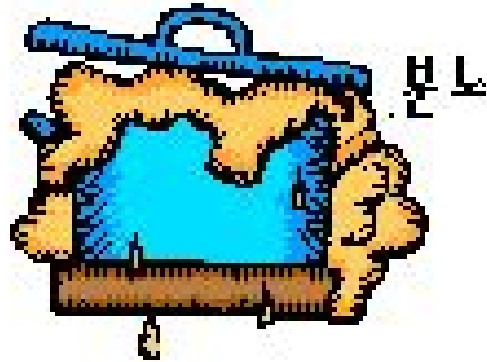
1. 화가 날 때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10까지 센 다음 마음을 가라앉히고 얘기하자.
2. 그래도 화난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아주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을 세어 본 다음 내 생각이나 마음을 얘기해 보자.
3. 숫자 세는 것이 싫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차례대로 10가지를 생각해 본 다음 얘기해 보는 것도 좋다.

연습하고 난 느낌



셋:

열 받지 말고 열 식히자!















분노

생각 연습

1. 화가 나면 내 머릿속에서 뱀비가 끓어 넘치고 있다고 생각하자.
2. 뱀비가 넘치기 전에 불을 끄든지 아니면 불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자.
3. 불을 줄이고 난 다음 내 마음은 어떻게 될까?

연습하고 난 느낌

(자료 1) 얼굴 표정을 나타내는 차트

	행복한	슬픈	화난	무서운
낮은 단계	 쾌활한 반가운 기쁜 즐거움 마음이 놓이는	 체념한 우울한 음울한 침울한 무시당한	 짜증난 괴로운 신경질나는 화난 불쾌한	 불편한 긴장한 조심스러운 초조한 당황한
보통 단계	 매우 즐거운 흥분된 흥분으로 마음이 들뜬 만족한 매우 기쁜	 고독한 비참한 모욕을 당한 낭패스러운 부담스러워하는	 혐오스러운 매우 화난 적대감을 느끼는 매우 짜증스러운 화가 나서 마음이 괴로운	 놀란 두려워하는 매우 긴장한 떨고 있는 불안정한
높은 단계	 열광적인 몹시 흥분한 환희에 찬 몹시 기쁜 기쁨에 빛나는	 매우 비참한 좌절된 무기력해진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절망감을 느끼는	 몹시 노여워하는 광분하는 격노한 증오한 격분한	 공포에 질린 망연자실한 절망적인 뉘를 잃은 자포자기한

활동지 2-6



천국에서 사용하는 일곱가지 언어

언어	이 언어를 사용했을 때	그 때의 나의 느낌
미안해요		
괜찮아요		
좋아요		
잘 했어요		
훌륭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활동지 2-7



**나는 화가 날 때
이렇게 분노를 조절했어요.**

언제	화내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누가 관련되었나?	어떻게 행동했나? (화를 조절한 경우나 조절하지 못한 경우 모두 기입)	그에 따른 결과



내가 사용한 천국 언어

언 제	어떤 상황에서?	누가 관련되었나?	어떤 천국 언어를 사용하였나?	그에 따른 결과

미소

이수인 작곡, 강신욱 작사

성난 얼굴 찡그린 얼굴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웃는 얼굴 밝은 얼굴 좋아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언제나 어디서나 미소를 지어 보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미소를 지어 보세요

성난 얼굴 찡그린 얼굴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웃는 얼굴 밝은 얼굴 좋아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언제나 어디서나 미소를 지어 보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미소를 지어 보세요



3) 세 번째 모임 : 새로 쓰는 가족 이야기



생각해 볼까요?

가족은 무엇일까요? 함께 사는 사람들 인가요? 얼굴이 닮은 사람들 인가요?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써봅시다!

1.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2. 가족은.....
3. 가족은.....
4. 가족은.....
5. 가족은.....
6. 가족은.....
7. 가족은.....
8. 가족은.....
9. 가족은.....
10. 가족은.....



비디오를 보고 나서.....

- Ⓞ 애덤 킹의 가족은 누구 누구인가요?
- Ⓞ 애덤 킹의 가족은 얼굴이 피부색깔이 모두 닮았나요?
- Ⓞ 애덤 킹의 형제들은 서로 서로 어떻게 돕나요?
- Ⓞ 애덤 킹의 부모님은 아이들을 사랑하나요?
- Ⓞ 애덤 킹의 아이들은 부모님께 감사하나요?

킹의 가족들은 모두 다른 모습들을 하고 있지만 언제나 웃음 꽃이 피어나는 가족입니다.

서로 불편하고 어려워도 서로를 돕고 사랑하면서 함께 지내는 가족입니다.



그림동화책을 읽고 나서.....

‘따로 따로 행복하게’ 를 읽고 나서

- ☉ 지금 드미트리어스와 폴라는 누구랑 살고 있나요?
- ☉ 드미트리어스와 폴라는 어떻게 행복해졌나요?

‘가시고기 아빠의 사랑이야기’ 를 읽고 나서

- ☉ 아기 가시고기는 누구랑 살고 있나요?
- ☉ 아기 가시고기가 왜 행복해졌나요?

‘엄마의 의자’ 를 읽고 나서

- ☉ 베라는 누구랑 살고 있나요?
- ☉ 베라와 엄마는 왜 유리병에 동전을 모았을까요?
- ☉ 베라와 엄마는 어떻게 행복해졌나요?

부모님 두 분과 그분들이 낳은 아이들이 한 집에서 사는 모양만이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모습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의 가족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며, 보살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입니다.

올챙이 송

개울가에~ 올챙이 한마리~

꼬~물 꼬~물 올챙이가~

뒷다리가 쑹~!

앞다리가 쑹~!

꼬~물 꼬~물 개구리 됐네~



4) 자녀용 프로그램 사전·사후평가지

(1) 자아존중감 척도: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중에서 부정적인 문항들(4, 5, 7, 9, 10번)은 역산 처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 분노조절 척도: Morganett(1994)의 분노조절 척도를 허승희(2001)가 수정,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중에서 부정적인 문항들(1, 2, 5, 6번)은 역산 처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분노 조절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허승희(역) (2001), 초등학교 아동들을 위한 집단상담: 삶의 기술, 서울:학지사.

(3) 가족의 다양성 대한 수용성 척도: '행복한 우리가족, 자랑스러운 나 '-모자보호시설아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침서-,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2003년 연구보고서.

♣ 다음은 여러분의 자아존중감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다음의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에 ○표를 하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2. 나에게서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다.					
4. 나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5. 가끔 나는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진다.					
6. 나는 다른 사람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 대체로 나는 내가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한다.					
8.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9. 나는 내 자신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기를 바란다.					
10. 가끔 나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 다음은 여러분의 분노조절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다음의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를 하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화를 잘 내기 때문에 종종 곤란을 겪는다.					
2. 나는 내가 항상 화나 있다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다.					
3.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화를 내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4. 내가 원하면 언제나 나의 마음을 느슨하게 조절할 수 있다.					
5. 나는 화를 낼 때 아주 심하게 화를 낸다.					
6. 나는 화가 너무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가끔 있다.					
7. 나는 어떻게 싸움을 피할 수 있는지를 안다.					
8. 나는 나를 못살게 구는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안다.					
9.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10. 나는 화를 내지 않고 누군가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					

♣ 다음은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문항들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예’ 또는 ‘아니오’에 0표해 주세요

	예	아니오
1. 가족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의 부모님이 계셔야 한다.		
2. 가족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직접 낳은 자녀들이 있어야 한다.		
3. 아버지와 자녀들의 성(김씨, 이씨, 박씨 등)은 같아야 한다.		
4. 형제들의 성(김씨, 이씨, 박씨 등)은 같아야 한다.		
5. 부모님과 아이들의 얼굴 생김새는 닮아야 한다.		
6. 형제들의 얼굴 생김새는 닮아야 한다.		
7. 가족들은 모두 한 집에 살아야 한다.		
8. 아이들은 낳아주신 부모님이 돌봐야 한다.		
9.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은 함께 사셔야 한다.		
10. 나를 낳아주신 분만이 나의 부모님이다.		

♣ 자녀용 프로그램 전체 평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나는?

1. 프로그램을 하면서 나는?

- ① 매우 좋았다 ② 대체로 좋았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좋지 않았다 ⑤ 전혀 좋지 않았다

2.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서 나는?

- ① 강한 자신감이 생겼다 ② 약간의 자신감이 생겼다
 ③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④ 자신감이 적어졌다 ⑤ 자신감이 없어졌다

문항내용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① 1회 모임 내용: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② 2회 모임 내용: 내 마음은 빨, 주, 노, 초, 파, 남, 보					
③ 3회 모임 내용: 새로 쓰는 가족이야기					
④ 전체적인 교육 내용					
⑤ 전체적인 교육의 총 기간 (3회)					
⑥ 각 모임의 교육 소요 시간					
⑦ 전체 교육에 대한 만족도					

3. 프로그램의 각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의 만족 정도에 ○표 해주세요.

4. 본 프로그램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것인지 적어주세요.

5. 본 프로그램에서 좀 더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 또는 개선되기를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적어주세요.

참고 문헌

참고문헌

-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2004). 이혼 후 적응 프로그램, 이혼교육 전문가 워크샵 자료.
- 가족관계학회(2003).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열린 터. 숙대 가정관리학과 대학원.
- 김명자·계선자·김연화·박미금·송말희·유지선·이미선(2006). 아는 만큼 행복한 결혼, 건강한 가족,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2007). 맞벌이 가족 자녀대상 방과후 해오름교실 내부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 방과후 학교 운영계획안
- 권진숙·전석균(2001). 사례관리, 하나의학사.
- 김양호·박정화·유계숙·전춘애(2002). 모자보호시설 아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대학가정학회지, 40(6), 145-158.
- 김영희(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익균(2003). 가족복지론. 교문사.
- 김제한(1998). 가정환경과 성격간의 관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선·박혜인·옥선화(2003). 가족관계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박성혜(1995). 분노상황유발과 분노 수준별 청소년의 대처전략과 효과성 평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연보,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부(2007). 2007년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관련 업무처리요령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울산대학교(2005). 건강한 가정, 행복한 부부를 위한 마법의 책. 서영숙, 황은숙(2004). 한부모 가정과 이혼 이해교육. 양서원.
-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2008). 부자가정 자녀돌봄 및 가족건강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결과보고서. 내부자료
- 성정현 외(2004). 가족복지론. 양서원
- 에노모토 히로야키 지음, 신정길 외 옮김(2005). 나를 찾아 떠나는 자기분석 여행. 시그마프레스
-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2008) 부자가정 자녀돌봄 및 가족건강성 향상 프로그램 시범사업 성과보고서. 내부자료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6). 한부모 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 프로그램-당당한 나

행복한 우리 가족.

유영주 외(2004). 새로운 가족학. 신정.

이영숙 외(2004). 가족문제와 복지. 신정.

장인협·우국희(2001). 케어·케이스 매니지먼트, 서울대학교 출판부.

장창호(2001). 케어매니지먼트 실천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7), 맞벌이 가족의 자녀 불분 사업운영 모델개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주입으로.

지영숙(2004). 가족생활설계론. 신정.

토마스 고든 지음, 김인자 역(1994). 효과적인 부모역할 훈련 work book. 한국심리상담연구소.

통계청(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한국청소년연맹 편(2001). 인간관계 훈련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허승희 역(2001), 초등학교 아동들을 위한 집단상담: 삶의 기술. 학지사

허정경(2005). 방과후 아동지도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한마음

황성철(1995). 사례관리실천을 위한 모형개발과 한국적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27호.

Carter, Les & Minirth, Frank(1993). The Anger Workbook: A 13-Step interactive plan to help you. Nashville: Thomas Nelson.

Harter, S.(1990). Issues in the assessment of the self concep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 LaGreca (Ed.), Through the eyes of a child(pp.292-325). Boston:Allyn & Bacon

Maslow, A. H.(1965).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In D. E. Hamachek (Ed.), The self in growth, teaching and learning, New Jersey: Prentice Hall.

Novaco, R. W.(1977). Stress inoculation: A cognitive therapy for anger and its application to a case of depres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4), 600-608.

Rosenberg, M.(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Princeton University press.

Wallerstein, J. S. & Kelly, J. B.(1980). Surviving the breakup: How children and parents cope with divorce. New York: basic Books.

부록

부록 1.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제8조(혼인과 출산) 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가족해체 예방) ①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사회자원의 개발·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2조(가정의 날)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

제2장 건강가정정책

제13조(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①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건강가정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3. 건강가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5. 건강가정 전담인력의 선발·관리에 관한 기본방안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7. 그 밖에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앙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사항을 검토·연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이하 "실무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④중앙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중앙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 및 실무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시·도 건강가정위원회) ①건강가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건강가정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도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가정에 관한 시행계획
2. 건강가정을 위한 재정지원
3. 건강가정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시·도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시·도 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5.3.24, 2008.2.29>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③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3.24, 2008.2.29>

②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시·도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05.3.24, 2008.2.29>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시·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5.3.24, 2008.2.29>

제18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3.24,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연구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3.24, 2008.2.29>

제3장 건강가정사업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유혹가·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7>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육 및 방과후 서비스, 양성평등한 육아휴직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나아가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가족단위 복지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산정·부과, 급여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 교육·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정책 및 사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가족의 건강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 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족여가문화
2.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3.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4.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5. 합리적인 소비문화
6.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7.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제29조(가정의례) ①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0조(가정봉사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

원(이하 "가정봉사원"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가정봉사원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가정봉사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재산·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3.24, **2008.2.29**>

제33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보건복지가족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3.24, **2008.2.29**>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5.3.24, 2008.2.29>

④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5.3.24, 2008.2.29>

제5장 보칙

제3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7166호,2004.2.9>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7413호,2005.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후단,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제4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 및 동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로 한다.

제34조 중 "보건복지부"를 "여성가족부"으로 한다.

③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모·부자복지법) <제8655호,2007.10.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제4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제5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4조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㉘부터 ㉚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록2. 한부모가족지원법 (2008.3)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 칙</p> <p>제1조 【목적】 제2조 【국가 등의 책임】 제3조 【자립을 위한 노력】 제4조 【정의】 제5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제5조의2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제5조의3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제8조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p>	<p>제1조 【목적】 제2조~9조 【삭제】 제10조 【외국인에 대한 특례】 제11조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제12조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의 자격】</p>	<p>제1조 【목적】 제2조 【모·부의 범위】 제3조 【보호대상자 범위】 제3조의2 【보호대상자 범위에 대한 특례】 제4조 【보호의 기간】 제5조 【삭제】</p>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p>제8조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육성】 제 2 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제10조 【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 등】 제11조 【복지급여의 신청】 제12조 【복지급여의 내용】 제13조 【복지자금의 대여】</p> <p>제14조 【고용의 촉진】 제14조의2 【고용지원 연계】</p>	<p>제13조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의 직무】</p> <p>제14조 【복지급여의 내용】 제15조 【복지자금의 대여한도】 제16조 【복지자금의 대여절차 등】 제17조 【복지자금의 상환방법 등】</p>	<p>제6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조사보고 등】 제7조 【복지급여의 신청 등】</p> <p>제8조 【복지자금의 대여신청 등】</p> <p>제9조 【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제9조의2 【모·부자가정증명서의 발급】</p>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p>제15조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제16조 【시설 우선이용】 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 제18조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제 3 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20조 【한부모가족시설의 설치】 제21조 【폐지 또는 휴지】</p> <p>제22조 【수탁 의무】 제23조 【감독】 제24조 【시설 폐쇄 등】</p>		<p>제10조 【한부모가족시설의 설치 신고 등】 제11조 【한부모가족시설의 폐지·휴지 등 신고】 제12조 【서식】</p>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p>제24조의2 【청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비 용</p> <p>제25조 【비용의 보조】</p> <p>제25조의2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p> <p>제26조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보 칩</p> <p>제27조 【압류 금지】</p> <p>제28조 【심사청구】</p> <p>제29조 【벌칙】</p> <p>제30조 【양벌규정】</p> <p>제31조 【권한의 위임】</p>	<p>제18조 【비용의 부담】</p> <p>제19조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p>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부칙	부칙 【별표】	부칙 【별지 서식】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정 1989. 4. 1 법률제4121호 일부개정 1997. 8.22 법률제5358호(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 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 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12.30 법률제5612호 일부개정 1999. 9. 7 법률제602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 2002.12.18 법률제6801호 일부개정 2005. 3.24 법률제7413호 일부개정 2006.12.28 법률제8119호 일부개정 2007.10.17 법률제8655호	제정 1989.12.13 대통령령제12851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6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 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52호 일부개정 1999. 4.24 대통령령제16264호 일부개정 2003. 6.13 대통령령제17997호 일부개정 2005. 6.23 대통령령제18873호 일부개정 2008. 1.15 대통령령제20548호 일부개정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9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1990. 6. 5 보건사회부령제849호 일부개정 1993. 5.31 보건사회부령제905호 일부개정 1996. 1.17 보건복지부령제18호 일부개정 1999. 3.11 보건복지부령제99호 일부개정 1999. 5. 8 보건복지부령제107호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10. 1 보건복지부령제133호 일부개정 2000. 9.30 보건복지부령제178호 일부개정 2002.12.20 보건복지부령제320호 일부개정 2003. 7. 9 보건복지부령제253호 일부개정 2005. 6.23 여성가족부령제1호 일부개정 2008. 1.15 여성가족부령제17호 일부개정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제1장 총 칙 <개정 2007.10.17>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13, 2008.1.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9, 2006.5.12, 2008.1.15>
제2조 【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조~제9조 삭제 <1999.4.24>	
제3조 【자립을 위한 노력】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유기)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다. 미혼자(사실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 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 인 가족을 말한다.

제2조 【모·부의 범위 <개정 2003.7.9>】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라목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1.17, 2003.7.9, 2005.6.23, 2006.5.12, 2008.1.15, 2008.3.3>

1.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3. 배우자의 장기복역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p>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p> <p>6.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p> <p>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5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제 4조제 1호부터 제 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3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p> <p><개정 1996.1.17, 2003.7.9, 2005.6.23, 2008.1.15, 2008.3.3></p> <p>② 삭제 <1999.10.1></p>
<p>제5조의2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 19조제 4항 제9호의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p>	<p>제10조 【외국인에 대한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특례 대상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p>	<p>제3조의2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p> <p>1.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p>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p> <p>[본조신설 2007.3.22]</p>	<p>없는 아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부모의 불화 등으로 기출한 아동 3.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p>[본조신설 2008.1.15]</p> <hr/> <p>제4조 【보호의 기간】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복지급여대상자의 보호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개정 2000.9.30, 2008.1.15></p> <p>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3.11, 2000.9.30, 2003.7.9, 2007.3.29, 2008.1.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부자보호시설 및 모·부자자립시설 : 3년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 연장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모 또는 부
-------------------------------------------------------------------------------------------------------------------------------------------------------------------------------------------------------------------------------------------------------------------------------------------------------------------------------------------------------------------------------------------------------------------------------------------------------------------------------------	------------------------------------------------------------------------	----------------------------------------------------------------------------------------------------------------------------------------------------------------------------------------------------------------------------------------------------------------------------------------------------------------------------------------------------------------------------------------------------------------------------------------------------------------------------------------------------------------------------------------------------------------------------------------------------------------------------------

		<p>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 중인 모 또는 부</p> <p>다. 「여성발전기본법」 제 33조제 2항의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 훈련 중인 모 또는 부</p> <p>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장애·질병 등의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인정하는 자</p> <p>2. 미혼모자시설 : 미혼모의 출산 전 후 1년 이내. 다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3.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모·부자 공동생활가정 : 1년 이내. 다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p> <p>4.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2년 이내. 다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	--	--------------------------------------------------------------------------------------------------------------------------------------------------------------------------------------------------------------------------------------------------------------------------------------------------------------------------------------------------------------------------------------------------------------------------------------------------------------------------------------------------------------------------------

		<p>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5. 일시보호시설 : 6개월 이내. 다만, 제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p>
제5조의3 삭제 <2007.10.17>		
제6조 삭제<1998.12.30>		
<p>제7조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① 한부모가족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 구역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11조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개정 2008.1.15>】</p> <p>① 법 제7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는 소장과 상담에 필요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을 두어야 한다.</p> <p><개정 2003.6.13, 2007.3.22, 2008.1.15></p> <p>②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 상담소의 분소 또는 이동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개정 2003.6.13, 2008.1.15></p> <p>③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피보호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이하 “일시보호실”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3.6.13,</p>	

	<p>2008.1.15></p> <p>④ 삭제<1998.12.31></p>	
<p>제8조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 ①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제7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을 둔다.</p> <p>②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의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12조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의 자격 <개정 2008.1.15>】 법 제8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개정 1998.12.31, 2003.6.13, 2008.1.15></p> <p>제13조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의 직무 <개정 2008.1.15>】 법 제8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개정 2008.1.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신상 및 고충상담 2. 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3. 한부모가족에 대한 취업상담 및 지원 4.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상담 및 지원 5. 한부모가족에 대한 보호내용의 구분 6. 피보호자의 일시 보호 7. 피보호자에 대한 사후관리 8. 그 밖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에 필요한 사항 	<p>제5조 삭제 <1999.3.11></p>

	[전문개정 2003.6.13]	
제9조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육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개정 2007.10.17>		
제10조 【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 구역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①항에 따라 보호대상자를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와 피보호자의 실태에 관한 대장(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보고 및 대장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6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조사보고 등 <개정 2008.1.15>】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한부모가족의 실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한부모가족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 2000.9.30, 2003.7.9, 2007.3.29, 2008.1.15> 1. 가족상황 2. 소득 및 자산보유상황등 생활상태 3.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그 부양능력의 유무 4. 그 밖에 보호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①항에 따라 조사된 한부모가족관리카드를 기초로 하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p>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월 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7, 2000.9.30, 2003.7.9, 2005.6.23, 2008.1.15></p>
<p>제11조 【복지 급여의 신청】 ①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복지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절차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7조 【복지 급여의 신청 등 <개정 2008.1.15>】</p> <p>① 법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와 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 급여(시설입소) 신청서에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별 제 1호 나목 해당자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거주지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보호받을 사유가 발생한 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6.1.17, 1999.10.1, 2000.9.30, 2003.7.9, 2006.5.12, 2008.1.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06.5.12> 2. 삭제 <2006.5.12>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p>

		<p>신청인(이미 복지 급여를 받고 있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자로서 가족관계등록에 변동사항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2008.1.15></p> <p>③ 제1항에 따라 보호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를 실시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호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15></p> <p>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08.1.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	--	---------------------------------------------------------------------------------------------------------------------------------------------------------------------------------------------------------------------------------------------------------------------------------------------------------------------------------------------------------------------------------------------------------------------------------------------------------------------------------------------------------------------------------------------------------------------------------------------------------------------------

<p>제12조 【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p>②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혼모나 미혼부가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미혼모나 미혼부의 직계존속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복지 급여는 보건복지</p>	<p>제14조 【복지급여내용】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내용과 수준은 모·부자가정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3.6.13, 2005.6.23></p>	<p>3. 보호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p>
---------------------------------------------------------------------------------------------------------------------------------------------------------------------------------------------------------------------------------------------------------------------------------------------------------------------------------------------------------------------------------------------------------------------------------------------------------------------------------------------------------------------------------------------	------------------------------------------------------------------------------------------------------------------------------------------------------------	----------------------------------

<p>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실시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13조 【복지 자금의 대여】 ①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아동교육비 3. 의료비 4. 주택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p>② 제1항에 따른 대여 자금의 한도, 대여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15조 【복지 자금의 대여한도 <개정 2008.1.15>】</p> <p>법 제13조에 따른 복지 자금의 대여한도는 대여목적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하되, 그 금액은 각 복지 자금별로 매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5.6.23, 2008.1.15></p> <p>제16조 【복지 자금의 대여절차 등 <개정 2008.1.15>】</p> <p>① 법 제13조에 따른 복지 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자금대여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24, 2005.6.23, 2008.1.15></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항의 복지 자금의 대여신청이 있으면 지체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하고 대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대여내용을 복지 자금의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p>	<p>제8조 【복지 자금의 대여신청 등 <개정 2008.1.15>】</p> <p>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복지자금대여 신청서는 거주지관할 읍·면 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9.30, 2003.7.9, 2006.5.12, 2008.1.15></p> <p>② 제1항에 따른 복지자금대여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개정 2008.1.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아동교육비 : 재학증명서 3. 의료비 : 의사의 진단서 4. 주택자금 : 매매·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p>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을 복지 자금대역자로 결정하면 그에게 복지자금대역대상자결정</p>

	<p>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5></p> <p>제17조【복지 자금의 상환방법 등 <개정 2008.1.15>】 ① 법 제13조에 따라 복지 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5.6.23, 2008.1.5></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 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대여내용과 상환내역등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5.6.23, 2008.1.5></p> <p>③ 제1항에 따라 복지 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거주지를 다른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로 이동한 경우에는 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지체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고 그 내용을 취급금융기관에 통지(취급금융기관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p>	<p>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6.1.17, 2000.9.30, 2008.1.15></p> <p>제9조【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영 제17조 제2항에 따른 복지 자금대여 내용과 상환 내역 등은 복지자금대여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한다. <개정 2000.9.30, 2008.1.15></p> <p>제9조의2【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 <개정 2003.7.9>】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한부모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6호서식에 의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 2003.7.9> [본조신설 1996.1.17]</p>
--	-----------------------------------------------------------------------------------------------------------------------------------------------------------------------------------------------------------------------------------------------------------------------------------------------------------------------------------------------------------------------------------------------------------------------------------------------------------------------------------------------------------------------------------------	----------------------------------------------------------------------------------------------------------------------------------------------------------------------------------------------------------------------------------------------------------------------------------------------------------------------------------------------------------------------------------------------

	<p>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개정 1999.4.24, 2007.12.31, 2008.1.5 ></p>	
<p>제14조 【고용의 촉진】 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14조의2 【고용지원 연계】 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및 기관과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p> <p>② 노동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p>		

<p>아동을 위한 취업지원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7.10.17]</p>		
<p>제15조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16조 【시설 우선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p>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18조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p> <p style="text-align: center;"><개정 2007.10.17></p>		
<p>제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을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퇴소) 후 자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모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주택 편의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부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을 		

<p>일시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p> <p>4. 부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주택 편의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p> <p>5. 미혼모자시설 : 미혼 여성의 임신 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p> <p>6.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p> <p>7. 모자 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p> <p>8. 부자 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이 일정 기간</p>		
---------------------------------------------------------------------------------------------------------------------------------------------------------------------------------------------------------------------------------------------------------------------------------------------------------------------------------------------------------------------------------------------------------------------------------------------------------------------------------------------------------------------	--	--

<p>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p> <p>9.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들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p> <p>10. 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p> <p>11. 여성복지관 :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p>		
-------------------------------------------------------------------------------------------------------------------------------------------------------------------------------------------------------------------------------------------------------------------------------------------------------------------------------------------------------------------------------------------------------------------------------------------------------------	--	--

<p>12.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 입소(입소) 등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p> <p>②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 보호 기간과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2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기준과 설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1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개정 2008.1.15>】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p>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p> <p>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1부</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p> <p>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p> <p>④ 제1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시설의 장, 시설의 종류·명칭·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서 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p>
--	--	-----------------------------------------------------------------------------------------------------------------------------------------------------------------------------------------------------------------------------------------------------------------------------------------------------------------------------------------------------------------------------------------------------------------------------------------------------------------------------------------------------------------------------------------------

		<p>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 계획서(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p>⑤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 4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 대장등본(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p>
--	--	---------------------------------------------------------------------------------------------------------------------------------------------------------------------------------------------------------------------------------------------------------------------------------------------------------------------------------------------------------------------------------------------------------------------------------------------------------------------------------------------------------------------------------------------------------

		<p>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p> <p>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5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거나 제4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p> <p>[전문개정 2007.3.29]</p> <p>제10조의2(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개정 2008.1.15>)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15></p> <p>② 법 제20조제 3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8.1.15></p> <p>[본조신설 2007.3.29]</p>
제21조 【폐지 또는 휴지】 제20조제 5항에		제11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휴지 등

<p>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신고 <개정 2008.1.15>】 ① 법 제21조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휴지기간은 1년 이내에 한한다)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휴지·재개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휴지·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종사자 및 입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p> <p><개정 2008.1.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 계획서(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p>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항에 따른 폐지(휴지·재개)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	--	-----------------------------------------------------------------------------------------------------------------------------------------------------------------------------------------------------------------------------------------------------------------------------------------------------------------------------------------------------------------------------------------------------------------------------------------------------------------------------------------------------------------------------------------------------------------------------------------

		<p>[전문개정 2007.3.29]</p> <p>제12조(서식) 제6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관리카드, 제7조제1항에 따른 복지급여 시설 입소)신청서, 제8조제1항에 따른 복지자금 대여신청서, 제8조제3항에 따른 복지자금대여 대상자결정통지서 및 제9조에 따른 복지자금 대여관리카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 하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08.1.15]</p>
<p>제22조 【수탁 의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한부모가족을 입소보호하도록 위탁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23조 【감독】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p>		

<p>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24조 【시설 폐쇄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정지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0조제3항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 23조제 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p>[전문개정 2007.10.17]</p>		
<p>제24조의2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4장 비용</p>		

<개정 2007.10.17>		
<p>제25조 【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 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p>	<p>제18조 【비용의 부담】 법 제2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야 할 한부모가족 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4.24, 2003.6.13, 2008.1.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별표와 같다.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80 이상을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별표와 같다. 	
<p>제25조의2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p>	<p>제19조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기관이</p>	

<p>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보호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본조신설 2007.10.17]</p>	<p>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은 징수대상 비용 전액으로 하되, 부정수급자가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p> <p>② 보호기관은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부정수급자에게 납부통지(부정수급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 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8.1.15]</p>	
<p>제26조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나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경영하면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p>② 보호기관은 복지 급여의 변경 또는 복지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이미 지급한 복지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보호대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 칙 <개정 2007.10.17></p>		
<p>제27조 【압류 금지】 이 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28조 【심사 청구】 ①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2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한 자</p> <p>2. 제24조에 따라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p> <p>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p> <p>③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30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p>		

<p>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p> <p>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31조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부칙 【제4121호,1989.4.1】</p> <p>①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 <p>② 【모자보호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모자복지시설로 본다.</p> <p>부칙 【사회복지사업법】</p>	<p>부칙 【제12851호,1989.12.13】</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p>	<p>부칙 【제849호,1990.6.5】</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905호,1993.5.31】</p>

<p style="text-align: center;"><제5358호,1997.8.22></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8조 생략</p> <p>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 4항중 “설치허가에”를 “설치신고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등)”을 “(시설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 20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허가를 받지 틀 신고를 하지”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p> <p>부칙 【행정 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446호,1994.12.23></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8>생략 <119>모자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제3조제1항제3호, 제14조, 제15조 및 제1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제4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제11조제4항, 제16조제1항 및 제1조제 4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0>내지 <140>생략</p> <p>부칙 【행정 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 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8호,1996.1.17】</p> <p>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초지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p> <p>①및 ②생략</p> <p>③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모자복지법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p> <p>④내지 ⑧생략</p> <p>부칙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p> <p>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5612호,1998.12.30】</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여성복지관 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는 제 19조의 개정</p>	<p>부칙 【제16052호,1998.12.31】</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6264호,1999.4.24】</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기준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부칙 【제99호,1999.3.11】</p> <p>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보호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 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입소하는 세대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 <제107호,1999.5.8></p> <p>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p> <p>② 【다른 법령의 개정】 모자복지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	--------------------------------------------------------------------------------------------------------------------------------	---------------------------------------------------------------------------------------------------------------------------------------------------------------------------------------------------------------------------------------------------------------------------------------------------------------------------------------------------------------------------------------------------

<p>규정에 의한 여성복지관 및 모자가정상담소로 본다.</p> <p>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024호,1999.9.7></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생활보호법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p> <p>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p>		<p>별표 2의 2. 시설별기준의 구분란중 “부녀복지관”을 “여성복지관”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3호,1999.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8호,2000.9.30】 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0호,2002.12.20】</p> <p>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20세대 미만의 모자보호시설, 30인 미만의 미혼모시설 및 10인 미만의 일시보호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p>
----------------------------------------------------------------------------------------------------------------------------------------------------------------------------------------------------------------------------------------------------------------------------------------------------------------------------------------------------------------------------------------------------	--	--------------------------------------------------------------------------------------------------------------------------------------------------------------------------------------------------------------------------------------------------------------------------------------------------------------------------------------------------------------------------------------------------------------------------------------------------------------------------------------------------------------------------------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801호,2002.12.18】</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자가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지원대상인 부자가정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부자가정으로 본다.</p> <p>제3조 【모자복지상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복지상담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로 본다.</p> <p>제4조 【모자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모 부자복지상담원으로 본다.</p> <p>제5조 【모자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997호,2003.6.13】</p> <p>이 영은 200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3호,2003.7.9】</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p>
----------------------------------------------------------------------------------------------------------------------------------------------------------------------------------------------------------------------------------------------------------------------------------------------------------------------------------------------------------------------------------------------------------------------------------------------------------------------------------------------------------------	---------------------------------------------------------------------------------------------------	-----------------------------------------------------------------------------------------------------------------------------------------------

<p>모·부자복지시설로 본다</p> <p>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p> <p>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라. 모·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p> <p>②윤락행위등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③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는 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p>제15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7. 모·부자복지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업무</p>		
---------------------------------------------------------------------------------------------------------------------------------------------------------------------------------------------------------------------------------------------------------------------------------------------------------------------------------------------------------------------------------------------------------------------------------------------------------------------------------------------------------------	--	--

<p>③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부자복지법</p> <p>④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p> <p>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모자복지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를 “모 부자복지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로 한다.</p> <p>⑥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부자복지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p>		
------------------------------------------------------------------------------------------------------------------------------------------------------------------------------------------------------------------------------------------------------------------------------------------------------------------------------------------------------------------------------------------------------------------------------------------	--	--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정부조직법】 <제7413호,2005.3.24></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p> <p>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p> <p>2.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모·부자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호 라목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p> <p>제5조,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모·부자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p> <p>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p> <p>⑧내지 <35>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5.6.23></p> <p>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p> <p>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2조 및 별표 4의 시설장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p> <p>④ 내지 ⑦ 생략</p>
----------------------------------------------------------------------------------------------------------------------------------------------------------------------------------------------------------------------------------------------------------------------------------------------------------------------------------------------------------------------------------------------------------------------------------------------------------------------------------	---------------------------------------------------------------------------------------------------------------------------------------------------------------------------------------------------------------------------------------------------------------------------------------------------------------------------------------------------------	--------------------------------------------------------------------------------------------------------------------------------------------------------------------------------------------------------------------------------------------------------------------------------------------------------------------------------------------------------------

<p>한다. 제10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1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⑥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119호,2006.12.28】</p> <p>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 【미혼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미혼모시설은 제1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혼모자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일부 1년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③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의 신고에 관한 경 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일부 3개월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9946호,2007.3.22】</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호,2006.5.12】</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호,2007.3.29】</p> <p>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된 모·부자복지시설을 신축 또는 증·개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부자복지시설의 종류 2. 모·부자복지시설의 소재지
-------------------------------------------------------------------------------------------------------------------------------------------------------------------------------------------------------------------------------------------------------------------------------------------------------------------------------------------------------------------------------------------------------------------------------------------------------------------------------------------------------------------------------------------------------------	--------------------------------------------------------------------------------------------	-----------------------------------------------------------------------------------------------------------------------------------------------------------------------------------------------------------------------------------------------------------------------------------------------------------------------------------------------------------------------------------------------------------------------------------------------------------------------------------------

<p>다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라목 중 “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을 “제19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미혼모자시설·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p>		<p>3. 모·부자복지시설의 정원증원되는 경우에 한한다)</p> <p>③ 【종사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사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p> <p>④ 【종사자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채용된 종사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규칙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p>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부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부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0조의 2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기준, 종사자의 배치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	--	----------------------------------------------------------------------------------------------------------------------------------------------------------------------------------------------------------------------------------------------------------------------------------------------------------------------------------------------------------------------------------------------------------------------------------------------------------------------------------------------------------------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655호,2007.10.17】</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보호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부자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된 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된 자로 본다.</p> <p>제3조 【모·부자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부자복지법」에 따라 임용된 모·부자복지상담원은 이 법에</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548호,2008.1.15】</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의 사업란 중 제10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06.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p> <p>별표 1의2 제102호란 및 제103호란 중 “모부자복지시설”을 각각 “한부모가족복지</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호,2008.1.15】</p> <p>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고, 제41조의2제1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며,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한다.</p>
-------------------------------------------------------------------------------------------------------------------------------------------------------------------------------------------------------------------------------------------------------------------------------------------------------------------------------------	-----------------------------------------------------------------------------------------------------------------------------------------------------------------------------------------------------------------------------------------------------------------------------------------------------------------------------------------------------------------------------------------------------------------------------------------------	-----------------------------------------------------------------------------------------------------------------------------------------------------------------------------------------------------------------------------------------------------------------------------------------

<p>따라 임용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으로 본다.</p> <p>제4조 【모·부자복지상담소 및 모·부자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부자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 및 모·부자복지시설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본다.</p> <p>제5조 【모·부자복지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부자복지법」에 따른 모·부자복지단체는 이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로 본다.</p> <p>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p> <p>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p>	<p>시설”로 한다.</p> <p>②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1호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모·부자 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p> <p>③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모자가정”을 “모자가족”으로 한다.</p> <p>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모·부자복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한다.</p> <p>③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제2호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p> <p>④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4호 및 제5항 중 “모·부자가정”을 각각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 호의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3 중 “모·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p> <p>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을</p>
---------------------------------------------------------------------------------------------------------------------------------------------------------------------------------------------------------------------------------------------------------------------------------------------------------------------------------------------------------------------------------------------------------------------------------------------------------------------------------------------------------------	---------------------------------------------------------------------------------------------------------------------------------------------------------------------------------------------------------------------------------------------------------------------------------------------------------------------------------------------------	-------------------------------------------------------------------------------------------------------------------------------------------------------------------------------------------------------------------------------------------------------------------------------------------------------------------------------------------------------------------------------------------------------------------------------------------------------------------------------------------------------------------------------

<p>③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을 일부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모 부자복지법”을 “한부모 가족지원법”으로, “제8호”를 “제9호”로 한다</p> <p>④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모 부자복지법」”을 “한부모 가족지원법”으로, “모 부자가정”을 “한부모 가족”으로 한다.</p> <p>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한부모가족지원법」</p> <p>⑥ 아동복지법 일부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0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모 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p> <p>⑦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모 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32조제5항제7호 중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모 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p>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p>
---------------------------------------------------------------------------------------------------------------------------------------------------------------------------------------------------------------------------------------------------------------------------------------------------------------------------------------------------------------------------------------------------------------------------------------------------------------------------------	--	------------------------------------------------------------------------------------------------------------------------------------------------------------------------------------------------------------------------------------------------------------------------------------------

<p>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p> <p>⑧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2항 중 “모자가정”을 “모자가족”으로 한다.</p> <p>제24조제2항 중 “편부모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p> <p>⑨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1항제2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p> <p>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37조의 제목 중 “모·부자복지”를 “한부모가족복지”로 하고, 같은 조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p> <p>⑪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1항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p>		
------------------------------------------------------------------------------------------------------------------------------------------------------------------------------------------------------------------------------------------------------------------------------------------------------------------------------------------------------------------------------------------------------------------------------------------------------------------------------------------------------------------------	--	--

<p>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한다.</p> <p>⑫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2항제9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모·부자복지시설”을 “한가족복지시설”로 한다.</p> <p>제30조제1항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한다.</p> <p>⑬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2항제1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p> <p>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모·부자복지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	--	--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보건복지가족부 직제】 <제20679호,2007.2.29></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8조 생략</p> <p>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4>생략 <7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보건복지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p> <p>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89>생략 <90>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p> <p>제3조제1항,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p>
---------------------------------------------------------------------------------------------------------------------------------------------------------------------------------------------------------------------------------------------------------------------------------------------	-------------------------------------------------------------------------------------------------------------------------------------------------------------------------------------------------------------------------------------------------------------------------------------------------	--------------------------------------------------------------------------------------------------------------------------------------------------------------------------------------------------------------------------------------------------------------------------------------------------------------

<p>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43>생략 <54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호라목, 제5조, 제5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p> <p>제10조제3항, 제14조의2 제2항, 제23조제1항, 제31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p>	<p>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p> <p><76>내지 <80>생략</p>	<p>제6조제2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p> <p>제1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p> <p><91> 내지 <94> 생략</p>
--------------------------------------------------------------------------------------------------------------------------------------------------------------------------------------------------------------------------------------------------------------------------------------------------------	-------------------------------------------------------------------------------------------	-------------------------------------------------------------------------------------------------------------------------------------------------

[별표] (시행령 제18조 관련) <개정 2003.6.13, 2008.1.1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한부모가족복지지원사업 비용부담 비율

구 분	국 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의 경우	50%	50%
광역시 및 도의 경우	80%	20%

[별표 1] 삭제 <99.3.11>

[별표 2] <개정 2002.12.20, 2003.7.9, 2007.3.29, 2008.1.15>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제10조의2제1항관련)

1. 입지조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별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敷地)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설 유형별 규모

시설 유형별로 다음의 세대 또는 인원이 입소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종 별	입소정원	시설의 최소면적
모자보호시설	1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	56.1제곱미터×정원
부자보호시설	1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	56.1제곱미터×정원
모자자립시설	1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	56.1제곱미터×정원
부자자립시설	1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	56.1제곱미터×정원
미혼모자시설	30인 이상 50인 이하	20.79제곱미터×정원
	10인 이상 30인 미만	13.21제곱미터×정원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5세대 이상 20세대 이하	20.79제곱미터×정원
모자 공동생활가정	5세대 이상 20세대 이하	20.79제곱미터×정원
부자 공동생활가정	5세대 이상 20세대 이하	20.79제곱미터×정원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10인 이상 30인 이하	9.9제곱미터×정원
일시보호시설	10인 이상 70인 이하	9.9제곱미터×정원
여성복지관		

3. 시설 유형별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시설 유형별로 입소 또는 이용하는 자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시설 유형별로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가) 공통시설 : 거실, 사무실(입소자 20세대 이하 또는 이용자 30인 미만은 상담실을 겸용), 상담실, 도서실, 화장실(목욕실 겸용설치 가능), 목욕실, 급수 및 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경비실, 창고 등 그 밖의 부대시설. 다만, 도서실, 목욕실, 경비실 등은 입소자 20세대 이상 또는 이용자 30인 이상의 시설에 한한다.
 - (나) 시설 유형별 추가 설비시설
 - 1) 부자보호시설 및 부자자립시설 : 식당 및 조리실 등
 - 2) 미혼모자시설 : 교양교육실, 의무실(이용자 30인 미만의 시설은 산후회복실 겸용), 산후회복실, 식당 및 조리실 등
 - 3)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자 공동생활가정, 부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교양교육실 등
 - 4) 여성복지관 : 복지·평생교육·문화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시설

나. 설비기준

- (1) 거실
 - (가)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여야 하고, 상당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을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모자보호시설 및 모자자립시설, 부자보호시설 및 부자자립시설의 거실에는 부엌을 포함하되, 거실의 실제면적은 세대당 42.9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라) 미혼모자시설의 거실의 실제면적은 이용자 1인당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로 한다.
 - (마)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모자 공동생활가정, 부자 공동생활가정의 거실에는 부엌을 포함하되, 거실의 실제면적은 세대당 13.2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바)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및 일시보호시설의 경우에는 거실의 실제면적은 이용자 1인당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로 한다.
- (2) 사무실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상담실을 겸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담실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상담실
공개되지 아니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4) 도서실
책상·의자 등 도서실 이용자에 필요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의 정서함양을 위한 신문·잡지 등의 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5) 화장실
수세식변기를 설치하되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을 목욕실로 겸용할 경우 샤워 및 세면설비를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 (6) 목욕실
욕탕·샤워 및 세면설비 등 목욕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7) 급수 및 배수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의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 (8) 비상재해대비시설
(가) 소화용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계단을 반드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
(라) 가스를 사용하는 때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9) 경비실
시설 경비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10) 창고 등 그 밖의 부대시설
물품 보관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부대시설의 경우 시설에 적합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11) 식당 및 조리실

(가) 식탁·의자 등 식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조리실은 채광(採光)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2) 교양교육실

입소자의 교양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컴퓨터 등 필요한 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의무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위생재료·의료기구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4) 산후회복실

분만 후 산모의 회복과 산후처리를 하는 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3] <개정 2003.7.9, 2007.3.29, 2008.1.1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제10조의2제2항관련)

○ 시설 규모별 종사자의 수

구 분	시설규모	종사자의 수							
		시설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관리인
모자보호시설	30세대 이하 20세대 이상	1	1	1	1				1
	20세대 미만 10세대 이상	1	1	1	1				
부자보호시설	30세대 이하 20세대 이상	1	1	1	1			1	1
	20세대 미만 10세대 이상	1	1	1	1			1	
모자자립시설 및 부자자립 시설	30세대 이하 20세대 이상	1	1	1					
	20세대 미만 10세대 이상	1		1					
미혼모자시설	50인 이하 30인 이상	1	1	3	1	1		1	1
	30인 미만 10인 이상	1	1	1	1	1		1	
미혼모자 공동 생활가정, 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부자공동생활가정	20세대 이하 10세대 이상	1		1	1				
	10세대 미만 5세대 이상	1		1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30인 이하 20인 이상	1		1	1				
	20인 미만 10인 이상	1		1					
일시보호시설	70인 이하 30인 이상	1	1	1	2			1	1
	30인 미만 10인 이상	1	1	1	1				

※ 비고 : 영양사의 경우 입소 또는 이용자가 상시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별표 4] <개정 2002.12.20, 2003.7.9, 2007.3.29, 2008.1.1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0조의2제2항관련)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라.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마.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가. 사무국장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4)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생활복지사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2)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가진 자

(5)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심리학·교육학·여성학·사회학·사회사업학·법학·신학·의학·간호학 또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다. 생활지도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간호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자격이 있는 자. 다만,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영양사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사 자격이 있는 자

바. 조리사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자격이 있는 자

사. 관리인

신체건강한 자로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00.9.30>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3.7.9, 2008.1.15>

한부모가족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설소재지)	
세대주성명 (시설명)	
세대주와의관계	
용 도	
<p>「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임을 신청하오니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대상자와의 관계</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발급번호	제 호
<p>위와 같이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시장·군수·구청장) 인</p>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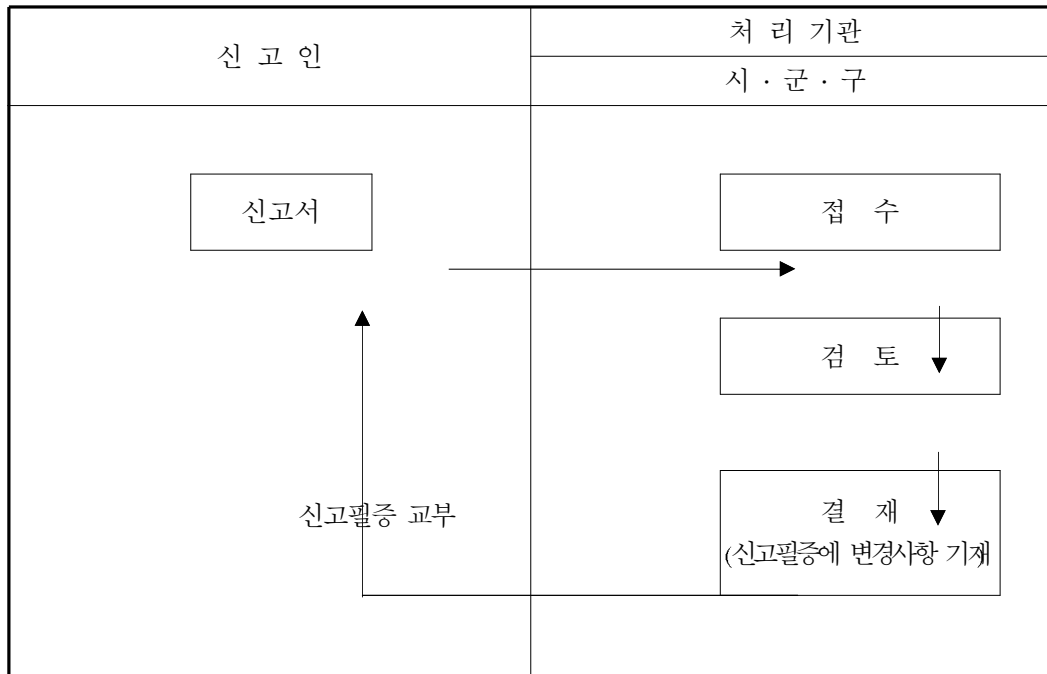
31311-24911일
95.11.29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뒤 쪽)

구 비 서 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의 정관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 (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대장등본 ※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시 설 명 칭 :

시 설 종 별 :

소 재 지 :

입소(이용)정원 : 세대(명)

운영 법인명 :

대표자성명 :

시설의 장 성명 :

시설의 장 생년월일 :

특기사항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변경 사항		
일 자	내 용	기록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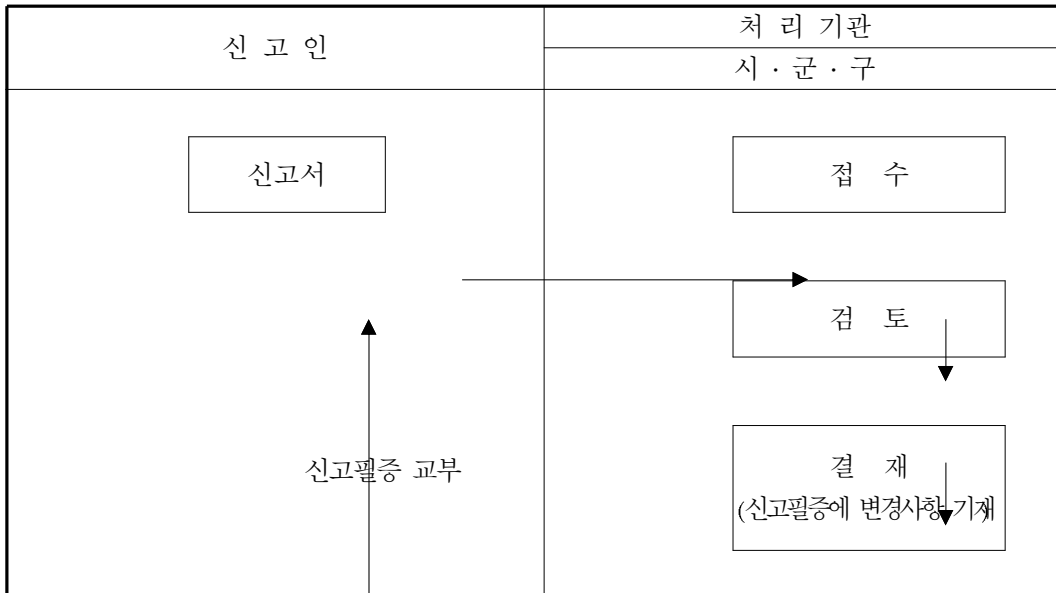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④법인의 명칭		
⑤시설의 명칭		⑥시설 종별	
⑦소재지		⑧시설장의 성명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⑨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⑩시설의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⑪종류		
	⑫명칭		
	⑬소재지		
⑭입소정원			
⑮변경사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 변경을 신고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 뒤 쪽 확인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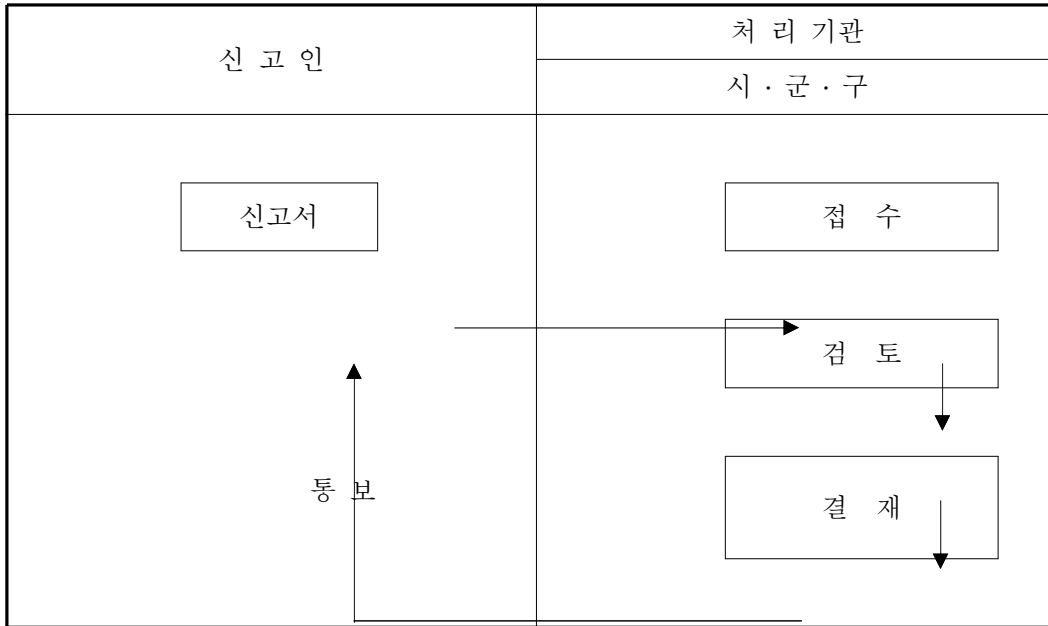
구 비 서 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시설의 장이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1부	건축물대장(소재지 또는 정원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div>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부록 3. 서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및 세대원수 (2008.12 현재)

구분	2008.12.		2007.12		증감률		
	세대수	세대원수	세대수	세대원수	세대수	세대원수	
서울특별시	계	17,777	45,444	16,314	41,686	9.0	9.0
	종로구	248	320	133	316	86.5	1.3
	중 구	225	594	250	639	-10.0	-7.0
	용산구	323	833	347	882	-6.9	-5.6
	성동구	438	1,099	588	1,483	-25.5	-25.9
	광진구	925	2,400	857	2,045	7.9	17.4
	동대문	771	2,039	674	1,686	14.4	20.9
	중랑구	1,581	4,125	1,514	3,903	4.4	5.7
	성북구	935	2,410	825	2,010	13.3	19.9
	강북구	1,081	2,817	980	2,528	10.3	11.4
	도봉구	800	2,060	746	1,930	7.2	6.7
	노원구	861	2,198	739	1,867	16.5	17.7
	은평구	973	2,573	883	2,313	10.2	11.2
	서대문	604	1,563	567	1,477	6.5	5.8
	마포구	466	1,209	398	984	17.1	22.9
	양천구	907	2,409	779	2,013	16.4	19.7
	강서구	1,112	2,864	991	2,632	12.2	8.8
	구로구	603	1,566	622	1,622	-3.1	-3.5
	금천구	843	2,124	791	2,010	6.6	5.7
	영등포	481	1,230	513	1,316	-6.2	-6.5
	동작구	657	1,480	580	1,517	13.3	-2.4
	관악구	1,057	2,696	890	2,256	18.8	19.5
	서초구	223	571	192	496	16.1	15.1
강남구	311	786	255	650	22.0	20.9	
송파구	684	1,724	579	1,589	18.1	8.5	
강동구	668	1,754	621	1,522	7.6	15.2	

부록 4.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2009.12 현재)

서울특별시, 서울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주소록 (2008.12.30현재)

구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소파1길 2	318-0227
1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17-12	3414-9966
2	강북구	서울시 강북구 변2동 318 강북웰빙스포츠센터 3층	987-2567
3	강서구	서울시 강서구 우현길 34(화곡동 1159-4)	2606-2017~8
4	관악구	서울시 관악구 봉천4동 1571-1	883-9390
5	광진구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472-1 광장종합사회복지관 3층	458-0622
6	구로구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777-22	830-0450
7	금천구	서울시 금천구 시흥1동 841 3층	803-7747
8	도봉구	서울시 도봉구 창5동 303 도봉구민회관 2층	2289-1537
9	동작구	서울시 동작구 사당2동 1136-1 2층	599-3301
10	마포구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8-19	3142-5482
11	서대문구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9-31 예림빌딩 4층	322-7595
12	서대문구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 생활과학대학 401호	957-0760
13	서초구	서울시 서초구 양재 1동 25 서초구민회관 2층	576-2852
14	성동구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5-1 한양대 동문회관 101호	3395-9447
15	성북구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라이시움 102호	3290-1660
16	송파구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127-1	443-3844
17	양천구	서울시 양천구 신정4동 957-16 4층	2065-3400
18	영등포구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1동 신길1동사무소 4층	2678-2193
19	용산구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728-10 여성문화회관 1층	797-9184
20	은평구	서울시 은평구 신사1동 26-45 3층	376-3761
21	종로구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6-2 동부여성문화센터 3층	764-3524
22	중구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동국대 학림관 3층	2260-3898
23	중랑구	서울시 중랑구 면목8동 51-2호 2층	435-4142

*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9년부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개소 운영 예정

본 매뉴얼 중 방과후 학교 운영서식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맞벌이가정 자녀 방과후 교실을 운영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서식 서식을 제공받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방과후 학교 운영서식을 동일하게 만들어 종사자의 업무 효율성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 표준화를 위해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주신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김명희 선생님과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홍정혜 센터장님, 그리고 시범운영을 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과 이은주 사무국장의 종사자, 연구에 도움을 준 이성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8-서울건강가정-04

한부모가족 자녀돌봄 및 가족건강성 향상 프로그램

- 부자가정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발행인	이종남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발행일	2008년 12월 31일
저자	송말희·강기정·신건철·이종남·김연화
보조연구자	이성휘
자문,자료제공	박정윤(중앙대 교수), 김명희(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홍정혜(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획·편집	김연화·윤송희(가족문화홍보팀)
발행처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1길 2
전화/팩스	Tel. 02) 318-8169, 0227/ Fax. 02) 318-0228
홈페이지	http://family.seoul.go.kr
인쇄	한다문화사 (Tel. 961-7500)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SEOUL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100-250)서울특별시 중구 소파1길 2 전화: 02) 318-0227 팩스: 02) 318-0228
이메일: sfamilyc@seoul.go.kr 홈페이지: <http://family.seoul.go.kr>